

발간등록번호

12-1371827-000009-01

2021 연구보고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2021. 12.

제 출 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
- 연구 기관 : (사단) 한국도서관협회
 - 연구책임자 : 이 승 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공동연구자 : 이 정 미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영 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 인 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이 종 욱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양 지 안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
-

이 연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의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요약문

1. 사서의 의미 및 사서직의 전문성

1.1 사서직의 의미

■ 사서의 의미와 역할

- 사서는 사서 양성 교육과정을 인가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도서관 현장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정의 (Gorman, 2000)
- 사서는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지만,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서비스의 철학이 배제된 웹사이트 구축이나 데이터 처리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이 될 수는 없음
-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출판물, 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사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의 접근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 생태계에서의 핵심 인력(key species)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Cheng, 2000)

■ 도서관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적, 사회적 기관이며, 데이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적,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포괄

- 단순 기법 중심의 기관이 아닌 커뮤니티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장서개발, 정보조직, 지식정보 보존, 서비스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사서이며, 이를 총칭하는 명칭이 사서직 (librarianship)
- 사서의 역할이 사서직의 역할이며, 이는 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

1.2 사서 전문성의 정립

- 도서관은 정보적, 사회적 환경 진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확대
 - 도서관의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진화가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의 중추인 사서의 전문성은 이전 환경에 비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도서관의 전문성은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
 - 진화하는 지식정보환경에서 사서는 근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큐레이션, 경영기법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
 - 사서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도서관 현장의 간극이 발생
 -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의 교육 과정과 도서관 실무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
 - 교육내용과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현행 교과과정과 현장 업무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
 -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관중별 도서관 현장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사서의 전문성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직 위상의 제고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빅데이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에 투입되면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사서직을 데이터 처리 중심의 기능직으로 바라보고, 문헌정보학을 데이터 중심의 분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내적인 문제가 발생
 - 특히 주제전문화 혹은 다양화를 갖춘 사서직 양성을 이유로, 사서직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배제한 기법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의견이 대두
 - 이로 인해 사서직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서비스의 역량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사서직의 기능직화를

유도하는 동향이 감지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현장의 요구, 교육기관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 정립이 전제조건
 - 각각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고유한 상황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행 제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방안 또한 실제적 적용이 불가능
 - 이에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 아래 각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서자격제도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

-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분야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
 - 정보서비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도서관 및 사서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이론들을 접하고, 이를 현장과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서직과 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정립될 수 있음
 - 이러한 철학의 정립을 기반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서관의 정보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제고될 수 있음
 - 또한 교과내용 이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될 수 있음

2.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방향

2.1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의 방향

- 사서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장적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기존에 제안된 많은 개선방안들은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이상적인 방안들이지만, 기존 개선방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선행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여러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도서관계의 위상 제고라는 대명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

- 이에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집중하고, 현재의 제도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

- 현 시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및 교육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
- 사서자격 종류는 현행 제도와 같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을 유지하고, 각 등급별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이나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 다수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 등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

2.2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제안의 고려사항

■ 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서자격제도 및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과정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사서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두 가지 측면으로 마련하여 제안
 - 이들 두 가지 측면을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교육적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제안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
 -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2021년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기반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

3.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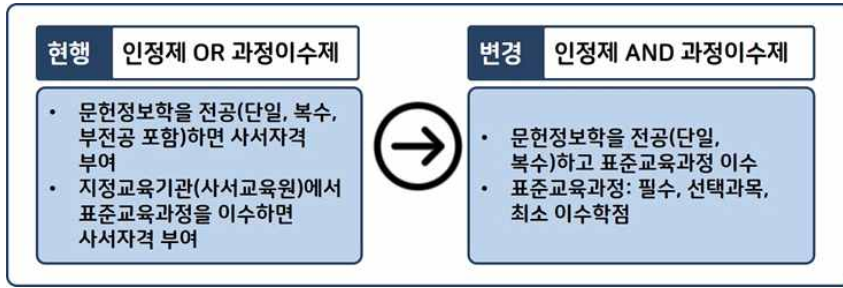
3.1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강화

■ 사서자격요건의 기본 구조 개선

- 현재 사서자격제도의 기본 구조는 각 대학의 학과 단위 및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단위로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을 운영하고, 각 기관별로 졸업을 위한 전공 교과목 이수를 통해 사서자격을 취득
 - 다양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서 인력이 양적으로만 양산되는 문제를 초래
 - 교육과정 또한 법령에 따라 10과목(30학점) 등의 최소이수학점으로만 운영되어 사서의 전문성이 아닌 경제적·재정적 논리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운영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 특히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인원의 경우,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을 최소로 이수한 상태로 문헌정보학 심화전공을 이수하는 인원과 동일한 사서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서직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
 -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 여러 분야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과목 정도의 과목 이수를 통해 이러한 모든 소양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

■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 이에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적인 기준을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와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강화
 -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는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 학위를 받은 경우는 이수한 교과목에 상관 없이 1급, 2급, 준사서자격증의 취득이 가능
 - 이로 인해 도서관 혹은 사서직과 무관한 교과목 위주로 수강한 상태로 사서자격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위와 최소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 제안



(그림 1)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3.2 최소이수학점 기준 강화

■ 최소이수학점제 기준 강화의 배경

- 대학의 복수전공을 장려하는 학업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전공 영역의 확대는 특정 측면에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서직과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보면, 사서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 복수전공의 장려를 위해 각 전공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낮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 이는 주제전문사서 등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사서의 역량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주제전문사서 역시 사서이며, 따라서 사서로서의 기본적인 전문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
 - 사서직으로서의 역량이 결여된 다양화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음

■ 최소 이수학점제 기준 적용의 단순화

-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에서는 동일한 사서자격 종류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과목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사서자격 취득의 기준 및 조건이 각 기관별, 상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사서자격제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자격 종류별로 일관적인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이에 사서자격 취득에서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마련
-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등급별로 공통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할 경우, 각 사서자격 종류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표 2〉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선안

구분	대상자격증	전공 관련 최소이수 학점 기준	
		현행	개선안
대학	1급 정사서	-	-
	2급 정사서	단일전공: 평균 64.03 복수전공: 평균 40.48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60
	준사서	-	단일전공: 48 복수전공: 48
전문대학	준사서	평균 39.25	48
지정교육기관	1급 정사서	30	48
	2급 정사서	30	
	준사서	30	
평생교육원	2급 정사서	대학 타전공	60
		전문대 타전공	60
		전문대 문헌정보학 전공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 최소 이수학점 개선방안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60학점으로 강화
- 기존에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의 이수학점 요건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60학점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
- 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사서자격 취득을 하는 경우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강화
 - 문헌정보학 단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에서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남발되는 경향을 방지

■ 최소 이수학점 이수에 따른 사서자격증 취득 제한

- 현재 각 대학에서는 복수전공 등 다전공을 장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 40학점 정도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
 - 이는 동일한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단일전공(평균 64학점)과 복수전공(평균 40학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
 - 또한 평균 40학점의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 이수로는 사서직으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각 대학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40학점 미만의 과목 이수만으로도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상황
 - 이는 복수전공, 융합전공의 지향을 이유로 사서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민간 원격교육기관, 일부 대학의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비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이수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4년제 대학에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사서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 개선안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고 60학점 이상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부여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60학점 이상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48~59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2급 정사서’ 자격이 아닌 ‘준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부여
 - 이는 단일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 대학의 이수 과정과 무관하게, 자격증 종류별로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의 강화

4. 교육과정 개선방안

4.1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 강화

■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 지정

- 사서자격의 종류별로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의 정립이 필요
 - 사서자격증 등급별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별로 동일한 수준과 질을 확보한 교육과정의 운영 기반을 마련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표준교과목을 기반으로 사서양성 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으로 구분
- 제안하는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은 사서의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동일한 교과내용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교과목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교과내용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을 제안

■ 필수 교과내용 지정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들 가운데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표 3〉 필수 교과내용(안)

영역	대표 교과목명	비고
문헌정보학일반	문헌정보학개론	-
	도서관문화사	-
	사서실습	- 2급 및 준사서 자격 취득에만 시행 - 사서실습 인정 기준(안)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수 인정
정보조직학	자료조직론	- 분류학, 목록학 중 1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자료조직실습	- 분류실습, 목록실습 1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정보조사제공학	정보서비스론	-
	정보이용자론	-
	독서교육론	-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장서개발론	-
	도서관경영론	-
정보학	정보검색론	-
	정보기술론	- 데이터베이스론, 정보시스템론, 도서관과 인터넷기술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4.2 선택 교과내용 지정 및 이수 강화

■ 선택 교과내용 설정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 가운데 선택 교과목으로서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서 역량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31과목으로 구성

〈표 4〉 선택 교과내용(안)

구분		사서자격 관련 31개 교과내용 (31개 과목)	
		대표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명
문헌정보 일반	2	도서관과 저작권	정보와지적재산, 정보윤리, 저작권과정보윤리, 정보사회와저작권, 출판과저작권 등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조사방법론, 정보조사분석론 등
정보조직학	5	메타데이터의 이해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이해, 메타데이터구조론, 메타데이터설계론 등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조직론	매체조직실습, 특수매체조직, 특수매체분류, 멀티자료조직론 등
		자동화목록실습	자동화목록법,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등
		정보매체론	정보자원론, 정보자원관리연습, 정보자원과뉴미디어
		LOD 및 오픈엑세스	LOD구축실습, 오픈엑세스, 정보공유와LOD 등
정보조사 제공학	5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론	어린이서비스론, 아동및청소년자료, 어린이서비스현장실천론 등
		인터넷자원활용	인터넷자원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론 등
		정보리터러시	정보문해론, 정보활용교육론, 정보사회와리터러시, 정보이용지도 등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커뮤니케이션의이해, 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정보커뮤니케이션선과네트워크 등
		학술정보활용법	학술정보서비스, 학술정보탐색과활용, 학술커뮤니케이션론, 전자학술정보특론 등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학	4	관중별도서관운영론	공공도서관경영, 대학도서관론, 대학및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경영론, 학교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운영실무 등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평가분석론, 도서관실무통계, 정보분석평가론, 정보서비스평가 등
		도서관마케팅	도서관홍보론, 도서관정보센터마케팅론, 콘텐츠기획및마케팅 등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도서관프로그램개발및운영, 도서관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기획론 등

정보학	10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운영론, 유비쿼터스도서관, 디지털도서관구축론 등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시 등
		디지털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제작론, 지식정보사회와콘텐츠개발 등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분석방법론, 빅데이터개념및활용, 빅데이터와도서관,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시 등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분석기초통계,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등
		빅데이터 처리 기법	빅데이터보안, 빅데이터색인및관리, 빅데이터프로그래밍 등
		정보학의 이해	정보학원론, 정보학입문, 정보이론과정정보시스템 등
		도서관과 인터넷 기술	도서관IT, 인터넷정보관리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론	검색인터페이스설계, 웹인터페이스설계, 인터페이스디자인 등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큐레이션, 콘텐츠큐레이션 등
서지학	1	서지학개론	서지학입문, 한국서지학 등
기록관리학	4	기록관리학	기록과인간, 기록관리개론 등
		디지털아카이빙	기록보존론, 정보자료보존, 아카이브와 콘텐츠 등
		전자기록관리론	전자문서관리, 전자정보관리 등
		공공기록물관리론	정부기록물관리, 정부자료론 등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의 준수 유지

- 2급 정사서(60학점) 및 준사서(48학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 이 가운데 모든 종류의 사서자격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필수 교과내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수하는 것은 사서직이 주제전문 분야와의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4.3 사서실습 교과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강화

- 사서실습을 표준교과내용의 필수 이수 교과내용으로 설정하여,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현장적용성을 확보
- 사서실습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화된 사서 인력을 교육과정에서 양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사서실습 과목의 운영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표 5〉 사서실습 과목 개설 기준(안)

- 가. 사서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나. 실습단위 당 학생 배치 인원은 지도사(사서) 1명 당 5명 이내로 할 것
- 다. 사서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2)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자(사서)가 1명 이상 상근할 것
- 라. 도서관 사서실습 과목의 담당교수는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할 것
- 마.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의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 이상)>으로 <도서관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서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 취소, 도서관 사서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 교원의 자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사서실습 과목은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전임교원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사서실습 진행 기간 중 현장실습 과목 담당 교원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강제화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의 범위

- 사서 양성 과정에서 실습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보조직 이외에도 정보 서비스, 도서관경영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성 가능
- 이에 현장 사서를 중심으로 사서실습의 시간을 확대하여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이에 정보조직 실습을 제외한 도서관 관련 실습 내용을 사서실습에서 도서관 현장 사서의 운영 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

■ 사서실습 기관 확보 지원

- 각 대학에서는 사서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직면
- 이에 도서관 기관 평가에서 사서실습 지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4.4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강화

■ 정보조직실습 과목 조건 강화

- 도서관 업무 및 사서직 관련 지식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정보조직실습 과목의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보조직실습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분류 및 도서관 목록의 실습으로 구성되며,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도서관 분류 및 목록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분류표(한국십진분류표 혹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를 구비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목록규칙(한국목록규칙 혹은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를 구비
 - 웹 버전의 분류표 혹은 목록규칙의 경우는 수강학생 전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
- 자료조직 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자료조직 실습 과목은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혹은 강사에 의해 진행

5.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적용성

-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
 -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이 최소한의 학점 이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사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인 한계로 작용
 - 이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양적인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사서자격증의 위상의 저하시키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현장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서도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대두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의 단순화**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사서자격 종류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을 자격증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을 자격증 종류별로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사서자격증 자체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 **표준 교육과정의 마련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 필수 교과내용 및 선택 교과내용을 설정하여, 교육기관의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표준 교육과정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계의 합의로 도출된 일관성 있는 교과내용의 교육이 가능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의 강화**
 - 기존의 사서자격 취득 기준을 자격증 종류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 기존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이수해야 하는 최소 학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서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최소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서자격 취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자격 종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설정
- 2급 정사서의 경우 60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준사서의 경우 48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의 기준으로 설정

■ 제안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

- 국가시험제도의 도입, 기관인증제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한 이상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될 경우에도, 이들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진화하는 사회 환경, 정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

목 차

요 약 문	v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1.3 연구방법	8
제 2 장 사서자격제도의 근본	11
2.1 사서직의 의의 및 역할	13
2.2 사서자격제도의 성립 배경	16
2.2.1 사서자격제도의 역사	16
2.2.2 사서자격제도의 법제화	16
2.2.3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25
2.3 사서자격 취득과 양성 체계	27
2.3.1 사서자격 양성 기관	27
2.3.2 사서자격 취득 체계	30
2.4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33
2.4.1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33
2.4.2 사서의 양성 및 취업	36

제 3 장 사서자격제도 분석	43
3.1 주요 선진국의 사서자격제도 분석	45
3.1.1 미국의 사서자격제도	45
3.1.2 영국의 사서자격제도	52
3.1.3 독일의 사서자격제도	54
3.1.4 프랑스의 사서자격제도	55
3.1.5 호주의 사서자격제도	56
3.2 국내 사서자격제도 분석	57
3.2.1 국내 사서자격제도의 현황	57
3.3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60
제 4 장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63
4.1 사서의 교육주체별 양성기관 분석	65
4.2 양성기관별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71
4.3 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97
제 5 장 국내 유사 자격제도 분석	101
5.1 간호사 자격제도 분석	103
5.1.1 간호사 자격	103
5.1.2 전문간호사	107
5.1.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112
5.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분석	126
5.2.1 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	126
5.2.2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128

5.2.3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 조건	130
5.2.4	사회복지사 제도 발전 과정	132
5.3	대학교육인증제 분석	132
5.3.1	한국공학교육인증원	132
5.3.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136
5.3.3	경영학교육 인증제도	142
5.4	영양사 자격제도 분석	147
5.4.1	영양사 자격	147
5.4.2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151
5.5	보육교사 자격제도 분석	152
5.5.1	보육교사의 법적근거	152
5.5.2	보육교사의 자격시험	155
5.6	국내 유사자격제도 요약 및 시사점	156
5.6.1	국내 유사자격제도 요약	156
5.6.2	국내 유사자격제도 시사점	170
제 6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분석	173
6.1	기존 개선방안의 내용 분석	175
6.1.1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 연구 분석	175
6.1.1.1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	175
6.1.1.2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분석	181
6.1.2	사서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분석	187
6.1.2.1	사서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187
6.1.2.2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안	188

6.1.2.3 사서직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198
6.2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 분석	201
제 7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구조	205
7.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배경	207
7.1.1 현행 사서자격 관련 제도의 문제	207
7.1.2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안의 범위	209
7.2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210
7.2.1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개선	210
7.2.2 최소이수학점 개선	211
7.3 교육과정 개선 방안	214
7.3.1 기관별 교육과정 방향	214
7.3.2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 강화	216
7.3.3 사서실습 교과목 강화	219
7.3.4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강화	220
제 8 장 현장 의견 수렴	221
8.1 설문조사 구성 및 분석 방법	223
8.1.1 설문조사 대상	223
8.1.2 설문조사 항목 구성	223
8.1.3 설문 결과 분석의 범위	224
8.2 응답자 배경 정보	225
8.2.1 응답자 성별 분포	225
8.2.2 응답자 연령 분포	226

8.2.3	응답자 신분 분포	227
8.2.4	응답자 소속 분포	228
8.2.5	응답자 소속 도서관 유형	230
8.2.6	응답자 직렬 분포	231
8.2.7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232
8.2.8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233
8.2.9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235
8.3	응답자 신분별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 응답 분석	236
8.3.1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236
8.3.2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복수선택)	237
8.3.3	현행 사서자격의 구분 방식 개선 필요성	240
8.3.4	사서자격에 대한 적절한 재구분 방식	241
8.3.5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244
8.3.6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245
8.4	응답자 신분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부문 응답 분석	248
8.4.1	표준교과목과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에 대한 의견	248
8.4.2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49
8.4.3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6
8.4.4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8
8.4.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 교과목 12과목(36학점) 구성의 적절성	260
8.4.6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선택 교과목 31과목(63학점) 구성의 적절성	262
8.4.7	사서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4

8.4.8	정보조직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6
8.4.9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안) 모형의 적절한 개정 주기	268
8.5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시사점	270
8.5.1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	270
8.5.2	최소이수학점 개선 부문	272
8.5.3	표준교육과정 개선 부문	274
8.5.4	실습 교과목 개선 부문	275
제 9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277
9.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방향	279
9.1.1	사서 전문성의 의의 정립	279
9.1.2	사서 전문성 확보 기준 정립의 의의	281
9.1.3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방향	283
9.1.4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제안의 고려사항	284
9.2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강화	284
9.3	최소이수학점 기준 강화	286
9.4	교육과정 개선방안	290
9.4.1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 강화	290
9.4.2	필수 교과내용 지정 및 이수 강화	290
9.4.3	선택 교과내용 지정 및 이수 강화	293
9.4.4	사서실습 교과목 강화	296
9.4.5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강화	298
9.5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적용성	299

제 10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고려사항	303
10.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적용의 고려사항	305
10.2 향후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향	307
10.3 사서자격제도 개선 로드맵	311
참 고 문 헌	315
부 록	319

표 목차

<표 1> 교육과정표	17
<표 2>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도서관법시행령)	19
<표 3>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20
<표 4>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22
<표 5> 사서직 양성기관 체계: 대학 (2020년 5월 현재)	28
<표 6> 지정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현황	30
<표 7>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1965년~2019년 12월 31일 기준)	34
<표 8> 2007년 이후 연도별 사서자격증 취득 현황	35
<표 9> 2019년도 사서자격증 신규 발급 현황	35
<표 10> 최근 3년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36
<표 11> 2019년도 후기 사서자격증 단체 발급 및 취업 현황	37
<표 12>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및 취업 현황 (2014년~2018년)	39
<표 13> 양성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10년~2013년)	41
<표 14> ALA 인증 평가 기준 및 필수요소	46
<표 15> CILIP 자격인증 신청 서류 및 평가기준	54
<표 16> 독일의 등급별 사서 자격 구분, 요건 및 업무	55
<표 17> 국내 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58
<표 18> 대학 문헌정보학과 현황	66
<표 19> 지정교육기관 현황	68
<표 20> 최근 3년간 평가인정 학습과정(2급 정사서) 운영기관	68
<표 21> 문헌정보학 학습과목 운영 현황(2020년 12월 기준)	69

<표 22> 교육주체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07~2020년)	70
<표 23> 대학 문헌정보(학)과 개설 교과목	72
<표 24> 문헌정보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요건	74
<표 25>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변동 현황	77
<표 26>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79
<표 27> 정보조직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83
<표 28>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83
<표 29>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86
<표 30> 정보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88
<표 31> 서지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91
<표 32> 기록관리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93
<표 33> 어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94
<표 34> 지정교육기관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95
<표 35>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96
<표 36> 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104
<표 37>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과목	105
<표 38> 간호사 국가고시 개정 연혁	106
<표 39> 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107
<표 40>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108
<표 4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제4조 제2항 관련)	110
<표 4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112
<표 4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주요 사업	113
<표 44>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한 결과 활용	117
<표 45> 간호교육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118

<표 46> 간호 교육과정 편성의 분류 기준 및 이수학점 현황	120
<표 47> 간호학 임상실습 기준 및 조건	124
<표 48> 사회복지사의 자격 구분 및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126
<표 49>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현황	129
<표 50> 2급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129
<표 51> 2급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130
<표 5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령 개정	132
<표 53> 공학교육인증 평가 구분 및 내용	134
<표 54> 한국건축교육인증의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137
<표 5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을 위한 핵심역량	137
<표 56> 건축학교육 인증 세부 절차	139
<표 57> 경영교육 인증 등급	144
<표 58> 통합인증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146
<표 59> 영양사의 법적 근거	147
<표 60> 영양사의 자격시험 법적 기준	150
<표 61> 영양사의 국가시험 현황 및 시험과목	151
<표 62> 임상영양사의 국가시험 현황 및 시험과목	152
<표 63> 영양교사 자격 조건	152
<표 64> 보육교사 법적 근거	153
<표 65> 보육교사 자격조건	155
<표 66>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 영역	159
<표 67> 간호 실습교육 및 임상실습	159
<표 68>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163
<표 69>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및 현장실습	163

<표 70>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	164
<표 71> 영양사 교육과정 및 최소이수 학점	167
<표 72> 영양사 학부 명칭	168
<표 73> 영양사 현장실습 조건	168
<표 74> 보육교사 자격 기준	169
<표 75> 공무원임용시험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76
<표 76> 사서 자격 요건(안)	176
<표 77>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표준교과과정	179
<표 78> 문헌정보학의 표준 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본모형	189
<표 79>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한 「도서관법」의 근거조항 추가모형	190
<표 80>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 개정모형	192
<표 81> 국가시험제 시행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시험(필기)과목 모형	193
<표 82>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적용모형	194
<표 83> 국가시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모형	195
<표 84>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모형 요약	197
<표 85> 사서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사서 인증제’ 모형	199
<표 86>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선안	213
<표 87>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	215
<표 88> 필수 교과목(안)	217
<표 89> 선택 교과목(안)	218
<표 90> 사서실습 과목 개설 기준(안)	219
<표 91> 응답자 성별 분포	225
<표 92> 응답자 연령 분포	226

<표 93> 응답자 신분 분포	227
<표 94> 응답자 소속 분포	228
<표 95> 응답자 신분별 소속 분포	229
<표 96> 응답자 소속 도서관 유형	230
<표 97> 응답자 직렬 분포	231
<표 98>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232
<표 99>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233
<표 100>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235
<표 101>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237
<표 102>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빈도별)	238
<표 103>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신분별)	239
<표 104> 현행 사서자격제도 구분 방식	241
<표 105> 사서자격 재구분 방식	243
<표 106>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245
<표 107>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247
<표 108>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	249
<표 109>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1
<표 110>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상향 의견	253
<표 111>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하향 의견	255
<표 112>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7
<표 113>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9
<표 114>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교과목 12과목 구성의 적절성	261
<표 11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선택교과목 31과목 구성의 적절성	263
<표 116> 사서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5

<표 117>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7
<표 118> 표준교육과정 모형의 개정 주기 적절성	269
<표 119>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선안	287
<표 120> 필수 교과내용(안)	291
<표 121> 선택 교과내용(안)	293
<표 122> 사서실습 과목 개설 기준(안)	29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단계 및 절차	9
(그림 2) 한국의 사서자격증 취득 과정	32
(그림 3) 사서자격증 발급 추이 (2007~2019)	33
(그림 4) ALA 인증 평가 절차	51
(그림 5) CILIP 인증 교육과정 리스트	52
(그림 6) 호주 CLIP 인증 과정	57
(그림 7) 사서 양성 교육기관 현황	65
(그림 8) 사서양성기관별 자격증 발급현황	71
(그림 9) 문헌정보학과 개설 교과목의 영역별 분포	78
(그림 10)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119
(그림 11)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 절차	131
(그림 12) 공학교육인증원 인증 절차	135
(그림 13) 인증 절차 도식화	145
(그림 14) 간호사 자격 변천사	157
(그림 15)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모형(안)	181
(그림 16) 현행 학점 유지 모형 (제1안)	182
(그림 17) 학부 학점 상향 조정 모형(제2안)	183
(그림 18) (전문)대학원 기반 모형 (제3안)	183
(그림 19) 장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184
(그림 20) 단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185
(그림 21) 사서자격제도 개선 체계 확립 방향	186

(그림 22) 사서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 강화 모형	198
(그림 23)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 개선모형	201
(그림 24)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211
(그림 25) 설문항목 구성의 기본 카테고리	224
(그림 26) 응답자 성별 분포	225
(그림 27) 응답자 연령 분포	226
(그림 28) 응답자 신분 분포	227
(그림 29) 응답자 소속 분포	228
(그림 30) 응답자 소속 도서관 분포	230
(그림 31) 응답자 직렬 분포	231
(그림 32)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232
(그림 33)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234
(그림 34)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235
(그림 35)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236
(그림 36)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238
(그림 37) 현행 사서자격제도 구분 방식 필요성	240
(그림 38) 사서자격 재구분 방식	242
(그림 39)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244
(그림 40)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246
(그림 41)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	248
(그림 42)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0
(그림 43)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6
(그림 44)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258
(그림 4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교과목 12과목 구성의 적절성	260

(그림 46) 준교육과정 모형(안)의 선택교과목 31과목 구성의 적절성	262
(그림 47) 사서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4
(그림 48)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266
(그림 49) 표준교육과정 모형의 개정 주기 적절성	268
(그림 50)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285
(그림 51)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309
(그림 52) 사서자격제도 개선 로드맵	312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연구 방법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보환경의 진화와 도서관 패러다임의 전환

-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소장·조직·관리 및 정보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역할을 담당
- 이용자를 위한 최적의 정보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의 지원, 독서활동 및 연구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지식정보의 허브이자 지식정보센터,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
-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환경이 정착하고, 새로운 유형의 매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정보행태는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따라 복잡화·세분화·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진화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의 정보적·사회적·교육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인력으로서의 사서의 전문성 및 소양 계발이 절대적으로 필요
- 도서관의 모든 활동의 주체는 이용자와 전문사서직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 진화를 위해서는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및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 함양이 필수

■ 도서관 전문사서의 역할

-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는 신뢰성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
-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용자와 소통함으로써,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소통자(communicator) 등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오지은, 정연경, 2013)
 - 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
- 사서는 고등교육과정 및 재교육을 통하여 기본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으로써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급 도서관에서 지식정보를 운

영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사서직이 지닌 본질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전문사서의 사회적 존재 가치 정립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사서직의 핵심역량을 제고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수이며, 이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전문 사서 양성과 사서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서자격제도의 현황 및 한계

- 우리나라의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1960년대에 제정된 이래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된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
- 1990년대 이후의 급변하는 국내외 도서관 환경 및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요구하는 사서직의 전문적 소양과 직무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
- 이에 도서관 현장 및 문헌정보학계에서 도서관의 관종과 업무 영역에 따라 차별화, 전문화된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서자격 구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와 함께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강화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

■ 사서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사서자격증 발급의 문제

- 우리나라 사서자격증이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검정과정이 없이 모든 문헌정보학 학위취득자 및 소정의 관련 학점 이수자에게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상황
- 대학 이외의 단기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사서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따라서는 2급 정사서를 위한 취득학점이 30~36학점에 그치는 등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
 - 이는 결국 사서자격 소지자의 무분별한 양산 및 그에 따른 국가자격의 권위 상실을 초래
- 이러한 사서자격제도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사서자격증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 개선의 어려움을 초래
- 사서자격 부여 방법의 개선에 따른 자격소지자의 양적·질적 조정 및 표준 교과과정을 통한 필수적 기본지식과 기술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
-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1960년대에 제정된 사서직 관련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자격요건 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현행 사서자격제도가 시대의 변화, 정보환경의 진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사서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불가피
- 사서양성 및 자격취득 교육기관이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지정교육기관’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원 등으로 확대
 - 교육기관별 이수학점 및 교육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국가자격증을 수여하며,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도 시도
- 이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14년 1월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정책과제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정비’를 확정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전문사서 제도 및 사서자격 갱신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을 명시하는데 이르고 있음
- 사서자격제도의 개선과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거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
- 2007년 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정책기획단 설치 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계속해서 동 과제가 반영되었으나 실질적인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비
 - 2009년 이후 마련되어 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꾸준히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심의·의결 사항은 없음
 - 도서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6월 2일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제1회 미래도서관 정보정책 포럼’ 개최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제적인 결과 도출은 미비

■ 사서자격제도 개선 동향

-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제기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도서관계 선진국에서도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로서의 사서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직의 교육내용 및 수준 등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해 문헌정보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과정을 강조
- 사서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론 및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훈련 및 재교육, 사서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

■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

-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재정비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 교과과정의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서자격제도와 연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표준 교과과정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

- 본 연구는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서자격제도와 관련된 제반 측면을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서자격제도와 관련된 교육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서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 사서자격제도, 사서직의 핵심역량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 교육기관의 다양화에 따른 이수학점 및 교과과정 운영에서의 교육수준 편차를 해소
 - 사서직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자격증에 부합하는 권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존 방안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 현장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를 마련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범위

- 현재 사서자격증의 수요와 공급 현황,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한계,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한계를 분석 및 도출
- 사서직 전문성 강화 및 사서 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학술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
-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및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

■ 국내 사서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우리나라 사서자격증 발급 제도 및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분석
- 정보환경의 진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환경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새로운 사서자격제도의 체계, 자격요건의 재정립, 자격 취득 방법의 개선 방안을 고찰
- 현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 등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사·분석

■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분석

- 현재까지 논의된 국내 사서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조사·분석하고 주요 쟁점들을 도출
- 주요 선진국의 사서자격제도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의 특징과 장점 및 시사점을 파악
- 국내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논점을 해결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도출
- 도서관과 정보전문직 관련 단체 및 협회들의 사서자격 관련 법령 기준과 지침 등을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 및 도출
- 기존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교·분석·평가
 - 내부 전문성 강화, 필수과목 지정, 최소 이수학점제, 전문대학원 제도, 교육과정 인증제, 국가시험제 등 기존의 제안된 방안에 대한 분석 및 이들 개선안의 한계 도출

■ 사서자격 요건 개선안 마련

- 현행 사서자격 취득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질적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 문헌정보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사 및 석사수준의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과 필수과목제 운영 방안 마련
-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정비 및 표준 교과과정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사서자격증 취득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과목제 운영 방안 마련
-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의 필수과목·선택과목·실습과목 등의 표준 교과과정을 제안
- 도서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지식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최대한 습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3 연구방법

■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거시적이고 공통된 사안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면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행 사서 자격제도의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방안 마련은 불가능
-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고려되면 단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없으며, 이상적인 논의에 기반한 개선안은 실제적 적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존재

■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은 사서자격제도의 발생부터 현재까지 제안된 다양한 개선안의 기반 위에서 수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고유한 배경 및 태생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서자격제도가 지닌 특성과 한계,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 도출
- 사서자격제도와 유사한 타 분야의 자격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
- 현행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분석 및 해외의 사서 양성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 강화 및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현재까지 제안된 다양한 사서자격제도 강화 방안 및 교육과정 개선안을 심

도 깊게 분석하고, 제안된 각각의 방안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단일 개선안을 도출



(그림 1) 연구의 단계 및 절차

- 현행 사서자격제도가 지닌 한계와 문제를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 마련
 - 하지만 이론적, 이상적 방향에 근거한 개선안은 현장적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
 - 이에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
 -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도출한 단일 개선안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 정책결정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단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안된 단일 개선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제안한 단일안의 개선에 적용

제 2 장

사서자격제도의 근본

- 2.1 사서직의 의의 및 역할**
- 2.2 사서자격제도의 성립 배경**
- 2.3 사서자격 취득과 양성 체계**
- 2.4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제 2 장 사서자격제도의 근본

2.1 사서직의 의의 및 역할

■ 도서관 사서의 의의

- 도서관 사서는 인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 대체자료 등 지식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매체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고 조직
- 조직한 지식정보자원을 다양한 시설과 정보기기를 이용해 유·무형의 정보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
- 정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이용자 교육과 국민독서활동을 지원하여 독서 및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보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역할을 담당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2019, 147)

■ 사서의 역할 진화

- 사서는 신뢰성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수행이 필요
- 도서관의 전문사서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로는 정보자원의 조직 및 관리, 장서개발 등 도서관의 고유한 역할 이외에도 및 정보 리터러시 교육, 정보서비스,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대외협력 등이 포함
- 진화하는 사회적, 정보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
-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도서관의 운영과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 필수

■ 사서직의 전문성

-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도서관 인력은 사서직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적인 서비스 계획, 예산 편성 등

의 운영 총괄은 도서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사서직 관장이 수행해야 함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2019, 147-148)

- 사서직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인 정보적, 사회적, 교육적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사서직의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업무 영역으로는 정보자료의 조직, 정보서비스, 정보교육, 장서개발 및 관리,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사서직 전문성의 구성요소

- 전문적 지식
 - 도서관 장서의 조직·관리·운영에 대한 지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 공공서비스 원칙에 대한 이해, 진화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 (Koontz and Gubbin 2011)
 -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적 지식과 어린이, 청소년 등 각 집단별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행정적 지식이 필요 (김세훈 외, 2004)
 -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지식보다는 통합된 지식을 필요 (Kennan et al., 2006)
- 전문적 능력
 - 전통적으로는 분류·목록작업 및 참고봉사서비스가 사서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 (김유경 1992)
 -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화 및 네트워크 기반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전문직으로서 역할, 자료선택에 협조하는 상담가로서의 능력, 탐색전문가로서의 능력, 지식정보·문화 기획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부 실무기술 측면보다 대인관계능력이나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중시 (최지혜 2005; Koontz and Gubbin 2011)
- 전문적 태도
 - 현장 사서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자세(attitude)를 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업무자세를 가장 중요한 자질로 제안 (이제환 외, 2005)

□ 사회적 책임

- 전문직은 자신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부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을 지님
- 전문직에게 부여된 배타적 관할권과 자율성은 전문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비롯
- 사서의 사회적 책임은 사서직의 배타적 권한의 정당성이 사회적 이익과 연결되게 만드는 요소 (윤명희, 2020)

□ 사회적 인정

- 전문직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일정 영역의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이 인정 (Friedson 2007)
- 현재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는 지금까지 사서직이 사회와 관계를 형성해 온 방법과 경험에 기반
-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사서자격증 획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서자격증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양질의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함으로써 형성이 가능
- 사서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형성을 통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장이 필요
-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사서직 전문성의 특성 및 구성요소를 언급(김정근, 1987; 남태우, 1996; 구본영, 2002; 윤희운, 2005)

■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현재 국내에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전문직단체의 존재, 윤리강령의 제정, 도서관법을 통해 제시된 배타적 영역의 구축 등 외형적으로는 전문직으로서 일정 수준의 기준이나 특징들을 충족
- 반면 실무적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서가 배타적 관할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직 단체는 사서직의 행동에 대한 자율적 통제 기능에 제한이 있어 내용적으로는 사회적 인정이나 인식의 제고로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 (윤명희, 이에 사서직이 전문직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현재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전문직화 단계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윤명희, 2020, 248)

2.2 사서자격제도의 성립 배경

2.2.1 사서자격제도의 역사

■ 근대식 사서교육의 시작

- 우리나라의 근대식 사서교육은 1931년 조선교육회가 주최한 제1회 강습회에서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2015, 43)
 - 이후 1939년에 결성된 조선도서관연맹이 사서 교육 관련 강습회를 주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교육을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이 강습회는 1943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
- 해방과 함께 국립도서관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던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이 1945년 말부터 미군정청 학무국장인 Lokard 등과 협의하여 국립도서관 소속으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고 1946년 4월 1일에 개교
 - 이후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한 조선도서관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사서 양성교육이 시행되었으며, 1946년 8월 31일 제1회 졸업생 20명을 배출
 - 1947년부터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4년간 총 77명이 배출되고 운영을 중단
- 해방과 함께 도서관의 운영이 일본이 아니니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게 되었고, 당시의 도서관계에서는 사서직원의 양성을 시급한 과제로 여겨, 장·단기 교육을 통해 사서를 양성하고 도서관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경주

2.2.2 사서자격제도의 법제화

■ 「도서관법」(1963)의 제정

-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는 1963년 10월 28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에 의해 최초로 확립 (이병목, 2005)
- 1965년 3월 26일자로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4호 제1조 <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의 제1항에서 사서직원의 자격 유형을 정사서와 준사서로 구분하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사서와 준사서의 자격 요건을 규정
- 동법 시행령 제5조 <도서관업무의 강습>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 실시의 요청

이 있거나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

-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국립도서관학교의 졸업자와 연세대학교부설 한국도서관학당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 이상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정사서 자격증 부여를 규정
- 또한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3년 이상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도서관 실무실습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준사서의 자격증 부여가 가능

■ 사서 양성 교육과정의 제정 (1966)

- 1966년 3월 23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호 제6조 <강습기관의 지정 범위> 및 제6조 <교육과정>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도서관학의 강습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
- 도서관학과가 설치된 대학, 국립중앙도서관, 문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도서관 단체는 도서관학의 강습기관으로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표 1> 교육과정표

필수과목	도서관의 조직 및 관리· 도서관사· 목록법· 분류법· 도서선택· 참고업무 및 일반참고자료
선택과목	도서관학개론· 서지학개론· 도서관과 사회· 도서 및 인쇄사· 저작권법· 고서목록법· 비도서자료· 도큐멘테이션·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한국서지· 시청각자료· 근세한국주제별사료· 사서실습

- 비고:
1. 령 제4조 제2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택과목 중 3과목을 과한다.
 2. 령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수과목을 면제하고 선택과목 중 5과목을 과한다.

■ 「도서관법」 개정 (1987)

- 1987년 11월 28일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함을 명시
- 동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서직원을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
- 1988년 8월 16일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06호) 제5조 제1항의 <별표 3>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 (<표 2> 참조)

〈표 2〉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1988년 8월 16일 제정 「도서관법시행령」)

자격	자격요건
1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비고: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자료가 1천 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해 1989년 3월 25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법 시행규칙」(문교부령 제570호) 제7조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8조 <교육과정>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규정
- 사서자격 교육기관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의 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제시 (<표 3> 참조)

<표 3>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자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 (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 (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 필수과목 중 (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 「도서관진흥법」(1991)

- 「도서관법」의 대체 법률로서 1991년 3월 8일자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과 1991년 4월 8일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342

호)에서도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

- 사서직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서관법 시행령」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
 - 국내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으로 순서를 변경
 -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원이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도서관에 근무해야 하는 경력을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
- 1991년 7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관진흥법 시행규칙」(문화부령 제 7호)에서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부설한 사서자격 교육기관(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을 인정
- 반면 사서자격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에 관한 내용 및 신청양식을 삭제하여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란을 초래
 -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문화체육부는 부산여자대학 부설 사서교육원을 사서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

- 「도서관진흥법」이 폐지되면서 1994년 3월 23일자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이 제정·공포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2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및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제시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 (2003)

- 2003년 5월 29일자로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법률 제6906호로 일부 개정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를 규정 (<표 4> 참조)

〈표 4〉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자격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 (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 (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 (II) 저작권론 (II)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 (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 (I) 독서지도론 (I) 저작권론 (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선택

※ 필수과목 중 (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 「도서관법」(2006)

-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 개정·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기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내용 및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함께 규정
 -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으로 고시

-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규정

■ 사서의 자격요건

□ 1급 정사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2급 정사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2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 준사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준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p>

2.2.3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 사서자격제도의 근본적 문제

- 198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1급 및 2급 정사서와 준사서로 직급만 구분된 체계를 유지
- 1990년대 중반 이후 급변한 국내외 도서관 환경 및 정보환경에서 요구되는 사서직의 전문적 소양과 직무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사서자격을 학점 이수 및 근무 연한으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등급은 자격 소지자의 전문적 지식 소양 수준 업무 수행 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운영
 -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 교육 교과과정의 내용이 사회 변화와 도서관 현장 및 이용자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교육을 위한 문헌정보학 필수 교과목 기준이 부재
 - 사서자격 취득 검증 및 전문직 단체의 권위 및 구조체계가 미약

■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사서직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게 규정
- 이는 사서자격제도가 처음 제정되던 당시 상황이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시대라는 원인이 반영된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도서관 역할 확대에 따른 사서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와 평생교육원 및 사서교육원 등 단기교육과정에 의한 사서 자격증 발급 등 사서자격증 발급 경로의 다양화로 과거보다 전문성이 약화
-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자격 소지자의 양적 증가는 사서가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초래
-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데 기인
 - 법령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사서자격증을 발급
- 각 대학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소양을 갖추는 깊이와 내용이 상이
-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서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인적자원의 가치평가를 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안인자 외, 2012)

■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변화

- 최근 대학 교육의 자율화 등으로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해외 학위 취득 증가, 경력 산정 시 사서직원으로의 근무 여부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서 자격 적정 여부 확인이 어려움
-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학 교육의 급격한 내용 변화로 사서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해석 필요성이 계속 발생

■ 지정교육기관 역할 및 운영 방식 재검토 필요 증가

- 학점은행제, 사서교육원 등의 지정교육기관 축소 또는 전면 폐지에 대한 도서관계의 요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
- 하지만 실제 폐지를 하는 경우 사서자격 취득 또는 승급을 위한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1990년대 이후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및 사서자격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
 -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고시제도의 도입, 최소 학점 이수제도의 도입, 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20년 넘게 제기
-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사서자격개선이 포함되기도 함
 - 추진세력이 미비하고 이해당사자간 여러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은 미비
- 다양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가운데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실제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 사서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제정된 법령과 규정을 현재까지 유지하는데서 오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배제한 실제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

2.3 사서자격 취득과 양성 체계

2.3.1 사서자격 양성 기관

■ 사서인력 양성 기관

- 2021년 현재 국내의 사서인력 양성기관은 4년제 학부과정 32개교, 2년제 대학과정 5개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33개교, 대학 부설의 사서교육원 3개교 및 전문대학 부설의 학점은행제 4개 기관이 운영

■ 대학 운영 현황

- 1970년대 이후 여러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
- 2021년 현재 32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및 5개 전문대학, 33개 대학원에서 사서직 전문인력을 양성
-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국내 37개 대학에서는 기존의 부전공제에 의한 준사서 자격 취득 및 학부제의 시행과 함께 타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이 문헌정보학을 복수전공함으로써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어 실제로는 각 학과의 정원 이상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양산
-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및 부산여자대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사서교육원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1급과 2급 정사서, 준사서 및 사서교사의 자격교육을 실시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다수 배출

<표 5> 사서직 양성기관 체계: 대학 (2020년 5월 현재)

구분	지역	교육기관명	학위과정				학과 신설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일반	교육		
4년제 대학 (32)	수도권 (14)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	○	○	○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		○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	○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	○	○	○	
		상명대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	○	○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	○		○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	○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	○	○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	○		○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	○	○	○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	○		○	
	부산·경남 (4)	경성대 문헌정보학과		○	○			
		동의대 문헌정보학과		○	○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	○	○	○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		○		
	대구·경북 (4)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	○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	○		○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	○		○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	○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공공인재학부 문헌정보학과		○	○		○	
	대전·충청 (6)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		○		
		충부대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청주대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		○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	○		○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	○			
	광주·호남 (4)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	○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	○		○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	○	○	○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	○			
전문 대학 (5)	수도권 (3)	대림대 도서관미디어정보과	○	○				
		승의여대 사회실무학부 문헌정보과	○					
		명지전문대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	○					2021년
	부산·경남 (2)	부산여대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					
		창원문성대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					

■ 지정교육기관 운영 현황

□ 현재 3개 지정교육기관 지정 운영

- 성균관대 한국사서교육원(1965), 계명대 사서교육원(1985), 부산여대 사서교육원(1997)에서 3개 교육과정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운영 중
- 교육기간은 1년 2학기 운영되며,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운영 (1학점은 16시간 이상 강의(실습 포함) 수강 시 취득)
- 사서자격 취득자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10,468명

<표 6> 지정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현황

구분	교육기관명	자격증취득과정			학사과정		
		정사서		준사서	전문학사		학사
		1급	2급		2년제	3년제	
지정 교육기관 (1년)	성균관대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	○	○			
	부산여대 부설 사서교육원	○	○	○			
	계명대 부설 사서교육원	○	○	○			
학점은행제	경상대 부설 평생교육원		○				○
	대림대 부설 평생교육원		○				○
	숭의대 부설 평생교육원		○				○
	창원문성대 부설 평생교육원		○		○	○	

2.3.2 사서자격 취득 체계

■ 사서자격증 취득 체계의 문제

□ 현재 1급, 2급, 준사서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사서자격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귀결

- 2급 정사서 자격증이나 준사서 자격증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1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
-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도서관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최소 이수 학점만으로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

- 사서자격증의 취득 체계를 체계화하여 사서자격증의 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 시대와 대학 교육의 변화 등의 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

- 현재 사서자격증 발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관련 학과가 통폐합 또는 문헌정보학과에서 데이터 쪽으로 학과명이 변경되는 상황
- 이에 따라 졸업생에 대한 사서자격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과 재검토가 필요
 - 현재 2급 정사서 가호 자격요건에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
 - 준사서 가호 자격요건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
 - 졸업증명서에 학과명이 문헌정보학과(또는 도서관학과)로 기재되고 전공이 문헌정보학 전공(또는 도서관학)으로 되어 있다면 사서자격증 발급이 가능
- 사서로서의 근간이 되는 사서직의 철학과 이념, 지역사회와의 소통능력 등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데이터 처리 등 단순한 기법 중심의 교육으로 편향

■ 양성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질 관리 취약

- 사서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이외에 지정교육기관과 평생교육원 등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정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 확보 여부, 교과운영과 학점 부여 등 학사관리에 있어 고등교육기관과의 동일 수준 유지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

■ 사서의 교육 수준이나 실습 요건 등이 전문직으로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실습 또는 실무 경험이 부족
 - 기록관리 전문가 분야 등은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
 - 의료전문직, 학예사 등은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 또는 현장 실무 경험을 요구
 -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최소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를 요구

■ 자격 취득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규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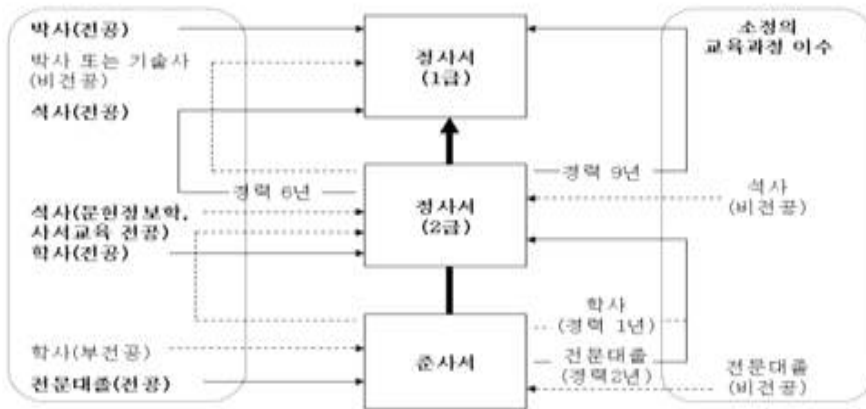
□ 한 번 취득한 사서자격은 유효기간이 없어 평생 유지

- 「도서관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등에서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구체성이나 결과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서의 전문 능력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함
-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 결과가 자격 승급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지속적 재교육이나 훈련의 유인책이 되지 못함

■ 유명무실한 3등급 체제

□ 현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계층화된 사서자격은 실무경력과 계속교육(석사 또는 박사학위 이수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교 학위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 학력 차별의 논란이 발생

□ 사서자격 등급이 도서관 등의 현장 조직이나 직무와 연계되지 않아 현행 등급 체계가 유명무실한 상황



(그림 2) 한국의 사서자격증 취득 과정 (문화체육관광부, 2008)

2.4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4.1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 사서자격증 발급

- 국내에서 사서자격증은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대학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 사서교육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
- 2007년 이후 실시된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서자격증 취득 증가
 - 대학교와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사서자격 취득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취득에 따른 사서자격증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2007년 0.7% → 2017년 17.7% → 2018년 18.3% → 2019년 19.9%



(그림 3) 사서자격증 발급 추이 (2007~2019)

- 최근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사서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문헌정보학계의 강력한 반대가 제기
 -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의 사서 관련 과목 개설에 대해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가 사서의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

- 2020년 4월 22일,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점은행제 및 온라인 교육기관을 통한 사서자격자 배출 반대” 성명서를 발표

〈표 7〉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1965년~2019년 12월 31일 기준)

자격증 구분	전체(명)	대학교*		지정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취득자수 (명)	비율 (%)	취득자수 (명)	비율 (%)	취득자수 (명)	비율 (%)
1급 정사서	2,819	2,670	94.7	149	5.3	-	-
2급 정사서	58,511	53,314	91.1	2,249	3.9	2,948	5.0
준사서	33,362	25,292	75.8	8,070	24.2	-	-
계	94,692	81,276	87.2	10,468	11.1	2,948	5.0

* 현재 40개 대학교(2년제 대학, 대학원 포함) ‘문헌정보학과’ 설치·운영 중
서울(12), 부산(5), 대구(2), 인천(1), 광주(2), 대전(2), 경기(5), 충북(2), 충남(3), 전북(2), 경북(3), 경남(1)

** 서울(성균관대), 대구(계명대), 부산(부산여대) 교육기관(부설 사서교육원)에서 운영 중

*** 학점은행제(문헌정보학사 취득)를 통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은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19963호 개정 2007.3.27., 시행 2007.4.5.)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인정 및 발급
현재 서울(숭의여대 등 6개), 경기(대림대 등 2개), 경남(창원문성대 등 4개)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

<표 8> 2007년 이후 연도별 사서자격증 취득 현황

연도	전체 (건)	대학교 (1·2급 정사서, 준사서)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1·2급 정사서, 준사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2급 정사서)	
		취득자수 (명)	비율 (%)	취득자수 (명)	비율 (%)	취득자수 (명)	비율 (%)
2007	2,471	2,078	84.1	376	15.2	17	0.7
2008	2,414	2,175	90.1	233	9.7	6	0.2
2009	2,420	2,031	83.9	363	15.0	26	1.1
2010	2,447	2,104	86.0	322	13.2	21	0.9
2011	2,416	2,035	84.2	342	14.2	39	1.6
2012	2,470	2,053	83.1	361	14.6	56	2.3
2013	2,452	1,900	77.5	388	15.8	164	6.7
2014	2,650	1,979	74.7	376	14.2	295	11.1
2015	2,764	2,000	72.4	390	14.1	374	13.5
2016	2,771	1,989	71.8	378	13.6	404	14.6
2017	2,810	1,979	70.4	333	11.9	498	17.7
2018	2,854	1,969	69.0	361	12.7	524	18.3
2019	2,647	1,865	70.5	258	9.7	524	19.8
2020	2,906	1,971	67.8	297	10.2	638	22.0
계	36,492	28,128	77.1	4,778	13.1	3,586	9.8

* 2007년 학점은행제 신설 이후 현황

*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학위과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헌정보과가 설치된 2년제 대학(숭의여대·대림대·창원문성대)의 평생교육원 중심으로 운영 중

<표 9> 2019년도 사서자격증 신규 발급 현황

자격증 구분	발급자수 (비율)	비 고
1급 정사서	158 (6%)	• 1990년부터 발급 (갱신 2건 포함)
2급 정사서	2,047 (77.3%)	• 1990년부터 발급 (1966~1989년도 정사서) (갱신 미포함)
준사서	442 (16.7%)	• 1966년부터 발급
계	2,647 (100%)	

〈표 10〉 최근 3년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연 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단위: 건)			
	합계	신 규	갱 신	재 발급
2019	3,140	2,647	24	469
2018	3,311	2,854	17	440
2017	3,126	2,810	17	299
2016	3,117	2,771	14	332

2.4.2 사서의 양성 및 취업

■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양적 증가

- 매년 사서자격증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 2,600~2,800여 명이 신규 사서자격증 취득
 -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 졸업생수는 2014년부터 2017년의 4년간 소폭의 증가 추세(2017년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 전문대학 졸업자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대학 졸업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학원 졸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6년 이후 전문대학과 대학 졸업자 중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취업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대학원 졸업자는 취업자가 증가 추세
- 사서자격증 취득자는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서자격증의 취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자격으로서의 사서자격에 대한 신뢰가 하락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 특히 2017년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반면,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증가
- 장서 수, 관종별 도서관의 건립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장서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 운영과 정보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전문사서의 충원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미비
 - 사서 인력의 충원도 비정규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심각한 문

제가 유발

- 사서로서의 사명감이 미비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서들이 도서관 운영과 정보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

<표 11> 2019년도 후기 사서자격증 단체 발급 및 취업 현황

대학 및 교육기관	기관 수		졸업생수		취업현황								
	응 답	미 응 답	응 답	무 응 답	도서관				유관 기관 (협회, 협의회, 학회 등)	전공 관련 업체	대 학 원 진 학	전공 외 취업	미 취 업
					공 공	대 학	학 교	전 문					
대학	29	6	225	46	8	5	1	0	0	7	4	28	172
전문대학	2	3	3	0	2	0	0	0	0	0	0	0	1
사서 교육원	3	0	139	6	9	4	5	3	0	1	1	51	65
소계	34	9	367	52	19	9	6	3	0	8	5	79	238
합계	43		419		37				129				
					367								

* 기관 수 미응답은 단체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 사서의 양성과 취업 문제

- 우리나라 사서직은 1957년 이후 4년제 및 2년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 왔으며, 매년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상황
- 사서자격증 소지자들은 공채시험 등을 통해 각 관종별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 또는 사서직원으로 취업하거나 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초·중등학교의 사서교사로 채용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정보에 의하면, 매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은 19.6% 정도로 실질적 취업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 임시직, 기간제 등으로 취업하고

있어 사서로서의 정규직 취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

- 이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학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서를 배출하는 단기 프로그램인 사서교육원의 계속적 존치 및 신규 인가를 들 수 있음
 - 1960년대 초반 새로운 학문이 처음 유입되는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될 목적으로 설립된 사서교육원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충분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도 존속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를 신규로 설치하는 대학이 생겼다는 것은 사서 교육 및 양성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서교육원 등의 단기간 프로그램은 전문 사서직의 양성이라는 중요한 사명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양적인 증대는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사서직 채용의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의 과잉이라는 결과를 초래

<표 12>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및 취업 현황 (2014년~2018년)

학제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
전문대학 합계/평균	졸업자수(A)	334	48	281	85.6	356	50	306	86	307	41	266	86.6
	A/B(%)	20.1	12.3	22.1		21	13.6	23		17.5	8.9	20.6	
	취업자수	209	25	184		216	25	191		187	22	165	
	취업률(%)	62.6	52.1	65.5		60.7	50.0	62.4		60.9	53.7	62.0	
	C/D(%)	21.9	11.8	24.7		21.9	11.6	24.8		19.5	8.6	23.5	
대학교 합계/평균	졸업자수(A)	1,211	314	897	74.1	1,207	297	910	75.4	1,300	383	917	70.5
	A/B(%)	72.8	80.5	70.4		71.1	80.5	68.5		74.2	83.3	71	
	취업자수	664	167	497		677	175	502		670	210	460	
	취업률(%)	54.8	53.2	55.4		56.1	58.9	55.2		51.5	54.8	50.2	
	C/D(%)	69.5	79.1	66.8		68.6	81.0	65.1		69.8	81.7	65.4	
대학원 합계/평균	졸업자수(A)	119	28	91	76.5	134	22	112	83.6	145	36	109	75.2
	A/B(%)	7.2	7.2	7.1		7.9	6	8.4		8.3	7.8	8.4	
	취업자수	82	19	63		94	16	78		103	25	78	
	취업률(%)	68.9	67.9	69.2		70.1	72.7	69.6		71.0	69.4	71.6	
	C/D(%)	8.6	9.0	8.5		9.5	7.4	10.1		10.7	9.7	11.1	
전체 합계/평균	졸업자수(B)	1,664	390	1,274	76.6	1,697	369	1,328	78.3	1,752	460	1,292	73.7
	취업자수	955	211	744		987	216	771		960	257	703	
	취업률(%)	57.4	54.1	58.4	0.0	58.2	58.5	58.1	0.0	54.8	55.9	54.4	0.0

학계구분		2017년				2018년				합계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합계	남자	여자	여성 비율(%)
전문대학 합계/평균	졸업자수(A)	303	44	259	85.5					1,300	183	1,112	85.5
	A/B(%)	17.3	10.7	19.4						19.0	11.4	21.3	
	취업자수	182	27	155						794	99	695	
	취업률(%)	60.1	61.4	59.8						61.1	54.1	62.5	
	C/D(%)	18.7	10.9	21.3						20.5	10.6	23.6	
대학교 합계/평균	졸업자수(A)	1,269	332	937	73.8					4,987	1,326	3,661	73.4
	A/B(%)	72.6	80.4	70.2						72.7	81.2	70.0	
	취업자수	662	188	474						2,673	740	1,933	
	취업률(%)	52.2	56.6	50.6						53.6	55.8	52.8	
	C/D(%)	68.0	76.1	65.2						69.0	79.5	65.6	
대학원 합계/평균	졸업자수(A)	175	37	138	78.9					573	123	450	78.5
	A/B(%)	10	9	10.3						8.4	7.5	8.6	
	취업자수	130	32	98						409	92	317	
	취업률(%)	74.3	86.5	71.0						71.4	74.8	70.4	
	C/D(%)	13.3	13.0	13.5						10.6	9.9	10.8	
전체 합계/평균	졸업자수(B)	1,747	413	1,334	76.4					6,860	1,632	5,228	76.2
	취업자수	974	247	727						3,876	931	2,945	
	취업률(%)	55.8	59.8	54.5	0.0					56.5	57.0	56.3	

■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 현재 운영 중인 3개 사서교육원에서 배출된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196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182명 (2008년 제외)
 - 1급 정사서 76명, 2급 정사서 2,936명, 준사서 5,971명, 사서교사 700명 등
- 2010년 이후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기관에서 상당수의 사서자격증 취득자가 배출
 - 2012년부터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2급 정사서를 양성
 -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평생교육에 의한 사서양성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서자격자는 연간 평균 2,533명이 배출
- 이 중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심화과정 이수자를 제외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6.6%를 차지하며 정규교육과정 배출 현황을 위협할 정도의 비율로 증가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13년부터 큰 폭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

<표 13> 양성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10년~2013년)

구분	4년제	전문대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기타	계
2010년	1급	73	-	-	53	126
	2급	1446	-	86	21	1569
	준사서	49	465	236	2	752
	계	1568	465	322	21	2447
2011년	1급	54	-	-	46	100
	2급	1450	-	99	39	1618
	준사서	36	419	243	-	698
	계	1540	419	342	39	2416
2012년	1급	59	-	-	53	112
	2급	1435	25	91	56	1633
	준사서	25	430	270	-	725
	계	1519	455	361	56	2470
2013년	1급	58	-	-	44	102
	2급	1437	23	103	164	1,757
	준사서	18	290	285	-	593
	계	1513	313	388	164	2,452

■ 단기 교육기관을 통한 사서 양성의 문제

- 사서교육원이 1960년대 당시 사서직원의 심각한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서직의 양성 및 충원의 필요성을 일시적으로 충족시킨 의의가 있으나,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에게 단기간의 교육으로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도서관계에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문제를 초래

- 현재는 사서직의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정보환경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자격증 취득자 배출이 수요 이상의 공급과잉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50여년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문성을 확보한 사서직의 양성과 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정보적·사회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사서직 양성이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
 - 수익사업으로서의 단기 교육과정의 전략은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수강생의 충원에만 집중을 하고 교육과정이나 전담교원의 질 확보는 도외시한 부실교육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문헌정보학 박사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1급 정사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자격증의 신뢰도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제 3 장

사서자격제도 분석

3.1 주요 선진국의 사서자격제도 분석

3.2 국내 사서자격제도 분석

3.3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제 3 장 사서자격제도 분석

3.1 주요 선진국의 사서자격제도 분석

3.1.1 미국의 사서자격제도

- 미국은 대표적인 사서자격 인증제 채택 국가로서 미국 도서관 현장 대표 전문 단체인 미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모든 인증과정을 주도하고 있음 (ALA, 2006a)
- ALA는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인정을 받은 공식 심의기관으로, 1925년부터 문헌정보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는 ALA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석사학위를 채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현재 ALA에 의해 62개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및 캐나다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이에 포함 (ALA, 2006b)
- ALA는 인증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두고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인증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LA, 2015)” 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패널(External Review Panelists)이 각각의 석사과정을 심의하게 하고 있음
-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인증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에서 ALA 인증의 목적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인증 평가를 위한 심의과정은 공적인 책무성과 학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평가 및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는 협동과정으로 교육품질의 보장과 학생 학습 개발 지원 결과를 심의하는 것으로 정의함
 - ALA 인증을 위한 인증 평가 기준은 기준 I(체계적 계획), 기준 II(교육과정), 기준 III(교수진), 기준 IV(학생), 기준 V(관리, 재정 및 자원)과 같은 총 4개의 챕터로 구분됨
 - 4개의 인증 평가 기준은 세부항목으로 각각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음

〈표 14〉 ALA 인증 평가 기준 및 필수요소

I. 체계적인 계획

해당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분	세부 항목
프로그램의 목표, 목적 및 계획 전략	<p>I.1 프로그램의 수요자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행정적, 교육적 목적과 목표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사명, 목표, 목적 및 학생 학습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 -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이나 학생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 평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선 - 계획 정책 및 과정의 원활한 순환 - 미래 비전 및 방향의 제공, 필요 자원의 식별, 대학 행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이 가치와 일치하여 양질의 교육 운영
학습결과	<p>I.2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이 명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의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정보 연구 분야의 본질적 특성 - 해당 분야의 철학, 원칙 및 윤리 - 적절한 문서화 원칙 - 해당 분야의 지식 기반 발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 다른 분야와 도서관 및 정보 연구와의 공생 관계 - 소외 계층의 필요 충족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글로벌 사회에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역할 -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역할 - 프로그램이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의 요구에 부합
교육과 현장서비스의 가치 통합	<p>I.3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교육과 현장서비스의 가치를 통합해야 한다.</p>
목표 평가 및 결과, 환류 체계	<p>I.4 각각의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대한 판단은 본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맥락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표 평가에 학생, 교직원, 고용주, 동문 및 기타 구성원의 동참 <p>I.5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평가를 입증</p>

	<p>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p> <p>I.6 평가결과가 프로그램이 개선과 미래 계획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	---

II.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이 수요자를 대표하고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계획 과정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세부 항목
교육과정 설계	<p>II.1 교육과정이 목적과 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론, 원칙, 실무,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적, 윤리적 문제와 가치에 대한 연구도 제공 가능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정 가능해야 한다.</p>
교육과정 내용 구성	<p>II.2 정보 자원과 서비스에 관한 내용, 관리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있는 도서관 및 정보전문가 양성 - 관련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진화하는 지식 체계를 강조하는 내용 - 설계, 적용 및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이론의 통합 -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함한 다양하고 글로벌 한 사회 요구에 응답 - 급변하는 분야의 미래 개발 방향을 제공 - 미래 실무자에게 필요한 기술, 역량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평생 학습에 대한 가능성 촉진 <p>II.3 학생들 개인의 요구, 목표, 열정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일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p> <p>II.4 일반, 전문 교육과정의 설계는 관련 전문 기관에서 개발한 지식 및 역량에 대한 명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교육과정 평가	<p>II.5 교수진과 교육 수요자 모두의 의견이 고려된 교육과정의 평가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p> <p>II.6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평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p> <p>II.7 평가결과가 프로그램이 개선과 미래 계획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III. 교수진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	세부 항목
교수진 구성	<p>III.1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능력있는 교수진이 있다.</p> <p>III.2 교육, 연구 및 서비스에 기반해 교육 및 학술활동의 전문성,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p> <p>III.3.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진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p>
교수진 임용 자격 및 요건	<p>III.4, III 5 & III.6 각 교수진의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취 기록을 보여줘야 하며 부합되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III.7 교수진의 능력이 프로그램의 필요와 일치해야 한다.</p>
교수진 평가	<p>III.8 교수진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절차 및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p> <p>III.9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평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p> <p>III.10 평가결과가 프로그램이 개선과 미래 계획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IV. 학생

학생 개인의 요구, 목표, 열정이 프로그램에 의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세부 항목
학생 모집 및 입학, 유지	<p>IV.1 프로그램의 사명과 목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 모집, 입학, 유지, 재정지원, 기타 학술 행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p> <p>IV.2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p> <p>IV.3 입학기준이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p>
학습 참여 환경 조성	<p>IV.4 학생 개인의 요구, 목표 및 열정이 충족가능하도록 일관된 학습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p> <p>IV.5 통합적인 학습 경험의 정의나 결정에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정책의 공식화, 수정 및 시행 - 연구 참여 - 학업 및 직업 조언 및 상담 - 필요에 따라 지원서비스 제공 - 학생 조직 형성 - 전문조직에 참여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평가 결과 환류	<p>IV.6 학생 성취도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p> <p>IV.7 개별 학생의 학업과 학업 성취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p> <p>IV.8 학생 학습 성과 및 개별 학생 학습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p>

V. 관리, 재정 및 자원

관리자, 행정 책임자, 교수 등이 각자의 책무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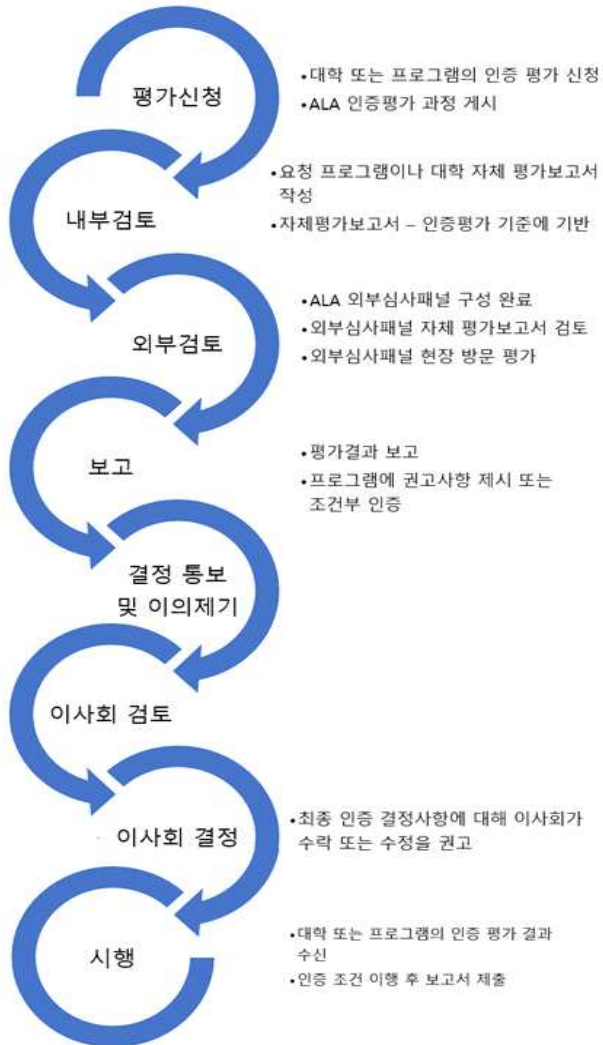
구분	세부 항목
프로그램 관리 체계	<p>V.1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학문단위로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그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인프라, 재정 지원 및 자원이 갖추어져 있다.</p> <p>V.2 교수진, 직원, 학생이 기관의 자문 및 정책결정기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p> <p>V.3, V.4 & V.5 프로그램의 행정 책임자는 올바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수진이 적합한 환경하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p>
교육개발 지원	<p>V.6 상위기관은 프로그램의 교육 개발 및 유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p> <p>V.7 교수진 및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게 주어지야 하며 프로그램 목표 및 목적 달성에 충분한 인력 확보, 지원 및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p> <p>V.8 모기관의 적절한 연구 교육 및 재정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교수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재정,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p>
시설 설비 지원	<p>V.9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자원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p> <p>V.10 학생과 교수진에게 기능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물리적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p>

	<p>V.11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시설 및 설비 등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p> <p>V.12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모든 지원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하는 직원과 서비스가 수준에 적합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p> <p>V.13 프로그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지원(시설 및 설비)이 제공되어야 한다.</p>
<p>관리, 재정 및 지원 평가 및 평가절차</p>	<p>V.14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평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p> <p>V.15 평가결과가 프로그램이 개선과 미래 계획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

■ ALA의 인증 평가과정은 최대 24개월 전부터 계획, 실행됨

- 인증 평가를 위한 심의과정은 공적인 책무성과 학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평가 및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는 공동과정으로 정의하고 교육품질의 보장과 학생 학습 개발 지원
- 대학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평가 요청 후 인증위원회는 외부 심사패널을 구성하고 평가 과정 게시
- 외부 심사패널은 학계, 현장 실무자,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최소 2인, 최대 6인이 한 팀으로 평가를 진행함
-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 평가 요청 후 다음과 같은 8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짐
 - 평가 신청 - 대학 또는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ALA는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과정을 게시
 - 내부 검토 - 인증 평가 신청 프로그램이나 대학은 인증평가 기준의 필수 요소에 기반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
 - 외부 검토 - ALA 인증위원회는 인증평가를 위한 외부 심사 패널을 추인하고 외부 심사 패널은 인증 평가 신청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평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평가를 진행
 - 보고 - 외부 심사 패널의 평가결과가 인증위원회에 전달, 인증 신청 프로그램이나 대학에 권고사항이 제시되거나 조건부 인증
 - 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 인증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이나 대학에 전달, 이의제기 수용을 위한 대기
 - 이사회 검토 -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 같은 기구에서 평가 결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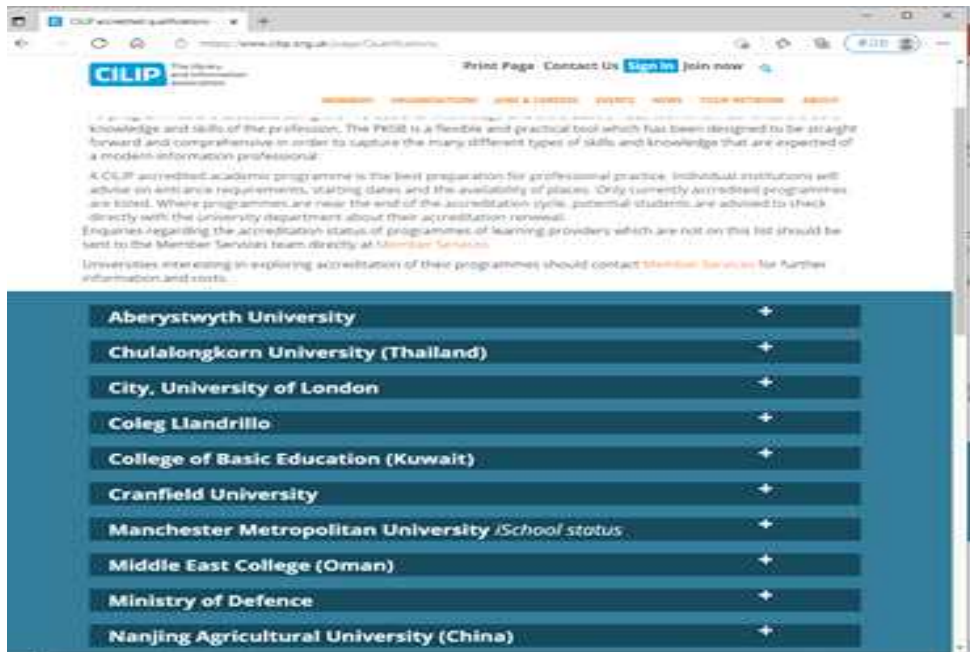
- 이사회 결정 - 최종 인증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최종 결정(수락 또는 수정권고)
- 시행 - 대학 또는 프로그램은 인증 평가 결과를 받은 후 조건이 제시된 결과 조건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 제출



(그림 4) ALA 인증 평가 절차

3.1.2 영국의 사서자격제도

- 영국의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CILIP)에서 ‘도서관 정보전문가’ 라는 명칭을 사용해 개인자격으로 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CILIP, 2019)
- 2021년 현재 중국, 태국, 독일 등 영국 이외의 해외 대학 몇 곳의 교육과정을 인증하며 외연 확장 과정에 있음 (CILIP, 2021c)



(그림 5) CILIP 인증 교육과정 리스트

- CILIP의 회원 자격 체계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자격인증(Certification; ACLIP) (CILIP, 2021b), 차터십(Chartership; MCLIP) (CILIP, 2021c), 펠로우십(Fellowship; FCLIP)(CILIP, 2021d)으로 구분되었다가 2019년 지식관리 차터십(Knowledge Management Chartership; KMCLIP)(CILIP, 2021e)를 추가
 - 최초 자격인증 후 매년 갱신 필요
 - 자격을 인증하는 것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자격 인증의 과정을 통해 직원의 역량 개발 및 훈련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전문가로서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각 레벨의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요구된 서류 및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의 서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지식관리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PKSB(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 지식관리기술 평가 도구)(CILIP, 2021a) 평가서를 제출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제시해야 함
 - 자격인증(Certification); ACLIP
 - 현재 도서관, 정보 지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 직원이 대상
 - 차터십(Chartership); MCLIP
 - 현재 도서관, 정보 지식 관리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 기술을 인정받고자 하는 숙련된 직원이 대상
 - 펠로우십(Fellowship); FCLIP
 - 도서관, 정보 지식 관리 분야에서 고위직에 있으며 전문가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 대상
 - KM 차터십(MCLIP KM), KM 펠로우십(FCLIP KM)
 -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자격
 - KM Conversion Pathway (CILIP, 2021g)
 - 이미 MCLIP과 FCLIP을 보유한 경우 지식관리 분야 전문성 인정을 위해 기존의 MCLIP, FCLIP을 MCLIP KM, FCLIP KM을 변환, 지식관리 전문가로서의 자격 또한 인증해주고자 함

〈표 15〉 CILIP 자격인증 신청 서류 및 평가기준

신청서류 종류		구성 항목
신청서류 (포트폴리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평가서(1000자 이내) ◆ 업무 지식 및 기술 개발을 보여주기엔 적합한 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젠테이션 노트, 역량 개발 계획, 보고서, 블로그 등 ◆ 이력서 ◆ 직무기술서(현재 또는 가장 최근) ◆ 최초 PKSB(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 평가서 ◆ 현재 PKSB(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 평가서
	차터십, KM 차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조직의 목표&목적 기술서 ◆ 멘토/멘티 동의서 및 멘토/멘티 완결서
	펠로우십 KM 펠로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조직의 목표 및 목적 기술서 ◆ 추천서 최소 2통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으로서의 개인적 성취도 및 전문적 성취도 ◆ 전문성 발전에 대한 조직, 기관면에서 바라본 공헌도 ◆ 전문지식 및 보다 넓은 전문적 맥락에서 바라본 전문인으로서의 기여도 	

※ CILIP의 회원관리규정, 각 자격인증 가이드를 참조해 재구성 (CILIP, 2011)

3.1.3 독일의 사서자격제도

■ 독일의 사서자격제도는 이론적 학습을 위해 학교를 졸업한 후 독일의 직업 훈련법에 근거해 국가 직업센터에 연계된 전문 실무 교육을 완료하게 하는 이론-실무 통합의 이원적 전문가 훈련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사서구분을 1등급부터 3등급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격기준과 등급을 명확하게 구분

- 1등급(Grade 1): FAMI(Fachangestellter Medien und Information = Media and Information Assistant, 매체정보보조원)

- 2등급(Grade 2): Diplom-Bibliothekar (Certified Librarian. 인증사서)
- 3등급(Grade 3): Fachreferent (Subject Specialist. 주제전문가)

■ 주제전문가 인정 등급인 3등급은 과학사서 또는 학술사서로 명명하며 대학 학위 이후에 2년간의 전문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표 16> 독일의 등급별 사서 자격 구분, 요건 및 업무

등급	자격요건	업무내용
1등급 (Grad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 10학년 수료 ◆ 10주 학습 후 10주 도서관 실습을 진행하는 3년 과정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목록 활용 ◆ 대출 ◆ 정기간행물관리 ◆ 서가관리 ◆ 참고업무 등 ◆ 인증사서와 정보전문가 보조
2등급 (Grad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인증 또는 도서관 학위 소지자(12학년 혹은 13학년 코스의 중등학교 학위 소지자) ◆ 기술대학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4년간의 훈련프로그램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편목 ◆ 특별 서적 수서 ◆ 참고봉사 ◆ 구입자료 선정 ◆ 도서관 관리직 업무 ◆ 정보관리 코스와 유사성 확대 중
3등급 (Grad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사서 또는 학술사서 ◆ 대학 학위 후 2년간의 전문 훈련 이수 ◆ 원격학습 또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도서관학 석·박사 학위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전문사서 ◆ 장서개발 ◆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대등한 관리직 역할

3.1.4 프랑스의 사서자격제도

■ 프랑스는 사서자격제도 및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에 국가적 지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

- 프랑스의 공인 사서자격제도는 도서관 전문사서(Conservateur)와 일반사서(Bibliothecaire)로 구분이 가능
 - 도서관 전문사서는 학사학위소지 또는 동등한 수준의 교육수준 소지자에게 자격부여가 가능하며 도서관의 관리감독직으로서 국가고시 통과 후 18개월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4년 이상의 서비스 경험 요구 (ONiSEP, 2021a)
 - 일반사서는 파리 가톨릭 학교의 사서 다큐멘타리를 졸업하거나, Enssib(National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s)에서 전문 교육(6~18개월) 이수 필수 (ONiSEP, 2021b)
 - 이외 도서관 어시스턴트, 보조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자격체계로 가는 것은 아님

- 일반사서와 전문사서 모두 필수 일반 과정을 완수한 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취득될 수 있도록 전문 훈련 과정이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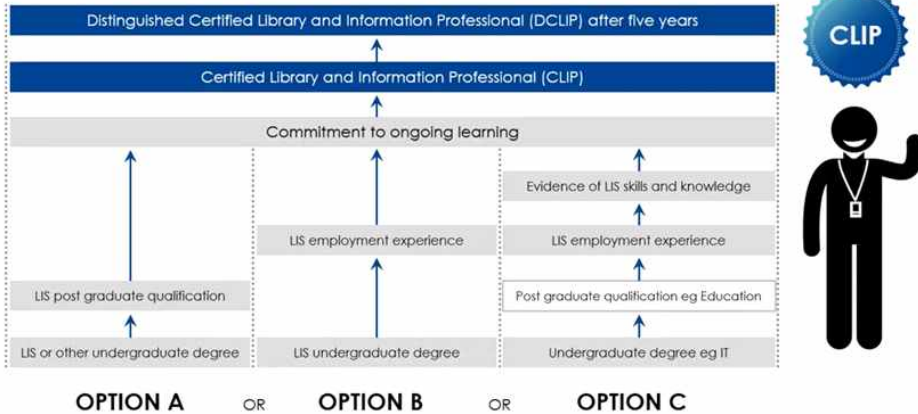
3.1.5 호주의 사서자격제도

- 호주의 사서자격제도는 호주 도서관 정보 협회(ALIA: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에서 주관
 - ALIA는 문헌정보학 학부,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도 ALIA의 인증을 받은 학부 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채용 조건으로 요구

- 프로그램 인증평가는 5년 주기, ALIA의 계속 교육을 거친 후 검증된 전문사서(Certified Practitioner: CP; Certified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LIP) 자격 취득 가능

- 검증된 전문사서 자격 취득의 경로를 도서관 기술직원(library technician), 사서(librarian)의 단순 이원 체계에서 사서자격 인증을 위한 통로를 다양화하는 과정에 있음
 - 2021년 사서자격 인증 통로는 3가지 경로가 소개되고 있음
 - CLIP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경로 모두 현장에서의 훈련과정과 경험을 통한 지속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LIS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및 검증 필수

The path to Certified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 (CLIP)



(그림 6) 호주 CLIP 인증 과정

3.2 국내 사서자격제도 분석

3.2.1 국내 사서자격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1960년대에 들어 법령으로 제도화
- 현재 국내 사서인력 양성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32개교와 전문대학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 5개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교육기관 3개 기관(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988년 정사서 자격기준 개정, 1994년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 2007년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서자격 취득에 따른 개정 등을 거쳐 현재 국내 사서자격제도에에는 2012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음

<표 17> 국내 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2012.8.13. 개정)

구분	자격요건
<p>1. 1급정사서</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p> <p>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p> <p>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p>
<p>2. 2급정사서</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준사서</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p>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 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국내 사서자격증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위탁 발급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 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함. 즉,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 후 신청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됨

■ 사서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학생 성취도 등에 대한 확인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각 등급의 사서 자격요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또는 능력 검증 자격증(기술사) 등에 따름

■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1급 및 2급 정사서와 준사서로 직급만 구분된 체계로 사서자격증이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검정과정 없이 학위 취득과 학점 이수 완료 후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현황
- 사서자격을 학점 이수 및 근무 연한으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등급은 자격 소지자의 전문적 지식 소양 수준 업무 수행 능력 등과는 무관하게 운영
- 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자격 소지자의 양적 증가 또한 사서가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를 가중
- 사서자격 취득 검증 및 이를 뒷받침할 전문 단체의 권위 및 구조체계가 미약
- 결과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사서직의 전문적 소양과 직무 역량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서자격제도의 유지에 머무르는 현실

- 다양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분석 후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실제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배제한 실제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포괄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

3.3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 사서자격제도 개선 동향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도서관계 선진국에서도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서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로서의 사서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직의 교육내용 및 수준 등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해 문헌정보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과정을 강조
 - 사서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론 및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훈련 및 재교육, 사서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 도서관계의 사서·정보전문가 자격인증 체계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 변화는 필수적으로 현장 경험 및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전문 역량 강화 및 검증 과정의 강화가 핵심
 - 영국의 CILIP 자격인증 체계는 개인 업무 성과 근거 자료, PKSB 평가서 등을 심사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검증
 - 독일은 직업훈련법의 이론-실무 통합 이원적 전문가 훈련제도를 근거로 전문실무교육 완료 후 자격인증
 - 프랑스 또한 국가고시를 통과한 전문사서의 경우에도 국가가 제시하는 의무 교육 훈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 자격 취득
 - 호주는 2020년 말 자격인증의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검증된 전문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 과정에 지속교육 및 훈련과정을 필수적으로 배치
- 도서관계 사례들 중 모두 학부 및 대학원 인증체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역량의 차이를 등급화 하는 방향으로 자격인증체계를 강화하는 추세

■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

-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 및 자격 검증 체계의 확보 필수
 -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의 강화 필요성 제기
 - 단순 학위 취득으로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사서 전문직으로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였음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성
 - 학부, 대학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문 지식과 기술의 양과 질 확보 및 검증 과정 필수
- 사서의 위상 고취 및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체계 구성이 필수
 - 이론-현장실무의 통합적, 이원적 교육시스템과 연계된 사서자격제도 확립이 필요
 -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 과정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필요성
- 사서 전문 역량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개인의 전문성 개발 지원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사서자격제도 확립이 필요
 - 등급에 따른 사서 전문 역량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 및 과정이 고민될 필요성 (영국의 PKSB(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사례)
 - 사서자격증 갱신 및 등급 관리 및 검증 체계 확립 필요 - 일정한 주기로 갱신 필수화
 - 사서 등급과 역량의 관리 및 검증 체계 확립 필요 - 최초 취득 후 주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전문역량 확보에 대한 근거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자격 취소 등의 과정 필수화

제 4 장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4.1 사서의 교육주체별 양성기관 분석

4.2 양성기관별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4.3 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 4 장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4.1 사서의 교육주체별 양성기관 분석

■ 교육주체별 사서양성기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교육주체별 사서양성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림 7) 사서 양성 교육기관 현황

- 대학(교) 문헌정보(도서관)학과 설치 현황(2020년 12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혹은 도서관학과 32개과 및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혹은 도서관과 5개과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음
 - 한성대학교는 2017년부터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으로 운영 중
 - 명지전문대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2021년) 신설
 - 강남대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데이터사이언스전공(2017), 나사렛대 점자문헌정보학과(2018), 동원대 문헌정보데이터관리과(2019), 경일대 문헌정보학과(2020)는 학과 명칭 변경 및 문헌정보학과 모집 중단

<표 18> 대학 문헌정보학과 현황

구분	지역	교육기관명	학위과정				학과신설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일반	교육		
4년제 대학 (32)	수도권 (14)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	○	○	○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		○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	○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	○	○	○	
		상명대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	○	○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	○		○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	○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	○	○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	○		○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	○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	○	○	○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	○		○	
	부산/ 경남 (4)	경성대 문헌정보학과		○	○			
		동의대 문헌정보학과		○	○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	○	○	○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		○		

	대구/ 경북 (4)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	○		○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	○		○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	○		○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	○			
	대전/ 충청 (6)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공공인재학부 문헌정보학과		○	○		○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		○		
		중부대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청주대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	○		○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	○		○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	○			
	광주/ 호남 (4)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	○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	○		○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	○	○	○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	○				
전문대학 (5)	수도권 (3)	대림대 도서관미디어정보과	○	○				
		승의여대 사회실무학부 문헌정보과	○					
		명지전문대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	○				2021년	
	부산/ 경남 (2)	부산여대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					
		창원문성대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교육기관 3개 기관

-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사서교육원에서 사서를 양성하고 있음

<표 19> 지정교육기관 현황

지역	교육기관명	설치년도 (인가)	내용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	1965년 4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대경권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1989년 7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동남권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사서교육원	1997년 7월	2급 정사서, 준사서

-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고시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호 (2018년 9월 1일)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기관 3곳(2020년 12월 기준)

<표 20> 최근 3년간 평가인정 학습과정(2급 정사서) 운영기관

운영년도	운영기관명
2019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창원문성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020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2021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승의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출석은 4년 주기, 원격은 3년 주기)을 받은 운영 기관

〈표 21〉 문헌정보학 학습과목 운영 현황(2020년 12월 기준)

유형	지역	운영기관명	평가인정 과목수
원격(3)	서울(3)	(IT)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	1
		e그린원격평생교육원	1
		케이시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	1
출석(12)	경기(3)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글로벌캠퍼스)	1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6*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사회교육원	1
	경남(2)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16*
		창원문성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0
	서울(7)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3
		동국대학교전산원	1
		명지전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
		서울애화학교	1
		숭실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	1
		승의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5*
		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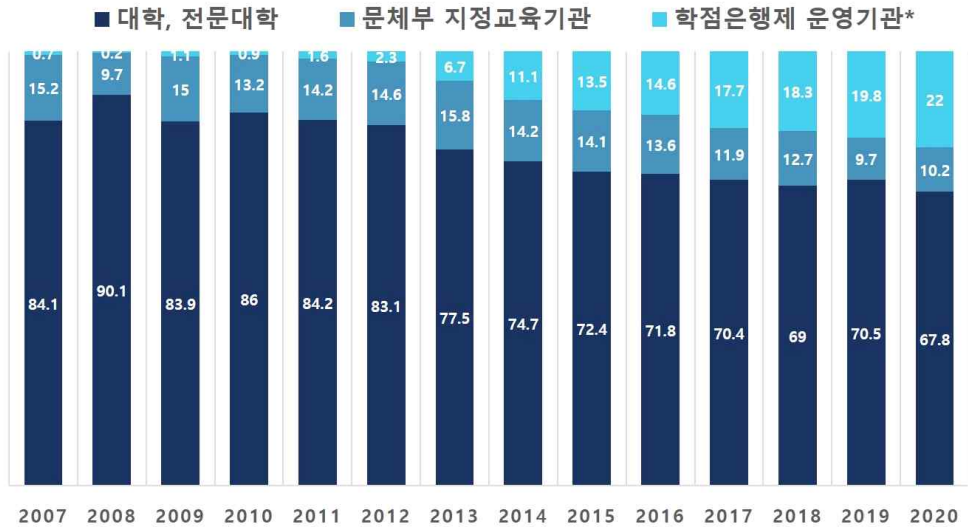
※ 출처: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주체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07~2020년)

<표 22> 교육주체별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2007~2020년)

연도	전체 (건)	대학교, 대학 (1·2급 정사서, 준사서)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1·2급 정사서, 준사서)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2급 정사서)	
		취득자수(명)	비율(%)	취득자수(명)	비율(%)	취득자수(명)	비율(%)
2007	2,471	2,078	84.1	376	15.2	17	0.7
2008	2,414	2,175	90.1	233	9.7	6	0.2
2009	2,420	2,031	83.9	363	15.0	26	1.1
2010	2,447	2,104	86.0	322	13.2	21	0.9
2011	2,416	2,035	84.2	342	14.2	39	1.6
2012	2,470	2,053	83.1	361	14.6	56	2.3
2013	2,452	1,900	77.5	388	15.8	164	6.7
2014	2,650	1,979	74.7	376	14.2	295	11.1
2015	2,764	2,000	72.4	390	14.1	374	13.5
2016	2,771	1,989	71.8	378	13.6	404	14.6
2017	2,810	1,979	70.4	333	11.9	498	17.7
2018	2,854	1,969	69.0	361	12.7	524	18.3
2019	2,647	1,865	70.5	258	9.7	524	19.8
2020	2,906	1,971	67.8	297	10.2	638	22.0
계	36,492	28,128	77.1	4,778	13.1	3,586	9.8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 사서자격증 발급이 시작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서자격증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표 22>에서와 같이 대학(교)와 문체부 지정교육기관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는 상당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사서양성기관별 자격증 발급현황

- (그림 8)에서와 같이 사서자격증 발급기관별 분포 비율에서도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서자격증의 비율이 2007년 전체 사서자격증 발급의 0.7%에서 2020년 22.0%의 비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4.2 양성기관별 사서 양성 교육과정 분석

■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 전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설 교과목 수 변동 현황
 - 최근 20여 년간 전국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설 교과목 최소 996개(2004년)에서 최대 1,197개(2014년)로 대학의 학사구조 및 학칙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2020년은 총 1,108개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학부기초는 12개의 대학에서 45개 교과목이, 전공필수는 23개 대학에서 158개 교과목이, 전공선택은 34개 대학에서 951개 교과목이 개설됨

〈표 23〉 대학 문헌정보(학)과 개설 교과목

연도	개설과목 수	학부 기초		핵심(전공필수)		심화(전공선택)	
		개설과목 수	개설학교 수	개설과목 수	개설학교 수	개설과목 수	개설학교 수
2004	996	60	14	68	11	868	32
2005	1,005	60	13	68	11	877	32
2006	1,039	61	17	62	13	916	32
2007	1,044	67	16	58	11	919	32
2009	1,074	85	18	65	13	924	32
2011	1,154	64	13	119	19	971	34
2014	1,197	42	12	152	25	1,003	35
2017	1,152	43	12	158	23	951	34
2020	1,108	45	12	137	22	926	32

□ 문헌정보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요건

- 대학교 및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요건을 조사하기 위해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학칙 및 학사규정을 조사함
- 4년제 대학교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129.67이고 그 중에서 단일 전공인 경우 최소 전공 이수학점은 평균 64.03, 복수 전공인 경우 타 학과 학생이 문헌정보학을 복수 전공할 때는 평균 40.48,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타 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평균 41.61 임
- 2년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평균 73.8이고 그 중에서 전공 학점은 평균 39.25임. 그러나 대학간 이수해야 하는 최소 전공학점의 편차가 크게 존재함
- 대학교 및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전공이수학점은 단일전공 시 최소 54학점에서 78학점까지 대학의 규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특히 타과학생이 복수전공 시 취득해야 하는 문헌정보학 전공 최소 이수학점 및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타과 복수전공 시 취득해야 하는 문헌정보학 전공학점도 대학간 차이가 최소 35학점에서 57학점까지 상당함
- 문교협에서 제시한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은 총 48학점(필

수 36학점, 선택 12학점)으로 대학에 따라 현재의 요건보다 상향 조정되는 것일 수 있음

- 상향 조정된 학점은 타과학생의 복수전공과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복수전공 시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다소 엄격해지는 효과가 있음

〈표 24〉 문헌정보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요건

대학명	총 졸업학점	전공 졸업학점 (단일전공)	복수전공	
			복수전공 학점 (타과학생)	복수전공 시 전공학점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130	60	42	42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130	63	36	42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130	57	42	42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전공	130	63	36	36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128	63	35	35
상명대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30	60	36	36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125	54	42	42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130	54	42	42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120	60	42	42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135	60	36	36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129	60	39	39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135	60	42	42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132	66	45	45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트랙(전공))	130	78	39	39
경성대 문헌정보학과	130	54	36	36
동의대 문헌정보학과	130	72	32	57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129	72	48	48
신라대 문헌정보학과	132	66	36	40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130	66	51	51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130	69	42	42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130	60	42	42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120	60	42	42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문헌정보학과	124	66	40	40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140	71	50	50
중부대 문화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30	70	36	36
청주대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130	60	36	36
충남대 문헌정보학과	130	78	39	39
한남대 문헌정보학과	120	66	36	36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130	60	45	45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130	66	45	45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140	63	42	42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130	72	42	42
평균(4년제 대학교)	129.67	64.03	40.48	41.61
대림대 도서관미디어정보과	72	56	X	X
숭의여대 사회실무학부 문헌정보과	80	70~71	X	X
명지전문대 미래융합학부 문헌정보과	75	57	X	X
부산여대 보건복지학부 문헌정보과(야간)	70	전공필수(평생교육 1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가능	X	X
창원문성대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72	32	X	X
평균(2년제 대학)	73.8	39.2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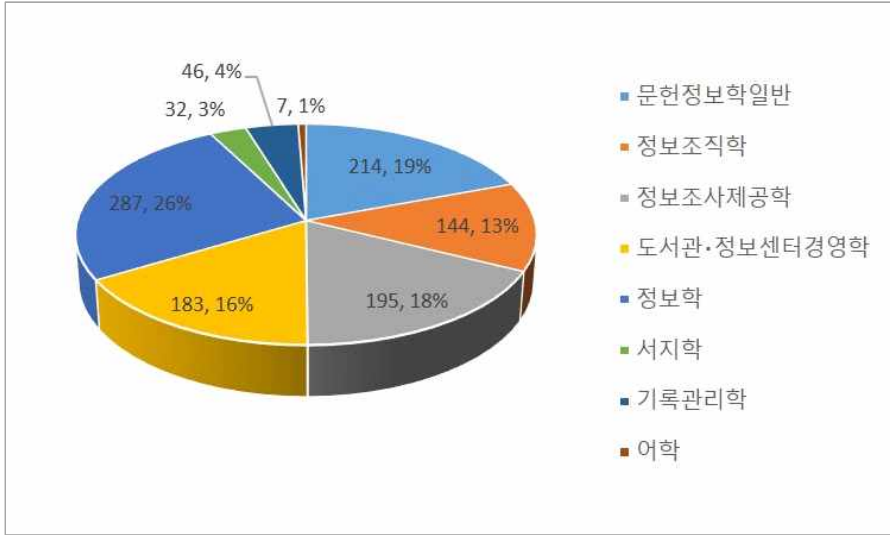
□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 전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변동 현황(노영희, 2020, 82)을 살펴보면, 다음 <표 25>와 같이, 2004년과 비교하여 2020년 현재는 총 개설 교과목이 112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문헌정보학 일반이 가장 많은 56개, 다음으로 정보학이 41개, 정보조직학이 28개, 정보조사제공학이 24개, 기록관리학이 1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지학은 29개, 어학은 22개,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은 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변동 현황

연도	문헌정보학일반	정보조직학	정보조사 제공학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어학	총 계
2004(A)	158	116	171	188	246	61	27	29	996
2011	196	142	201	215	269	59	45	27	1,154
2017	220	151	220	200	256	38	50	17	1,152
2020(B)	214	144	195	183	287	32	46	7	1,108
과목수변화 (B-A)	56	28	24	-5	41	-29	19	-22	112

- 2020년 기준 전국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영역별 분포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보학이 26%로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다음으로 문헌정보학일반이 19%, 정보조사제공학이 18%,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이 16%, 정보조직학이 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문헌정보학과 개설 교과목의 영역별 분포

- 2020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의 영역별 개설 교과목 현황을 살펴 보면 <표 26>~<표 33>과 같음
-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의 개설 교과목 중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사서실습 등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과목이었음
 - 그 외에도 도서관과저작권, 도서관과출판, 문헌정보학특강,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윤리, 정보사회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도서관과법 등이 개설되고 있었고, 각 대학교의 인재상과 특성에 따라 진로설계와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었음

<표 26> 문헌정보학일반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문헌정보학일반	과목수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캡스톤디자인, 인턴십, 정보미디어의역사, 주제전문사서종합설계	5
경기대학교	도서관문화사, 도서관실습, 문헌정보학개별진로연구, 문헌정보학의이해, 문헌정보학전공및진로탐색, 사서실무특강, 인턴십	7
경북대학교	도서관정보센터실습, 디지털시대의정보윤리, 문헌정보학개론, 출판및도서관사	4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특강, 정보문화사, 정보사회론, 정보전문직진로개발1(캡스톤디자인), 정보전문직진로개발2(캡스톤디자인)	6
계명대학교	도서관문화사, 도서관사회론,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전공글쓰기, 문헌정보학창업현장실습(1), 문헌정보학창업현장실습(2), 문헌정보학프로젝트, 문헌정보학학기창업현장실습, 문헌정보학학기현장실습, 문헌정보학현장실습1, 문헌정보학현장실습2, 문헌정보학현장실습3, 문헌정보학현장실습4, 최신문헌정보학세미나, 최신문헌정보학특강, 출판과저작권, 취창업과자기계발	18
공주대학교	교재연구및지도법, 문헌정보교육과교육론, 문헌정보학원론, 정보문화사, 정보매체와교수법	5
광주대학교	도서관사,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사서실습, 웹출판론, 정보사회론, 정보와사회, 취업전공특강1, 취업전공특강2	9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길라잡이, 도서관문화사, 도서관실무특론, 도서관학개론, 사서와정보윤리, 자기학습설계 I, 자기학습설계 II, 진로와취업을우회한전공별직업윤리	8
대구대학교	도서관과사회, 도서관문화사, 도서관법제론, 도서관실무실습,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의이해, 비평문헌정보학, 사서와인권, 사서취업특강	9
대진대학교	도서관문화사, 도서관실습,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사서윤리, 저작권, 지식정보사회론	7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의기초, 문헌정보학현장실습, 정보문화의역사, 4차산업혁명과문헌정보학의미래	4

동덕여자대학교	도서관및정보센터현장실습,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전자출판, 정보문화사, 정보와사회	6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특강, 사서실습, 전자출판, 정보문화사, 정보사회와저작권, 정보조사분석론	7
명지대학교	도서관과사회, 도서관정보센터실습, 문헌정보학의이해, 문정취업세미나, 정보문화사, 취업연수과정, 현장학습	7
부산대학교	도서관사상론, 문정고전읽기,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연구법, 문헌정보윤리론, 문헌정보학특강, 정보문화사, 현장실습	8
상명대학교	도서관과저작권, 문헌정보학의이해, 전공과창업, 전공과취업, 정보문화사, 지식재산의이해	6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의이해, 사회정보학, 정보사회도서관문화론, 정보윤리와지적재산권, 정보전문가역량강화를위한캡스톤디자인스터디, 졸업인증, 현장실무실습 I, 현장실무실습 II	9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데이터사이언스캠프, 문헌정보학개론, 도서및도서관사, 정보사회론	4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저작권과정정보윤리, 정보미디어의역사와문화,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	4
신라대학교	도서관문화사, 문헌정보학명저강독, 문헌정보학의이해, 사서실습, 진로지도 I -1, 진로지도 I -2, 진로지도 II -1, 진로지도 II -2	8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입문, 사회정보학, 정보관리실습, 정보윤리	4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법제의이해, 도서관실습, 문헌정보학의이해, 전공심화설계1, 전공심화설계2, 정보와사회, 현장실습1, 정보조사방법	8
인천대학교	도서및도서관사,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특강, 미디어와출판, 자기설계세미나 I, 저작권, 정보전문가역량강화를위한캡스톤디자인, 전자출판론, 출판문화사	10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법률·특허정보실습, 웹출판, 전문업무실습, 정보문화사, 지식재산권의이해, 지식정보사회, 출판문화론	8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입문, 문화콘텐츠체험및탐사, 사서실습, 출판저작권의이해	4
전주대학교	NIE와논술지도, 문헌정보학개론, 사회의이해, 정보와지적재산,	6

	캡스톤디자인, 현장실무실습	
중부대학교	도서관실무연습, 도서관과저작권, 문헌정보학의이해, 책의역사와문화	4
중앙대학교	공공도서관실습, 대학및전문도서관실습, 문헌정보학원론, 정보문화사, 지식정보사회론, 한국학문헌정보론	6
청주대학교	도서관교육실습 I, 도서관교육실습 II, 도서관관련법과법률정보원,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의이해, 문헌정보학전문용어해설	6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특강, 미래설계상담1, 미래설계상담2, 미래설계상담3, 미래설계상담4, 미래설계상담5, 미래설계상담6, 사서실습, 정보문화사, 정보윤리, 문헌정보조사방법론	12
한남대학교	도서관과사회캡스톤디자인,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 정보문화사, 현장실습	5
한성대학교	도서관과마을공동체, 도서관문화사, 문헌정보학캡스톤디자인, 문화콘텐츠와저작권	4

※ 노영희(2020, 104-109)의 표를 재구성

■ 정보조직학 영역에서는 자료조직분류와 자료조직목록(또는 통합하여 자료조직론)이 공통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자료조직실습 과목 또한 상당수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고문헌조직론, 메타데이터의이해, 비도서및멀티미디어자료조직론, 자동화목록실습, LOD 또는 오픈액세스가 개설되고 있음

<표 27> 정보조직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정보조직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메타데이터, 자료조직(목록), 자료조직(분류)	3
경기대학교	자료목록론, 자료분류론, 자료조직실습, 메타데이터	4
경북대학교	정보자원목록론, 정보자원분류론, 정보자원조직	3
경성대학교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 I, 정보자료조직론 II	3
계명대학교	목록규칙의이해, 분류표의이해, 자료조직연습,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편목론	5
공주대학교	목록조직론, 정보분류론, 정보분류실습, 한국문헌자동화목록	4
광주대학교	고문헌조직론, 메타데이터의이해, 분류목록실습, 정보조직론, 정보분류론	5
대구가톨릭대학교	목록학, 분류학, 정보조직연습, 정보조직의실제	4
대구대학교	메타데이터, 목록법의이해, 자동화목록법, 자료분류론, 자료분류특강, 특수매체목록, 특수매체분류	7
대진대학교	메타데이터실제론, 목록편성론, 문헌분류론, 자료조직연습	4
덕성여자대학교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자료조직론, 특수자료조직론	3
동덕여자대학교	정보자료목록법, 정보자료분류법, 정보조직실습	3
동의대학교	메타데이터론, 문헌목록학 I, 문헌목록학 II, 문헌분류론, 자동화목록법, 자료조직특강	6
명지대학교	고문헌조직론, 정보조직론, 정보조직연습 I, 정보조직연습 II, 메타데이터구성론	5
부산대학교	고문헌조직론, 메타데이터, 정보조직론, 정보조직실습, 지식분류론	5
상명대학교	메타데이터의이해와ICT활용, 문헌분류법, 문헌분류연습, 자동화목록법실습	4
서울여자대학교	기초메타데이터, 목록과의미론적정보가공, 정보조직:분류,	4

	멀티미디어정보조직	
성균관대학교	고문헌조직법, 메타데이터론, 정보분류론, 정보조직론	4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분류체계론, 정보조직체계론	2
신라대학교	고전자료조직, 메타데이터의이해, 목록학, 목록학연습, 분류학, 분류학연습	6
연세대학교	메타데이터, 정보조직론:목록, 정보조직론:분류	3
이화여자대학교	정보자원분류실습, 정보자원분류의이해	2
인천대학교	메타데이터, 비도서자료조직, 자료목록법, 자료목록실습, 자료분류법, 자료분류실습, 자료조직연습	7
전남대학교	문헌목록론, 문헌분류론, 특수매체조직, 매체조직실습	4
전북대학교	멀티자료조직론, 메타데이터, 정보자료조직론 I, 정보자료조직론 II, 정보자료조직연습	5
전주대학교	LOD구축실습, MARC와RDA, 메타데이터구축실습, 목록학, 분류학, 자료조직론, 정보공유와LOD, 정보공유와XML의활용	8
중부대학교	고전자료조직법, 메타데이터, 목록학, 문헌분류연습, 분류학, 정보목록연습	6
중앙대학교	고문헌목록연습, 메타데이터구조론, 문헌목록법, 문헌분류론, 자료조직연습	5
청주대학교	고전자료조직과처리, 메타데이터론, 오픈엑세스정보조직, 자료목록론, 자료분류론, 정보자원과콘텐츠, 조직연습	7
충남대학교	메타데이터, 정보자료목록론,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조직기초, 정보조직실습, 정보조직특강, 지식조직론	7
한남대학교	메타데이터구축론, 비도서자료조직론, 정보자료목록론, 정보자료분류론, 정보조직연습캡스톤디자인	5
한성대학교	메타데이터의이해, 목록의이해, 분류의이해, 오픈엑세스의이해	4

※ 노영희(2020, 121-126)의 내용을 재구성

■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에서는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독서교육론 등의 교과목이 상당수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주제별정보자원론(과학기술정보원, 인문사회정보원, 의학정보원), 독서치료, 아동및청소년자료,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인터넷자원활용, 정보리터러시, 정보커뮤니케이션론, 학술정보활용법 등이 개설되고 있음

<표 28> 정보조사제공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정보조사제공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독서지도론, 아동및청소년자료, 정보조사제공론, 정보리터러시, 전문사서와주제별정보원, 지식정보취약계층도서관서비스	6
경기대학교	독서교육, 독서치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행태론, 정보활용교육론, 주제별정보원	7
경북대학교	독서지도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자론, 주제별정보자료	4
경성대학교	도서관교육론, 독서교육론, 독서학개론, 어린이서비스론, 정보서비스론	5
계명대학교	과학기술정보원, 독서지도론, 어린이서비스현장실천론, 어린이청소년자료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자론, 참고정보원	7
공주대학교	도서관활용수업론, 독서교육론, 독서교육의실제, 아동및청소년자료론, 인터넷자원론, 정보서비스론, 정보활용교육론, 주제별정보원, 참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 학술정보탐색과활용	11
광주대학교	독서지도론, 자연과학정보론, 정보문해론, 정보이용자론, 정보봉사론, 지역문화컨텐츠론, 정보유통론	7
대구가톨릭대학교	독서지도론, 아동청소년자료론, 전자학술정보특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교육, 청소년자료론	6
대구대학교	도서관자원봉사, 독서지도, 어린이서비스, 이용자교육론,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행태, 주제전문정보서비스, 취약계층서비스	8
대진대학교	독서교육론, 정보문해론, 정보봉사론, 주제별정보원	4
덕성여자대학교	독서지도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자론	3
동덕여자대학교	독서지도론, 정보문해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자의이해, 정보서비스기획(캡스톤디자인), 정보서비스론, 정보커뮤니케이션	7
동의대학교	독서교육활용론, 독서지도론, 정보봉사론, 정보이용자론, 정보활용교육론(캡스톤디자인)	7
명지대학교	과학기술정보, 주제별정보원, 참고정보봉사론, 청소년독서교육	4
부산대학교	과학기술정보자료, 독서지도론, 비즈니스정보자료, 어린이와	8

	청소년자료, 이용교육론, 인문사회과학자료, 정보행태론, 참고정보서비스론	
상명대학교	독서지도, 보건의학정보원, 정보서비스론, 주제별정보원, 주제전문서비스	5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정보서비스론, 전자정부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연구, 주제별정보원	5
성균관대학교	독서지도론, 정보문해론, 의학정보학개론, 정보서비스론, 정보행위론	5
숙명여자대학교	독서지도(디지털스토리텔링), 인문·사회과학기술정보원,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지도(디지털리터러시)	4
신라대학교	독서지도론, 어린이/청소년자료, 정보교육론, 정보봉사론, 주제별정보원	5
연세대학교	도서관정보서비스의특수문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정보이용자교육론, 정보조사제공론,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6
이화여자대학교	독서지도, 아동/청소년자료, 정보서비스, 정보유통, 정보이용자의이해, 학술커뮤니케이션	6
인천대학교	독서지도, 어린이청소년자료, 정보봉사, 주제별정보원	4
전남대학교	과학·의료정보실습, 독서지도론, 독서지도실습, 정보문해론, 정보조사제공론, 정보행동의이해, 지역문화정보론, 정보비평론	8
전북대학교	독서교육론, 독서치료, 문화콘텐츠서비스론, 아동·청소년정보,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정보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크, 정보활용교육	8
전주대학교	독서교육, 인터넷정보조사법, 인문과학서지, 자연과학서지, 정보봉사론, 정보커뮤니케이션	6
중부대학교	과학기술정보, 독서지도론, 정보봉사론	3
중앙대학교	과학기술주제서비스론, 독서지도론, 인문사회주제서비스론, 웹정보이용행태, 정보서비스론, 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6
청주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 독서지도론, 정보사회와리터러시,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정보커뮤니케이션의이해, 주제별정보원, 참고정보원	8
충남대학교	독서지도입문, 디지털정보자원활용, 정보문해, 정보서비스론, 정보서비스특강, 이용자연구론	6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정보론, 독서지도론, 사회과학정보론, 인문과학정보론, 정보문해론, 정보서비스론, 정보행태론	7
한성대학교	디지털서비스기획론, 어린이청소년정보원, 정보서비스론, 정보와커뮤니케이션	4

※ 노영희(2020, 121-126)의 내용을 재구성

■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에서는 다양한 관종별 경영이 포함되지만 대표적으로 도서관경영론과 장서관리 교과목이 상당수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관종별 도서관운영,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평가, 도서관마케팅,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정보정책론, 정보매체론, 도서관건축,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관리론 등이 개설되고 있음

<표 29>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경영론, 비도서자료의이해, 장서관리론, 학교도서관매체센터운영론	5
경기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장서관리론, 정보매체론, 학교도서관경영	5
경북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미디어센터경영, 비도서정보자원관리론, 장서관리론, 지식정보센터경영, 정보자원과뉴미디어	6
경성대학교	공공도서관운영론, 정보매체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서비스경영론, 장서관리론, 전문도서관, 특수자료론, 학교도서관	8
계명대학교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서비스경영론, 장서관리론, 전문도서관, 특수자료론, 학교도서관	8
공주대학교	공공도서관운영론, 비도서자료론, 연속간행물관리론, 장서관리론, 학교도서관경영론, 학교도서관경영실제	6
광주대학교	도서관정보센터경영, 문화기획론, 비도서자료, 장서관리론, 정보매체론, 학교및공공도서관	6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경영론, 도서관문화프로그램기획, 장서관리, 정보매체및기술론	4
대구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대학도서관경영, 도서관건축론, 도서관마케팅, 도서관정보정책, 도서관프로그램운영, 미디어센터경영종합실제, 장서관리론	8
대진대학교	도서관정보센터경영실무, 도서관정보센터경영이론, 도서관정책론, 장서관리론, 지역사회와공공도서관	5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건축과마케팅,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전문정보센터운영론, 정보자원관리, 학교도서관운영	5
동덕여자대학교	정보센터경영론, 정보와매체, 정보자원개발론	3
동의대학교	관종별도서관이론및실습, 도서관경영론, 도서관홍보론, 장서관리및관리, 정보매체론,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6

명지대학교	4차산업혁명과공공도서관, 대학교육과대학도서관,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마케팅론, 정보자원경영론,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론	6
부산대학교	교육매체론, 도서관경영론, 문헌정보정책론, 장서관리론, 전자자료관리론, 정보자원론, 학교도서관운영론	7
상명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미디어센터운영, 정보자원개발, 콘텐츠기획및마케팅, 라키비움의이해	6
서울여자대학교	관종별도서관, 도서관정보자원개발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기획론	3
성균관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론, 대학도서관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장서구성론, 정보분석평가론,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경영론	6
숙명여자대학교	정보센터·도서관경영론, 공공도서관운영실무, 도서관브랜드전략과인포그래픽스, 장서개발론, 전자학술지구축및운영, 정보정책	6
신라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장서관리론, 정보매체론, 학교도서관운영, 학술정보관리	6
연세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의실제, 도서관정보센터마케팅, 문헌정보통계, 장서개발론, 정보서비스평가, 정보정책론, 정보표준화론	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전문도서관, 도서관/정보센터경영, 비도서자료관리, 정보서비스평가	4
인천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 디지털도서관운영, 장서관리, 학교도서관경영, 학술정보센터운영	6
전남대학교	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경영론, 독서경영론, 장서관리론, 정보경영론, 정보자원론	6
전북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정보관리론, 정보매체론, 정보자원구성론, 학교미디어센터경영, 학술정보센터경영	7
전주대학교	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경영론, 도서관기획론, 학교도서관운영론	4
중부대학교	공공도서관경영, 대학/전문도서관, 도서관/정보센터경영, 비도서자료, 장서관리, 학교도서관운영	6
중앙대학교	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경영론, 도서관마케팅론, 멀티미디어데이터관리, 정보자료구성론	5
청주대학교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도서관정보자원관리, 문헌정보기초통계, 장서개발론, 정보매체론, 학교·공공도서관경영론, 학술정보	7

	센터경영론	
충남대학교	공공및학교도서관경영, 도서관경영, 도서관프로그램개발및운영, 라키비움운영론, 장서개발론, 정보매체론	6
한남대학교	대학전문도서관운영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 문헌정보조사통계, 연속간행물, 정보자료구성론,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	6
한성대학교	도서관프로그램기획, 캡스톤디자인, 서비스평가론, 장서관리론, 조직경영론	5

※ 노영희(2020, 121-126)의 내용을 재구성

■ 정보학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고 있음

- 정보학 영역의 교과목은 크게 정보학 기초, 데이터베이스, 도서관시스템, 웹서비스, 정보검색, 네트워크, 정보처리, 색인초록,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교과목이 다수 신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학 영역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정보검색론과 정보기술론, 디지털도서관, 정보학의이해 등을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도서관관인터넷기술, 도서관정보네트워크,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디지털콘텐츠론, 이용자인터페이스론, 인터넷서비스구축론, 계량정보학, 멀티미디어론, 색인초록법, 시맨틱웹시스템구축론, 정보처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음

<표 30> 정보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정보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데이터베이스운영론, 도서관시스템자동화,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콘텐츠, 색인초록조직론, 정보검색론, 정보통신테크놀로지, 바이오헬스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플랫폼, 바이오헬스데이터베이스, 데이터시각화	11
경기대학교	데이터베이스실무, 데이터베이스원리, 도서관전산화프로그램밍, 디지털도서관, 빅데이터개념및활용,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개론	7
경북대학교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활용론, 디지털도서관론, 온라인정보탐색, 웹프로그래밍의기초, 이용자인터페이스론, 정보기술과	9

	인간, 정보시스템론, 지식정보검색론	
경성대학교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론, 정보기술론, 정보학개론, 정보표현론	5
계명대학교	UL과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디지털도서관론, 디지털콘텐츠구축론, 수치정보처리법, 웹정보기술론, 인터넷서비스구축론, 자료구조, 저자도서관운영론, 정보시스템, 정보검색론, 정보처리법, 정보프로그래밍연습, Database Desig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Practical Data Science, Text Processing, Web Programming	18
공주대학교	네트워크분석, 디지털도서관론, 색인초록작성법, 정보검색론, 정보검색실습, 정보학의이해, 텍스트마이닝	7
광주대학교	DB탐색실습, 데이터베이스설계론, 디지털도서관구축론, 정보검색론, 정보학의이해	5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지털도서관론, 정보검색, 정보학의이해	3
대구대학교	계량정보학, 데이터베이스의이해, 도서관정보기술, 디지털정보탐색, 정보검색이해, 정보시스템개발	6
대진대학교	데이터큐레이션, 시맨틱웹기술론, 정보검색론, 학술데이터분석	4
덕성여자대학교	디지털콘텐츠제작론, 문헌정보·빅데이터분석방법론, 빅데이터 색인및관리, 빅데이터프로그래밍, 온라인정보검색론, 웹서비스기획및개발, 정보학의이해, 학술정보탐색과검색	8
동덕여자대학교	디지털도서관, 멀티미디어정보관리, 색인과초록, 온라인정보검색, 웹기반정보처리, 웹데이터베이스운영론,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정보활용, 정보검색론, 정보학의이해, 지식관리시스템	11
동의대학교	데이터베이스및실습, 디지털도서관론, 온라인정보검색및실습, 정보검색이론, 정보시스템및실습, 정보학개론	6
명지대학교	뉴미디어론, 네트워크분석, 데이터리터러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래밍기초, 디지털정보처리론, 전자책과디지털콘텐츠,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학입문, 정보검색론, 콘텐츠큐레이션, 취업교육(오라클빅데이터)	12
부산대학교	디지털도서관, 문헌정보분석론, 정보검색론, 정보기술입문, 정보시스템론, 정보시스템개발론, 정보탐색법	7
상명대학교	공공정보의관리와활용, 디지털도서관과IT, 디지털콘텐츠제작기술, 빅데이터보완, 소셜미디어데이터수집및분석, 온라인정보검색, 웹데이터베이스구축, 의학용어와MeSH, 정보시스템분석과설계, 정보통신기술론	10

서울여자대학교	검색논리:알고리즘과질의생성, 다매체환경에서의웹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기초, 도서관온라인커뮤니티조사론, 디지털도서관시스템평가, 빅데이터와시맨틱웹, 웹인터페이스디자인설계, 정보검색실습, 정보네트워크론, 정보시스템발전사, 정보학이론세미나, 학술연구정보리터러시	12
성균관대학교	데이터분석기초통계, 데이터분석응용통계, 데이터큐레이션실습, 색인초록론, 시맨틱웹시스템구축론, 시스템분석론, 웹데이터베이스구축론, 인터넷서비스구축론, 정보검색론, 정보분석기초, 정보설계개론, 정보학개론, 지식구조론, 차세대시스템설계론, 학술데이터분석실습	15
숙명여자대학교	디지털콘텐츠개발:캡스톤디자인, 디지털출판, 멀티미디어정보론, 문헌데이터베이스론,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시, 색인및초록작성, 온라인정보검색연습, 정보검색, 정보시스템론	9
신라대학교	도서관전산화, 색인및초록, 인터넷정보검색, 정보검색, 정보기술론, 정보콘텐츠구축론	6
연세대학교	뉴미디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디지털도서관구축론, 웹시스템개발, 웹인터페이스설계, 인문학콘텐츠구축론, 정보검색론, 정보기술론, 정보시각화, 정보시스템분석, 학술정보네트워크기초, 학술정보웹사이트구축론, 프로그래밍기초	16
이화여자대학교	데이터베이스의이해, 데이터어널리틱스의이해, 디지털도서관, 디지털큐레이션, 인터넷정보활용, 정보검색과검색엔진, 정보자료선택의이해, 정보자원기술실습, 정보자원기술의이해, 프로그래밍의이해	10
인천대학교	데이터베이스입문, 도서관정보기술론, 도서관정보네트워크, 유저인터페이스, 정보검색, 정보시스템구축론, 정보처리, 정보학개론	8
전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론, 디지털콘텐츠개발론, 색인초록론, 정보시스템분석, 정보검색론	5
전북대학교	데이터베이스론, 디지털도서관론, 문화콘텐츠관리기술, 색인초록작성법, 웹DB탐색, 웹디자인도구와언어, 정보검색, 정보시스템분석과설계, 컴퓨터정보처리, 학술정보원의이해	10
전주대학교	데이터시각화실습, 데이터처리와통계분석, 디지털도서관, 빅데이터와도서관, 정보검색, 정보콘텐츠개발론	6
증부대학교	디지털도서관, 정보검색, 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전산처리, 정보학의이해	5
중앙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론, 데이터베이스설계, 도서관정보시스템이용법,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구축	9

	론, 정보학개론, 텍스트마이닝	
청주대학교	데이터계량과분석, 도서관데이터베이스론, 도서관자동화론, 도서관정보네트워크론, 디지털정보자원과콘텐츠, 웹인터페이스와설계, 정보검색론, 정보처리연습, 정보학의이해, 프로그래밍기초1, 프로그래밍기초2	11
충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설계, 데이터분석및시각화,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데이터큐레이션, 디지털도서관, 인터페이스설계, 정보검색론, 정보학개론, 프로그래밍기초	9
한남대학교	DB시스템, 뉴미디어,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시각화, 디지털도서관, 색인및시소러스, 온라인탐색연습캡스톤디자인, 웹정보구축, 인터넷서비스구축론,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종합설계, 정보처리연습, 정보통신기술론, 정보학원론, 학술정보네트워크	15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캡스톤디자인, 디지털과지식콘텐츠, 디지털큐레이션, 소셜데이터의이해, 시맨틱데이터구축, 이용자인터페이스론, 인문정보콘텐츠, 정보검색론, 정보시스템론, 정보학의이해	10

※ 노영희(2020, 114-117)의 내용을 재구성

■ 서지학 영역의 교과목 수는 정보학 영역의 교과목 수 급증과 달리 대폭 감소하고 있는 분야

- 현재 전국 대학교 문헌정보학에서 서지학 영역의 교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절반에 이룸
- 서지학 영역에서는 서지학개론을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고전자료의이해, 한국서지학, 고서정리법, 고서감정법, 동양서지학, 서양서지학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음

<표 31> 서지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서지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서지학개론	1
경북대학교	한국고서의이해	1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지학개론	1
대진대학교	고서감정법, 고서정리법, 고전자료강독, 고전자료의이해, 서지학(문헌학)개론	5
동의대학교	한국서지학	1

명지대학교	서지정보학입문, 동양서지정보, 한국서지정보	3
부산대학교	고전자료입문, 한국문헌학개론, 한국학자료	3
성균관대학교	고전자료의이해 I, 고전자료의이해 II, 서지학개론, 한국서지	4
숙명여자대학교	서지학특강	1
이화여자대학교	고문헌관리, 고전자료강독, 서지학의이해	1
인천대학교	서지학개론, 고문헌관리	2
전남대학교	서지학개론, 우리의옛책	2
전북대학교	서지학개론	1
중앙대학교	서지학개론, 동양문헌의이해	2
청주대학교	서지학개론	1
충남대학교	서지학개론	1
한성대학교	서지학의이해	1

※ 노영희(2020, 93)의 내용을 재구성

■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오늘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0년대 초반에 기록관리학 영역의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

- 현재 26개교 44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록관리학 영역에서는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에서는 기록관리학을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디지털아카이빙, 기록평가및선별론, 기록보존론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음

<표 32> 기록관리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기록관리학	과목수
건국대학교	기록관리학개론	1
경기대학교	기록관리론	1
경북대학교	기록관인간, 기록관리제도론, 전통기록물아카이브구축론, 전통기록물과문화콘텐츠	4
경성대학교	기록관리학개론	1
공주대학교	기록관리학	1
광주대학교	기록관리론	1
대구가톨릭대학교	기록관리론, 기록의이해, 보존기록론	3
대구대학교	기록학개론	1
덕성여자대학교	기록관리	1
동덕여자대학교	기록관리론	1
동의대학교	기록관리개론	1
부산대학교	기록정보관리론, 기록학개론	2
상명대학교	기록관리	1
서울여자대학교	기록관리론, 기록관조사론	2
숙명여자대학교	기록관리학의이해, 디지털개인기록관리(캡스톤디자인), 디지털아카이빙	3
신라대학교	기록관리의이해	1
연세대학교	기록관리론	1
이화여자대학교	기록관리의이해, 기록정보관리, 자료보존론	3
인천대학교	기록관리	1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학개론, 기록평가와보존	2
전북대학교	기록정보관리	1
전주대학교	기록물관리	1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개론	1
충남대학교	고문헌의관리론, 기록학개론, 기록학특강, 자료보존론	4
한남대학교	기록관리론	1
한성대학교	기록관리의이해, 기록선별과평가, 기록정보조직론, 아카이브와콘텐츠	4

※ 노영희(2020, 88-89)의 내용을 재구성

■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정보자원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어학 영역의 교과목이 개설

- 최근에는 전공 교과목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7개교에 11개 과목만이 개설되고 있음
- 어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이 있는 대학교에서는 영어와 한문 관련 교과목이 다수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곳에서는 일본어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함

<표 33> 어학 영역의 개설 교과목 현황

학교	어학	과목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보전문직실무영어	1
대진대학교	영미자료의이해 I, 영미자료의이해 II, 일본자료의이해, 중국자료의이해	4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영어특강	1
동의대학교	한문의기초	1
인천대학교	전공한문강독 I, 전공한문강독 II	2
전주대학교	영어자료읽기	1
중부대학교	한문의이해	1

※ 노영희(2020, 98)의 내용을 재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교육기관의 사서 양성 교육과정

-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호, 2018. 9. 1. 일부개정)
 - 필수과목 중 (I)은 기초과정, (II)는 심화과정을 다룸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봄
 -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함

〈표 34〉 지정교육기관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사서 양성 교육과정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4호, 2020. 4. 7.)의 문헌정보학 전공(48학점)은 다음과 같음

<표 35>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구분	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비고
전공필수	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	3	3	0	
	문헌정보학개론	3	3	0	
	서지학개론	3	3	0	
	자료선택·구성론	3	3	0	
	정보검색론	3	3	0	
	정보봉사론	3	3	0	
	정보조직론(목록론)	3	2	2	
	정보조직론(분류론)	3	2	2	
전공선택	고전자료의 이해	3	3	0	
	고전자료조직론	3	3	0	
	공공도서관 운영론	3	3	0	
	기록보존자료관리	3	3	0	
	대학교서관운영론	3	3	0	
	도서관 및 인쇄사	3	3	0	
	도서관 및 정보센터 실습	3	1	4	
	도서관 정보시스템론	3	3	0	
	독서지도론	3	3	0	
	멀티미디어 정보론	3	3	0	
	문서관리	3	3	0	
	문헌 데이터베이스론	3	3	0	
	사회과학 정보원	3	3	0	
	색인초록법	3	2	2	
	연구방법론	3	3	0	
	연속간행물관리론	3	3	0	
	인문과학 정보원	3	3	0	
	자료이용법	3	3	0	
	자료조직연습	3	1	4	
	정보네트워크	3	3	0	
	정보사회론	3	3	0	
	정보처리	3	2	2	
	정보처리시스템 분석론	3	3	0	
	정보 커뮤니케이션론	3	3	0	
	출판과 저작권	3	3	0	
	특수도서관 운영론	3	3	0	
	학교도서관 경영론	3	3	0	
	한국서지	3	3	0	

4.3 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 사서 양성기관의 다변화와 사서자격증 발급의 불균형

- 2020년 기준 대학교 32곳, 대학 5곳,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3곳, 평생교육원 3곳에서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사서 양성기관으로 2007년은 대학교와 대학이 84.1%,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15.2%, 평생교육원 0.7%의 비율이었던 것이 2020년은 대학교와 대학이 67.8%, 문체부 지정교육기관 10.2%, 평생교육원 22.0%의 비율로 변화됨
- 대학교와 대학은 1곳 당 연평균 53명을 배출하는 반면, 문체부 지정교육기관은 1곳 당 연평균 99명, 평생교육원은 1곳 당 연평균 213명으로 기관간 사서자격증 발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평생교육원 1곳은 연평균 213명을 배출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 품질 체계를 통한 사서 양성의 질 관리가 시급함

■ 사서 양성기관 간 교육과정 편차 해소를 위한 표준적인 전공 교육과정 채택의 필요성

- 사서자격증 발급이 관련 학위의 요건만 제시되어 있어 양성기관 간 교육과정에 편차가 심함
- 대학교와 대학(대학교와 대학 간 학칙 및 학사규정에 따라 상이), 문체부 지정교육기관(준사서의 경우 30학점, 승급은 경력+30학점), 평생교육원(48학점) 모두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사서자격증이 발급되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도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서 양성기관 간 교육과정 편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필수 및 선택과목 지정)을 채택하고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의 필수 및 선택과목은 문헌정보학 전문가 및 현장 사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함
-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양성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구분 없이 2급 정사서는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준사서는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48학점이 적합함

■ 사서 자격증 발급은 문헌정보학 (전문)학사학위와 더불어 해당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예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필수과목 포함 60학점)한 사람”, 준사서는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필수과목 포함 48학점)한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안)은 다음과 같음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

1.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구분	교과목	최소 이수과목(학점)		
		대학교(4년) 2급 정사서	대학(2년) 준사서	대학원
필수 과목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독서교육론 자료조직론 자료조직실습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장서개발론 도서관경영론 정보검색론 정보기술론 도서관현장실습	12과목 3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2과목 3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메타데이터의 이해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 조직론 자동화목록실습 정보매체론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오픈엑세스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인터넷자원활용 정보리터러시 정보커뮤니케이션론 학술정보활용법 주제별정보자원론 관중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마케팅	8과목 24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디지털콘텐츠론 빅데이터분석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처리 및 분석론 정보학의 이해 도서관과 인터넷 기술 이용자 인터페이스론 데이터큐레이션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 디지털아카이빙 전자기록관리론 공공기록물관리론			
---	--	--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도서관 현장실습의 기준

- 가. 현장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나. 실습단위당 학생 배치 인원은 지도사 1명 당 5명 이내로 할 것
- 다. 현장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되었을 것
 - 3)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자(사서)가 1명 이상 상근할 것
- 라. 현장실습 실시 전 조건을 갖춘 실시기관이 90% 이상 확보되고 공식적인 협약이 100% 체결되어 있을 것
- 마. 도서관 현장실습 과목의 담당교수는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것
- 바.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의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 이상)>으로 <도서관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도서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5 장

국내 유사 자격제도 분석

- 5.1 간호사 자격제도 분석**
- 5.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분석**
- 5.3 대학교육인증제 분석**
- 5.4 영양사 자격제도 분석**
- 5.5 보육교사 자격제도 분석**
- 5.6 국내 유사자격제도 요약 및 시사점**

제 5 장 국내 유사 자격제도 분석

5.1 간호사 자격제도 분석

5.1.1 간호사 자격

■ 간호사의 법적 근거

- 간호사는 「의료법」(법률 제13658호)의 제7조에 의거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의료법 제 9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74호)에서 자격의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음

□ 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일부

<표 36> 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 제목	조문 내용
의료법 제7조	<p>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19. 8. 27.></p> <p>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p> <p>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p>
의료법 제9조	<p>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 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6. 22.></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p> <p>④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의료법 시행령 제3조	<p>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조산학·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한다.</p>

■ 간호사 자격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함.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하고 각 문제의 배점은 1점으로 동일함. 총 8개 과목을 각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일 시 합격
- 간호사 국가고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7〉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과목

구분	시험과목 (문제 수)	시험 시간
1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간호학 (70) • 모성 간호학 (35) 	09:00~10:35 (95분)
2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간호학 (35) • 지역사회 간호학(35) • 정신 간호학 (35) 	11:05~12:40 (95분)
3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관리학 (35) • 기본 간호학 (30) • 보건의약관계법규(20) 	13:50~15:10 (80분)

■ 간호사 제도 발전 과정

- 1962년 간호사 자격시험이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고시로 변경되며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학교 등에서 간호학과가 개설, 운영되었고 제도적으로 조산사와 간호사의 면허가 분리되는 등 더 까다로운 자격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게 됨
- 간호사 국가고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8〉 간호사 국가고시 개정 연혁

개정	시험 과목
1962. 05. 28	간호학 전반 및 의사법규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965. 08. 05	간호학 전반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969	내과간호학, 외과간호학,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정신신경과간호학, 간호사회학, 보건법규
1973. 10. 17	내과간호학(전염병간호학·물리요법·피부비뇨기과간호학을 포함한다), 외과간호학(치과간호학·안ibi인후과간호학·수술실간호학을 포함한다), 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 신경정신과간호학, 간호사회학(간호사·간호윤리·간호행정·직업도덕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전염병예방법·의료법·마약법·검역소법·보건소법에 한한다)
1982. 12. 31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1990. 1. 09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검역법,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소법에 한한다.)
1994. 9. 27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검역법, 의료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소법을 말한다.)
2000. 5. 25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 간호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영역보다는 일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양적 평가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Yang, 2004). 이에 간호교육평가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1990년 간호학과 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고, 대

학 간 발전적 경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01년 5월 산하기관의 하나로 간호교육평가원을 발족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자율조정기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국간호평가원’이라는 독립 재단법인으로 거듭남

5.1.2 전문간호사

■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과 인정요건

-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의 제 78조에 의거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778호)에서 자격의 세부를 다룸
- 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9> 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법적 근거	의료법 제7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u>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0>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제목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의료·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 (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55%;">과목명</th> <th style="width: 30%;">학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공통과목</td> <td>간호이론</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간호연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상급 건강 사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론2, 실습1</td> </tr> <tr> <td>약리학</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병태 생리학</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전공이론과목</td> <td>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10학점 이상</td> </tr> <tr> <td>전공실습과목</td> <td>전문분야별 전공 실습과목</td> <td style="text-align: center;">10학점 이상</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33학점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과목명	학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2	상급 건강 사정	이론2, 실습1	약리학	2	병태 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전문분야별 전공 실습과목	10학점 이상		계	33학점 이상
구분	과목명	학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2																								
	상급 건강 사정	이론2, 실습1																								
	약리학	2																								
	병태 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전문분야별 전공 실습과목	10학점 이상																								
	계	33학점 이상																								
제8조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0. 3. 19.>																									

	<p>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4. 7., 2021. 1. 7.></p>
<p>제9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p>	<p>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p> <p>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p>
<p>제10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p>	<p>①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p> <p>②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p> <p>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p> <p>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2.3.19.> 및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제2항 관련)

<표 4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제4조 제2항 관련)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실무경력인정기관
가.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
다.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마. 감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의무실·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산업간호협회,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구조대 ○ 종합병원 ○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자. 중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00명상 이상의 군병원(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된다)
차. 호스피스	○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카. 종양	○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임상	○ 종합병원(심장·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근골격계, 비뇨·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아동	○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경력인정기간 특례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 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 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음

□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현황

〈표 4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험구분	항목	내용		
1차 시험	문제 수	150문제		
	문제형태	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시간	150분		
	기준	대분류		출제비율
		전문가적 간호실무(공통)		10%
		전문가적 간호실무(전공)		70%
		교육 및 상담		약 6.7%
이론 및 연구			약 6.7%	
	전문직 발전참여		약 6.7%	
2차 시험	문제형태	실기 및 주관식		
	시험내용과 방법	각 분야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전문간호사의 경우, 등급구분이 없으며,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인증평가제를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5.1.3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평가원 설립 목적

□ 평가원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공정하고 타당성이 보장된 간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사업,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및 민간자격시험 시행, 간호사 면허·자격 제도의 발전, 간호사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주요 사업

구분	내용
간호교육 인증평가	인증평가 기준 및 척도 개발(RN-BSN, 대학원) 평가자 교육, 평가단 풀 구성 전문성 향상 인증평가 시행 교육부, 대교협, 교육개발원 관계 구축 및 교류 국제교류 (ICN, NLNAC, CCNE 등)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심사	4년제 간호과 지정 심사 평가 지정 대학 이행 점검 지정 대학 질 관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록 결과 조사 및 보고 전문간호사 지정 교육기관 현황 조사 및 평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심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전문간호사 표준교육과정 및 직무 기술서 마련 전문간호사 시험 기준 설정 전문간호사 시험 문항 개발 및 관리 전문간호사 시험 시행
민간자격시험	민간자격 시험 위탁 시행 민간자격 종목 개발 및 시행 민간자격 시험 문항 개발 및 질 관리

■ 간호교육 인증평가

□ 간호교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에 충분한 지를 판단하고 교육기관 스스로 꾸준히 자체 교육 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자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고자 만든 평가

□ 인증의 의미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첫째, 프로그램 학습성

과 중심의 교육체제를 통해 졸업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간호교육기관 운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

□ 인증의 목적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 국제수준의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고
 -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호교육의 질 보장 체제 확보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의 특징
- 학습성과에 기반한 교육체제 구축 강화
 - 교육목표의 설정
 - 졸업생 역량 수준(학습성과) 설정(수행 준거에 따른 평가)
-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체제 강화
 -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요구(간호교육의 성장모델 제시)
-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통한 현장실무능력 강화

□ 인증평가의 대상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졸업생이 1회 이상 배출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고, 제19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4년제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
 - 3년제 간호학 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
 - 간호사 학사학위 특별편입(RN-BSN) 프로그램
 -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

□ 인증평가 운영 절차 및 방법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인증

을 신청해야 함

- '인증불가'와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도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함
- 평가항목 및 영역별 평정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부문에서 바람직한 교육운영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육기관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피평가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는 과정임. 서면평가를 통해서 각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 및 항목별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확인.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며,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평가지에 기록하여야 함
- 현지 방문평가
 - 현지 방문평가는 1일의 평가기간동안 피평가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제시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임. 특히 서면평가 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였던 사항들을 현지 방문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함
- 평가위원은 현지 방문평가 시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음
 - 피평가대학의 교수, 행정가 대상 면담
 - 임상실습현장지도자 대상 면담(사전 요청에 한함)
 - 수업 시연 참관(사전 요청에 한함)
 - 재학생 대상 개별 또는 집단 면담, 만족도 조사 실시(사전 요청에 한함)
 - 실습 여건과 교수-학습 관련 기자재 상태와 활용 여부 확인
 -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평가 실시
 - 그 외 비치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토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한 인증평가 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조정
 - 항목 및 영역별 평정에서 일관성을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 현지 방문평가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제출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등을 검토하여 항목 또는 영역

의 평정을 조정함

- 조정 결과를 반영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대학이 검토하고, 대학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학의 의견 제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 조정의 의사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함
- 평가결과 판정
 - 조정위원회 후 2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판정위원회는 평가단이 작성한 ‘영역별 평가지’, ‘평가결과표’, ‘종합논평서’와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논평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판정한다.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판정결과 승인을 거쳐 대학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최종 확정
 -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 결과는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대학별 평가결과보고서 및 인증서를 우편으로 대학에 송부함으로써 평가절차가 종료됨
- 인증유지
 - 평가원은 인증 받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유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리한다.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 수준에 위배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교육인증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 중 인증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정조치 사항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이의신청
 - 평가원은 평가결과가 판정된 후 피평가대학에 결과를 보고하여 대학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이를 접수한다. 이 때, 이의신청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과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대학: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상·하반기)
 - 재심위원회: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상·하반기)
 - 이사회: 재심 판정 후 10일 이내(상·하반기)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평가 결과 활용

〈표 44〉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한 결과 활용

구분	내용
간호교육기관 대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제시함 ▪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 학과 또는 학부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 2차 위반: 학과 또는 학부를 폐지
수요자 대상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이 경우의 교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함 ▪ 평가원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
한국간호평가원 사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학 소속 교수 적극 활용
국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간호협회에 인증대학 목록 공개

출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e.or.kr/>

□ 인증의 평가영역은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인증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표 45〉 간호교육인증 판정 유형 및 기준

판정 유형	판정기준	인증기간
인증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5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인증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3년 (졸업생 배출 전 1년)
한시적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연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음) 	1년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

출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e.or.kr/>

※ 졸업생 배출 전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인증기간 만료 전 보완평가를 통해 인증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는 당해연도 보완평가의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5년 또는 3년의 잔여기간으로 함(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호)

- 평가부문은 각 평가영역별 평가대상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각 영역별로 2~4개의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항목은 평가·인증에서 평가할 주요 요소이며, 해당 항목에 대해 대학이 달성해야 할 목표수준으로서 평가 항목별 인증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평가항목별 인증기준에는 세부설명을 제시하여 인증기준에 포함된 주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함
 - 대학이 자체평가 시 작성하여야 할 내용과 방문평가 시 비치하여야 할 증빙자료의 목록 제시



(그림 10) 판정 유형별 인증기간

■ 간호교육 교육과정 영역의 인증기준(간호교육인증평가원 편람 발췌)

□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
 - 인증기준: 학과의 교육과정은 구성 원리에 따라 학과가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 검토사항
 1.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따라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3. 핵심기본간호술은 실습교과목과 연계되어 있는가?
-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학점
 - 인증기준: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은 학생이 교양인과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을 갖추어 이를 적용하고 있다.

- 검토사항

1. 교과목 이수체계는 적절한가?
(교양·전공, 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이론·실습교과목 편성의 균형 및 적절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연계성)
2. 교양교과목을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하고 있는가?
*전문학사 학위과정: 10학점 이상
3. 전공기초를 제외한 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최소 70학점 이상, 최대 90학점 이하인가?
4.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고 있는가?
5.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을 갖추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가?

<표 46> 간호 교육과정 편성의 분류 기준 및 이수학점 현황

분류	평가인증 기준	설명
교양 필수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 * 전문학사: 10학점	졸업을 위해 대학 또는 단과대학, 학과 등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교과목
교양 선택		학위취득을 위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영역의 교과목
전공 기초	인문사회과학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	전공영역 학문연구의 기초가 되며, 관련 학문영역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 태도와 관련된 교과목으로서 자연과학 영역과 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공 필수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 이수	간호사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 태도와 관련된 교과목으로서 주로 국가시험 관련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을 포함함
전공 선택		간호학의 전공영역으로서 보다 심화되거나 다양화된 선택 교과목

■ 간호학 교육 및 실습과정

□ 이론 교육

- 인증기준: 학과는 이론교과목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강의계획서에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 운영.

또한 학과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 개선에 반영.

- 검토사항

1. 이론교과목별 학습성과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2. 이론교과목별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3. 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8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강좌 당 학생 수 50명 이하 권장)
4. 교과목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생 수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5.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실습 교육

- 인증기준: 학과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강의계획서에 명료하게 제시. 또한 실습실 교육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지도.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율실습과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절하게 운영.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 개선에 반영

- 검토사항

1.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설정되고 강의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가?
2. 실습실 교육에서 교과목 학점 당 실습시간이 1:2로 운영되고 있는가?
3.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실습 지도교원 대 학생 배치 비율이 1:25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실습조교 참여권장, 학생 배치 비율에 산입되는 실습조교의 경우 임상경력 2년 이상)
4.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가?
5.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지도자용 학생용 구분, 이론과 실습 담당교수가 다른 경우 지도자용을 반드시 활용 등)

6. 자율실습을 위해 주당 적절한 시간을 개방하고 적절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가?
(주당 4시간 이상 운영, 학생 수에 비례한 적정성 검토, 간호사 면허 소지자)
7. 시뮬레이션 실습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임상실습의 일부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 및 시수, 시나리오 적용 현황(학생 배치 및 지도 인원 포함), 지원인력 활용 등)
8. 실습실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실습실 교육 기준 및 조건

- 교과목별 학점, 이수시간 등을 검토하여 학점 당 실습시간이 1:2로 편성되어 운영(9주 수업 5주 실습: 학교마다 조금씩 다름, 집중이수제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함)
- 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원 대학생 배치 비율이 1:25 이하로 유지
- 실습조교가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임상경력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
- 전임교원이 학기당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담당
- 학습성과를 실습지침서에 제시, 실습지침서를 적절하게 구성해 실습 교육에 활용
 - 1) 학생용 실습지침서: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교과목의 학습성과, 내용,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일시, 지도 장소, 지도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
 - 2) 지도자용 실습지침서: 실습지도계획서(주차별 실습지도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
- 자율실습 운영현황을 작성하고, 학생 규모와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개방시간을 유지
 - 1) 자율실습 운영시간은 4시간 이상/주 운영하되 학생 수에 비례해 적정성 검토
 - 2) 자율실습실의 전담인력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
 - 3) 학생의 물품사용 신청, 전담인력의 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함
-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1쪽 이내로 기술 (단 임상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 1) 교과목 학점 당 시수는 1:2 비율로 함
 - 2) 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의 비율은 1:25로 함
 - 3)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는 8명 이하 유지

- 4) 지도교원 및 지원인력 적격성, 학점 당 모듈별 운영시간과 현장실습 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을 검토함(이 경우 임상실습시간의 12% 이하 또는 최고 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실습교과목의 수업 개선과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내용, 학습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 임상실습 교육

- 인증기준: 학과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임상실습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강의계획서와 실습지침서에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습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임상실습교과목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충분한 임상실습시간을 확보하고,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한 임상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실습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검토사항
 1.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을 반영하여 임상실습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설정되고 강의계획서와 실습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가?
 2. 임상실습 지침서의 체계적인 구성 및 활용이 적절한가?
(학생용 실습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지침서의 구분)
 3. 임상실습 교육 학점 당 실습시간이 1:3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4. 임상실습 시간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당해 연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이 1,000시간 이상 이수,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12%를 초과할 수 없음.)
 5. 실습교과목 학습성과에 적합한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있는가?
 6. 임상실습 교과목 평가는 현장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7. 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실습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임상실습 지도

- 인증기준: 학과는 임상실습교육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실습단위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을 포함한 임상실습지도교원이 일정 기준 시간 이상 참여하여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음. 또한 원거리 실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검토사항
 1. 임상실습교육 운영 규정이 있는가?
 2. 임상실습의 실습단위당 학생 배치 인원이 최대 8명 이하인가?
 3.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전체 임상실습 지도시간이 과목별로 학생 임상실습시간의 10% 이상인가?
 4. 학생이 지도받은 임상실습시간 중 전임교원의 지도시간이 학기별 30% 이상인가?
 5. 임상실습 지도내용과 방법이 적절한가?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내용과 지도 방법, 전임교원의 역할)
 6. 원거리 실습 지원 관련 지원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임상실습 기준 및 조건

<표 47> 간호학 임상실습 기준 및 조건

현장 실습 조건	
임상실습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포함하여 이를 강의계획서와 실습지침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 실습교과목별 실습지침서 현황을 작성하고,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실습지침서에 제시되고 있는지, 실습지침서를 어떻게 구성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용 실습지침서: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실습목표, 내용,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 일시, 지도 장소, 지도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 2) 지도자용 실습지침서: 실습지도계획서(실습병동, 요일별, 시간별, 실습병원명, 병동별실습지도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 • 학점 당 임상실습 시간이 1:3으로 편성해 운영 •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 편성 현황과 당해 연도 졸업생의 임상실습 이수 현황을 작성, 임상실습이 1,000시간 이상(추후 22학점으로 변경 추진중)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단, 일실습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며 매학기 방학 중 실습이 학생 개인별 최대 몇 주간 운영되는지 검토하되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는 실습 운영을 최소화함 • 임상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 당 시수는 1:2 비율로 하고, 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은 1:25 비율,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 8명 이하 유지, 지도교원 및 지원인력 적격성, 학점 당 모듈별 운영시간, 현장실습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 검토 단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임상실습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단위의 배치가 적절한지, 임상실습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현장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함 •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임상실습 개선과 학

	<p>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내용, 학습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p>										
<p>임상실습 교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임상실습 단위별로 100% 확보하고 있는가? 4.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지도를 담당하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현황을 작성하고, 모든 실습단위의 현장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지(학기당 확보율 100%) 검토함. 또한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와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실습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이나 협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내용,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함 										
<p>임상실습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기관과의 협약체결 기준과 선정 과정 작성 • 임상실습 협약기관의 종류와 현황을 구분해 작성함. 학기당 임상실습협약기관의 90% 이상이 아래의 임상실습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밖의 임상실습협약기관도 병원급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함 <table border="1" data-bbox="381 942 1153 1251"> <thead> <tr> <th data-bbox="381 942 683 971">임상실습영역</th> <th data-bbox="683 942 1153 971">임상실습기관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81 971 683 1039">a) 300명상 초과 종합병원</td> <td data-bbox="683 971 1153 1039">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td> </tr> <tr> <td data-bbox="381 1039 683 1107">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td> <td data-bbox="683 1039 1153 1107">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td> </tr> <tr> <td data-bbox="381 1107 683 1193">c) 특화병원 또는 시설</td> <td data-bbox="683 1107 1153 1193">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td> </tr> <tr> <td data-bbox="381 1193 683 1251">d) 지역사회 기관</td> <td data-bbox="683 1193 1153 1251">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간호부서 - 실습학생 공간 확보(컨퍼런스룸, 탈의실): 공용인정 - 자격을 갖춘 현장지도자 확보 - 현장지도자와의 협력실적 학기당 1회 이상 • 학과와 임상실습기관이 실습지도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협력한 현황을 간략히 작성하고, 매학기 실습기관별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검토함 • 임상실습기관에 실습학생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주 실습기관의 실습학생의 전용공간 확보 현황을 검토 	임상실습영역	임상실습기관의 종류	a) 300명상 초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	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c) 특화병원 또는 시설	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d) 지역사회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임상실습영역	임상실습기관의 종류										
a) 300명상 초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										
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c) 특화병원 또는 시설	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d) 지역사회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5.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분석

5.2.1 사회복지사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2618호) 제 11조에 의거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364호) 제 2조, 3조, 4조에서 자격기준과 국가시험 시행에 대한 세부를 다룸
- 사회복지사의 자격구분 및 자격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표 48> 사회복지사의 자격 구분 및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제목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 증의 발급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 12. 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사회복지사업법시 행령 제2조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10. 30. 2020. 12. 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별표 1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 12. 26., 2007. 10. 31., 2008. 2. 29., 2010. 3.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p>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26., 2008. 2. 29., 2009. 11. 30., 2010. 3. 15., 2012. 5. 1.></p> <p>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p> <p>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p>	<p>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p> <p>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2007. 12. 31.></p> <p>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시험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26., 2008. 2. 29., 2010. 3.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5.2.2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출제함.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함 각 문제의 배점은 1점으로 동일하며 총 3개 과목을 각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일 경우 합격

〈표 49〉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현황

구분	시험과목 (문제 수)		시험 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 • 사회복지 조성론(25) 	09:30~10:20 (5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실천론 (25)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 • 지역사회복지론 (25) 	10:50~12:05 (7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정책론 (25) • 사회복지행정론 (25) • 사회복지법제론 (25) 	13:00~14:15 (75분)

-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실습과 세미나를 합쳐 총 190시간을 이수하면 그 자격이 주어짐

〈표 50〉 2급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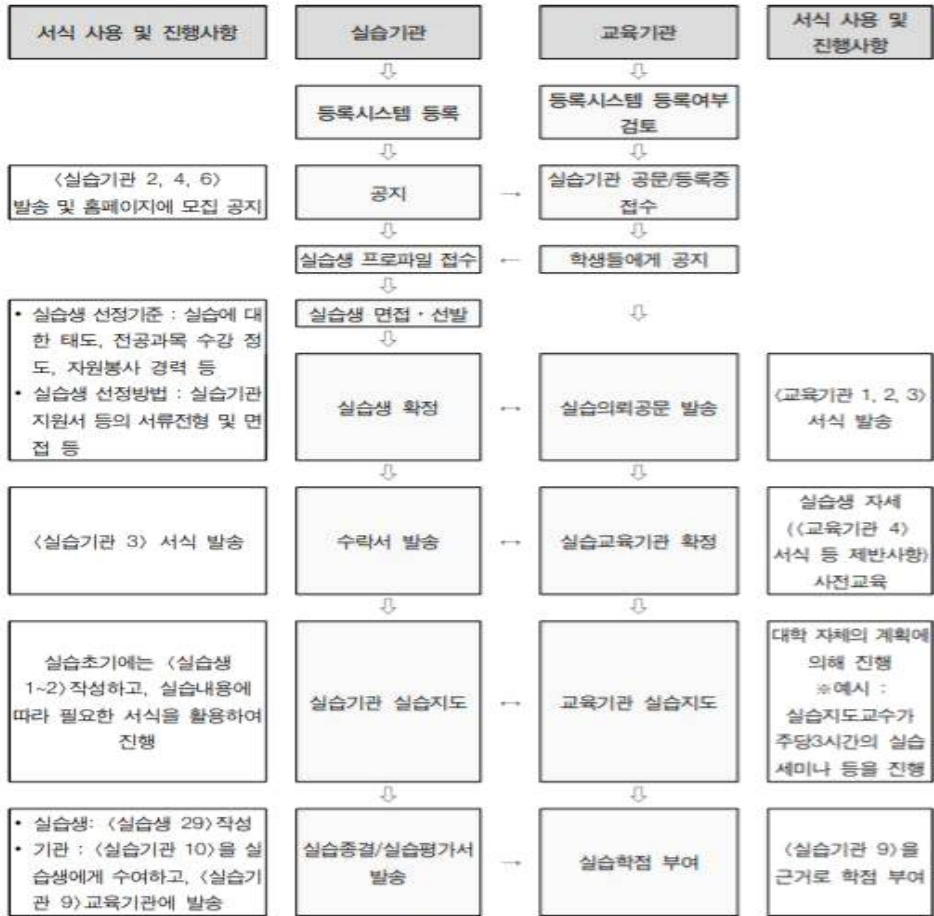
5.2.3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 조건

- 사회복지현장 실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며 현재 6353개소로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가진 실습지도자가 있는 기관에서 실습을 지도함
- 교육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이수하며, 1회기에 실습 지도자 1인당 5명 이내, 연간 20명 이하로 지도
 -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교육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실습지도의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있어야 함
 - 매일 실습 일자, 요일, 시간을 기재해 시간대별로 당일 진행내용과 세부사항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의견란에 실습 내용을 토대로 배운 점, 의문사항, 건의사항 작성
 - 실습 지도자는 실습지도자 의견란에 실습생이 기록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작성

〈표 51〉 2급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현장 실습 조건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 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절차



(그림 11) 사회복지 현장실습 진행 절차

5.2.4 사회복지사 제도 발전 과정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령 개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52>와 같음

<표 5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령 개정

연혁	법령 개정
1998년	학과 중심 -> 이수 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 졸업자 2급 -> 1급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2002년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2004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1. 사회복지기초 2. 사회복지실천 3.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2008년	2010년 입학생부터 기준 신설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교과목 학점 기준 규정: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신설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5.3 대학교육인증제 분석

5.3.1 한국공학대학교육인증원

■ 공학교육인증원의 목적

-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자문을 시행해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에 설립됨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주요행사로는 인증평가 활동, 워싱턴어코드 회원국 인증기관의 상호교류 활동, 평가자·평가위원 워크숍, 정책기획, 대외홍보, 국제협력과 공학교육 연구 등이 있음
- 인증원 설립의 목적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위함
 - 공학교육에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고취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사회에 공지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

■ 공학교육인증제도

-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공학교육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자질을 갖춘 기술자를 키워낼 수 없다는 우려가 공학교육 관련자들 사이에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음 (민동균 외, 2007: 31).
-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공대 신입생의 기초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공학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2001년 본격 도입. 공학 교육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e대한경제신문, 2021.01.18.).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규정화, 고정화를 피하기 위해 진행되는 인증 시스템에 강제성은 없지만 여러 기업체에서 인증 졸업생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의 목적
 -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
 - 해당 교육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
 -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함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

■ 인증 영역과 기준

- 공학교육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은 EAE, CAC, ETAC의 3가지가 있음

- EAC: 공학교육인증기준 2015(KEC2015) 20개 학과 해당
- CAC: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KCC2015) 5개 학과 해당
- ETAC: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2015(KTC2015)
- 공학교육인증제(EAC) 인증기준

〈표 53〉 공학교육인증 평가 구분 및 내용

구분	인증평가 내용
프로그램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은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함 •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함
프로그램 학습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해야 함
교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함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함 •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교과목 이수와 학습을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함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진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함 •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해야 함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원해야 함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해야 함
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과정 운영결과를 분석해야 함 •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함 •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함

- 이상의 7가지 기준에서 각 전공 분야별 기준 1가지를 포함한 8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짐.



(그림 12) 공학교육인증원 인증 절차

■ 인증의 혜택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의 혜택
 - 국내혜택: 여러 유명 기관에 서류전형 우대, 가점부여, 면접전형 10% 가점부여의 우대가 부여됨
 - 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오일뱅크 계열사, 인성정보 계열사, STX 그룹, 동국제강그룹, 다우기술 계열사, 한솔그룹 계열사, 대덕전자 계열사, LS그룹, AJ(아주)가족, KCC그룹, 미원상사그룹 등
 - 국제혜택: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 (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http://www.abeek.or.kr/intro/benefitg>)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관련 제도와 연계
 - 기술사 제도와 공학교육인증 연계: 주제기술사자격을 공학교육인증 학사 이상, 기술시험제도에서 기술사 1차 시험 면제(2차는 전문지식 및 경험심사)
 -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제도와 연계: 한국장학재단은 재학 중 우수자 선발시 선발인원의 15%를 공학교육인증 과정 운영 학과 소속의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5.3.2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목적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이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또는 “KAAB”)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의 최소 교육요건에 필요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하여 2004년 설립되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축 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건축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건축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축학교육인증제도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건축교육은 세계건축사연맹(UIA)(2002)이 정의한 건축교육 목적에 따라, 2가지 기본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비판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건축 전문가 양성
 -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 배출
-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사 자격을 위한 교육의 명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건축사가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학생이 졸업 시 까지 아래의 핵심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수요지향 교육과 성과 중심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각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설립목표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유의 방법에 의해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함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개정 건축사법의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된 최소 5년 이상 전일제 전문학위 프로그램(5년제 학부 학위과정 또는 2년 이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으로서 아래의 3개 Part로 구성된 9개 항목, 총 37개 세부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 Part 1, Part 2를 토대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의 학습성과인 Part 3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핵심역량이 배양되어야 함

■ 인증 영역과 기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를 통해 학생이 졸업까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및 핵심역량

<표 5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의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인증기준 (평가내용)

- 프로그램이 자체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이 실사 전에 지적된 부족사항을 개선시킬 합리적 절차를 만들고 있는가
- 프로그램이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반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가
- 프로그램이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는가
- 프로그램이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가
- 프로그램이 적절한 성취도 수준을 유지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표 55> 한국건축학교육인증을 위한 핵심역량

내 용

1. 미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창의적 건축설계 능력
2. 건축과 관련된 적절한 역사, 이론, 예술, 인문과학, 기술적 지식
3. 건축의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예술관련 지식
4. 도시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
5. 생태학적 요구와 인간행태 등을 고려한 환경 및 공간 계획 능력
6.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건축가의 역할, 리더십과, 직업으로서 건축가의 이해
7.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표현하는 능력
8. 건축, 디자인과 관련된 구조, 시공, 재료 및 설비 등 기술적 문제의 이해
9. 기후조건에 대응하는 건축 환경조절 설계 능력,
10. 예산과 법규 등 제약조건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능력
11. 건축산업 제반 사항 및 실무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의 이해와 건축사업무 관련 실무지식
12. 건축 문화제를 포함한 인간, 사회, 문화, 도시, 건축, 환경의 가치에 대한 책임 인지
13. 생태적으로 책임 있는 디자인, 환경 보전과 재생방법에 대한 적합한 지식
14. 건축물의 시공 방법과 관련 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 기술에서 창의적 응용
15. 건설 경영(Project Financing, Project Management), 공사비와 발주방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식
16. 건축학습의 기반이 되는 학생과 교육자의 연구 및 분석 역량

※ 출처: http://www.kaab.or.kr/html/sub02_3.asp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목적
 - 일방적 평가에 의해 대학의 우열을 가리거나 우수대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갖추도록 유도
 - 투명성을 위해 인증심사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구성하는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동급자간 평가방식(peer review process)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제로 건축학교육 인증을 수행함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체제하에 운영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회원단체들은 지속적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짐
 - 인증심사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실사팀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인증실사를 바탕으로 하며,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함
 - 인증심사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구성하는 회원단체 소속원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대부분의 인증심사 절차에 신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참여함
 - 인증심사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사전에 공표한 인증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의 이해와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짐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 신청 및 심사 → 인증심사 준비 → 인증심사 및 실사팀 보고서 작성 →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 재심 (이의제기)

〈표 56〉 건축학교육 인증 세부 절차

	신청 및 심사		인증심사 준비				
	후보자격신청 및 심사	인증신청 및 심사	APR 구성	실사팀 구성	APR검토 승인	통고/보완	심사일정 결정
단계별 소요기간	1개월	1개월	5개월		2개월	1개월	1개월
인증신청 프로그램	후보자격 신청서 제출	인증신청서 제출	APR작성/인증원 송부	이해 상충 /조정	-	APR 보완	일정 조정
인증원	신청접수 및 결과 통보	신청접수 및 심사/ 결과통보/심사준비W orkshop	APR 접수 및 실사팀 후보 명단확보	실사팀 교육	APR 승부	APR심사 결과통보	실사일정 통보
실사팀	-	-	실사팀 구성준비	실사팀 구성 및 이해상충 /조정	APR 심사	승인 /조건부 승인	일정조정
비고	신청자격 요건참조 (대외비)	신청자격 요건참조	APR작성지침 참조	실사팀 행동지침 전달	APR 1개월 제출 연장 가능		학기 중으로 시기 결정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재심(이의제기)	
현장심사	VTR 작성	VTR 송부 / 확인	심사팀 조정작업	인증 위원회	이사회	재심 (이의제기)	중재
3박 4일	1개월	15일	15일	1개월		1개월	100일
피 실사	평가서 작성	VTR 실사 확인	VTR 조정		인증여부/인증 조건 결정 수령	이의제기 (15일 내 및 이의제기 서류 작성)	청문회 참석
	VTR 접수	VTR 송부	인증위원회 소집준비	인증최종심의 및 이사회 제출	인증여부/인증 조건 결정 및 통보	이사회 소집	중재위원회 소집/청문회 이후 3일 내 결정
	VTR작성 (10일 내 2차원고/ 10일 내 수정/ 10일 내 송부)		VTR조정 및 심사팀 제안서(별도)작 성	VTR 및 제안서 제출	VTR 및 제안서 제출	-	-
학기 중 실사	VTR 작성지침 참조	보완자료 작성가능	제안서 대외비	-	1월 말일 통보	입시 이사회	최종결정

■ 인증 실사 체계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실사

-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 군(Pool)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회원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KIRA), 대한건축학회(AIK), 한국건축가협회(KIA)에서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 명단을 추천을 받으며,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4년임
- 실사팀 위원 후보 선정 조건
 - 회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프로그램이 인정할 만큼 충분한 전문 지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 프로그램의 건축학적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실무와 건축학교육에 관한 균형 잡히고 다양한 관점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어야 함
 - 건축사의 경우 건축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인증실사팀 구성
 - 인증실사팀 위원은 실사팀장이 소속된 협회를 고려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회원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KIRA), 대한건축학회(AIK), 한국건축가협회(KIA)에서 추천한 후보 명단 및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의 추천자에 한 함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위원으로 대상 프로그램과의 적합성(학위유형, 프로그램의 규모,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주안점, 학제 등)을 감안하여 구성
 - 실사팀은 팀장 포함 총 5인으로 최소 2인은 유경험자로 하며, 교육자 2인, 실무건축사 2인, 실사팀장 1인으로 구성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추천 참관인 1~2인과 프로그램 추천 참관인 1인이 지정될 수 있음
 - 프로그램은 추천된 실사팀 위원 5인 중 2인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단, 사유가 합당할 경우)
- 프로그램 인증실사
 - 인증실사는 인증신청 승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절차에 의거 실시되며, 프로그램은 인증실사 일정까지 실사팀 작업실을 구성하여야 함. 또한 인증실사 일정 및 일정에 따른 세부안건과 실사팀 작업실 구성에 대하여 인증실사팀장과 협의하여야 함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자문 및 인증실사 참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후보자격)신청 및 인증실사에 이르는 준비사항과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인증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혼선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인증실사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관인 자격으로 인증실사 참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관계자(인증 PD 또는 신입 교원)의 인증제도 이해를 높이고 인증실사 준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증실사 참관은 최종대외비제안서 결정회의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실사팀과 같이 하게 되며, 실사팀장의 권한에 의해 일정 분량의 실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또한 추후 인증실사위원 후보군 명단에 등록되어 실사팀 위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음

■ 건축학교육인증 혜택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혜택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한 대학의 건축학과 졸업(예정)생들은 국내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 면제,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인 실무수련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혜택을 받게 됨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수혜

-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우수 교원의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음. 인증제도의 수혜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이러한 우수 인재를 수용하는 건축업계와 사회가 최종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음
- 인증제도에서의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은 건축설계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이론 교과목들은 설계 교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인증기준에 의해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우수 교원에 의해 개인 지도방식의 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 후 대부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실무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됨

5.3.3 경영학교육 인증제도

■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목적

-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학교행정당국이 해야 할 교수 수의 증가나 시설과 같

은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교육의 내용, 방식, 사례와 관련 자료의 개발과 유통, 교과과정, 업적평가와 보상제도 등 교육의 소프트 측면에서는 범 학회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함

-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한국 경영학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 경영학교육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경영학교육 인증업무를 수행
- 또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발전된 경영학교육을 위해 동일 교육기관 내 전체 경영교육 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경영학 학사 과정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표기 수를 통합하여 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함
- 통합 기준에는 경영대학원 또는 경영전문대학원(이하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증 기준이 제시됨
- 통합인증제도는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는 점 외에도 기준 면에서 큰 변화를 수반함. 투입 지향적인 정량지표를 ‘필수’의 개념이 아닌 여러 기준 중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점이며, 상대적으로 과정과 결과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는 일부 핵심계량지표가 많은 대학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투입보다는 결과 중심의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한국경영인증원, 2020)

■ 경영학교육인증제도

-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교육기관은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신청할 수도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음.
 - AACSB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AACSB에 최근 제출한 SER(Self Evaluation Report)나 CIR(Continuous Improvement Report)과 교육개선평가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경영교육 인증 기준 목표 및 영역
 - 경영교육 인증 기준 목표
 - 한국 경영 교육의 질 향상
 -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체계적 관리
 -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
 - 수요중심 경영교육의 체계화

- 성과중심 교육관리
-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균형적 발전
- 경영교육 인증의 영역
 - (기준 1) 미션, 비전 및 목표, (기준 2) 학습목표 및 성과관리, (기준 3) 교육과정과 수업, (기준 4) 학생, (기준 5) 교수, (기준 6) 시설 및 교육환경, (기준 7) 지속적 개선
- 한국경영교육인증원 경영교육 인증 등급 및 인증 기간

〈표 57〉 경영교육 인증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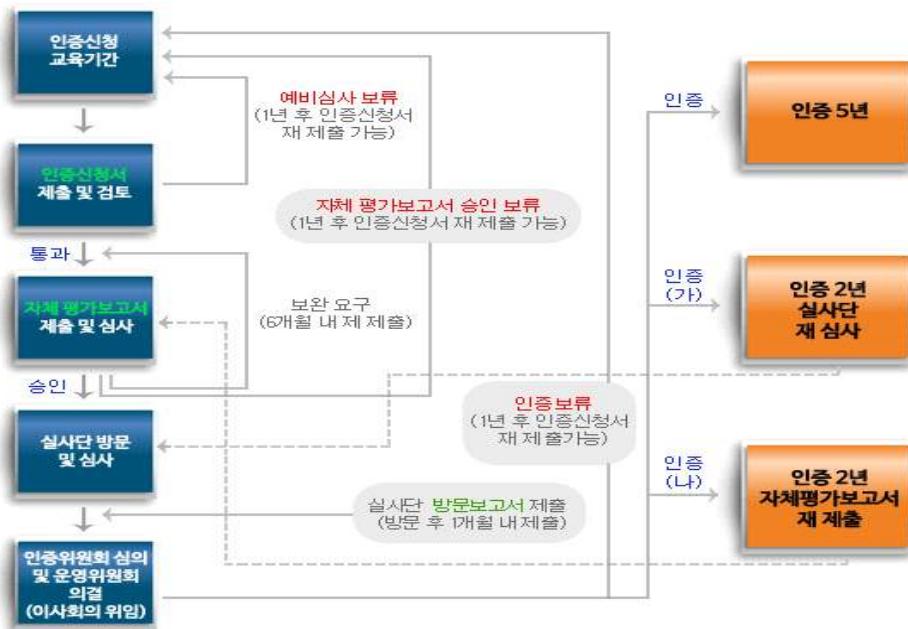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인증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5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히 경미한 부족사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7개 모든 기준에 대해 충족할 경우 5년간 인증이 유효 ▪ 인증(가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의 부족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7개 모든 기준에 대해 충족할 경우 실사단이 2년 뒤 실사 재심사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2년간 예비 인증 자격을 부여 ▪ 인증(나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7개 기준 중 6개 기준에 대해 충족하고 향후 2년 내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사단은 교육기관이 2년 내 부족 기준을 보완하고 현 시점부터 2년 후 자체 평가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사 재심사를 조건으로 2년간 예비 인증 자격을 부여 ▪ 인증(인증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거나 전체적으로 7개 기준 중 6개 미만의 기준에 대해서만 충족할 경우 인증을 보류, 인증 보류 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뒤 다시 인증 신청 가능

※ 출처: 한국경영교육인증원 (<http://www.kabea.or.kr/>)

- 인증절차의 첫 단계인 인증신청서를 심사할 예비심사인증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예비심사가 통과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할 실사단이 구성. 실사단은 3명으로 구성되며(예비심사 심사위원이 향후 본심사의 실사단이 된다) 서면심사와 현장실사의 업무를 담당함
- 현장실사 종료 후 실사단은 실사단 방문보고서와 함께 인증여부와 종류에 대한 대외비 제안서를 작성함. 실사단이 실사 후 작성한 실사단 방문보고서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인증

위원회는 실사단이 제출한 최종 방문보고서와 제안서를 토대로 인증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

- 교육기관은 인증여부, 인증조건 등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교육기관은 인증 이후 매년 정량 지표의 변화와 기타 인증기준 상의 주요 변화 및 개선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연차보고서를 인증 이후 매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출
 - 단, 교육개선평가보고서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그림 13) 인증 절차 도식화

- 학부와 일반대학원 이외에 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합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통합인증 실시에 따른 인증대상 프로그램 및 적용 인증기준에 있어서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음

<표 58> 통합인증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구분	내용
<p>2018년 1월 1일 이후 시점에 인증 5년이 경과되어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상 프로그램: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신청할 수도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음(단, 일반대학원이 없는 경우 학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대학원만 신청할 수 있음) ▪ 적용 인증기준: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신청하는 경우 2018년 말까지 신청하는 대학에 한하여 기존 기준과 통합인증기준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2019년 이후에 신청하는 대학은 통합인증기준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준 적용을 받음. 그러나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기준의 적용을 받음
<p>2018년 1월 이후 신규로 인증 신청(신청서 제출일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상 프로그램: 학부만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대학원을 포함하거나 일반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음(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대학원만 신청할 수 있음) ▪ 적용 인증기준: 학부 또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만 신청하는 경우 2018년 말까지 신청하는 대학에 한하여 기존 기준과 통합인증기준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2019년 이후에 신청하는 대학은 통합인증기준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준 적용을 받음. 그러나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인증기준의 적용을 받음
<p>2019년 1월 이후 시점에 인증 2년이 경과되어 교육개선평가보고서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대상 프로그램: 기존 방식대로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인증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새로 신청할 수도 있음(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대학원만 신청할 수 있음) ▪ 적용 인증기준: 학부와 일반대학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존 기준과 통합인증기준의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단, 통합인증기준 중 학부와 일반대학원기준을 택하는 경우 교육개선평가보고서나 자체평가보고서는 통합인증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야 함 ▪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하는 통합인증을 원하는 경우 통합인증기준에 의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자체평가보고서 심사의 절차 및 효력은 처음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때와 같음

※ 출처: 한국경영교육인증원 (<http://www.kabea.or.kr/>)

- 경영학교육인증은 경영학 교육과정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재학 중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일정수준의 다양하고 핵심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음. 특히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KABEA를 획득할 경우 입사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한상의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부경대학교 경영대학)

5.4 영양사 자격제도 분석

5.4.1 영양사 자격

■ 영양사의 법적 근거

- 영양사의 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법률 제 17471호)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817호) 제 7조에서 정하고 있음

〈표 59〉 영양사의 법적 근거

조문제목	조문내용
국민영양관리법 15조	<p>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7조	<p>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9.></p>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별표 1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총 2과목 이상(6학 점 이상)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19학 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 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 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관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14학 점 이상)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 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 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11학 점 이상)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 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총 1과목 이상(2학점 이상)
비고	<p>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 교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 실험”, “~ 실습”, “~학”, “~연습”, “~ I 과 II”, “~관리”, “~ 개론” 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 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p>		
별표 1의 2			
구분		내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 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영양사의 자격시험

- 영양사 자격시험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의 제 8조에서 시행과 공고, 제 9조에서 국가시험 과목을 규정하고 있음
 - 영양사 국가시험 시행, 공고 및 시험 과목

〈표 60〉 영양사의 자격시험 법적 기준

조문 제목	조문 내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p> <p>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出捐)한 비영리법인</p> <p>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p> <p>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p>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9.></p> <p>1. 영양학 및 생화학(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p> <p>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임상영양학·영양상담·영양판정 및 지역사회영양학을 포함한다)</p> <p>3.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식품미생물학·실험조리·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포함한다)</p> <p>4.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식생활관리·식품위생학·공중보건학과 영양보건의료·식품위생 관계 법규를 포함한다)</p> <p>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p> <p>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9.></p> <p>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p>

□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 중 60%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로 하며 합격자 명단은 국시원(<https://www.kuksiwon.or.kr/index.do>)에서 합격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 2021년 9월 기준 영양사 국가시험 현황 및 시험과목

<표 61> 영양사의 국가시험 현황 및 시험과목

총점	배점	문제형식
220점	1문제 / 1점	객관식 5지 선다형

교시	시험과목(문제 수)	교시별 문제 수	시험시간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제) 2.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문제)	120문제	09:00~10:40 (100분)
2교시	1.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문제) 2.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60문제)	100문제	11:10~12:35 (85분)

■ 영양사 현장 실습

- 현장 실습은 2학점으로 방학 중 일일 8시간, 연속 2주, 총 80시간 준수
- 실습기간은 학생들이 직접 초·중·고 학교에 전화해서 섭외하되 안된다면 학과에서 섭외
- 실습평가는 pass-fail로 운영되며 실습일지를 통해 평가됨.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필수 과목임

5.4.2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 임상영양사

- 임상영양사는 질병별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의거해 1.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충족하거나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 2021년 9월 기준 임상영양사 국가시험 현황

<표 62> 임상영양사의 국가시험 현황 및 시험과목

교시	시험과목	영역	문제수	시험형식
1교시 (80분)	임상영양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영양이론 • 병태생리학 • 임상영양치료이론 •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 보건.의료.영양 관계 법규 	65	1문제 / 1점
	전문분야 연구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영양연구 	10	총점 150점 객관식 5지 선다
2교시 (100분)	임상 영양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영양치료 실무 • 영양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75	

■ 영양교사

□ 영양교사는 「초.중등 교육법」(법률 제17664호) 제 21조 교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급, 2급으로 나뉨

<표 63> 영양교사 자격 조건

급수	내용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1급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은 사람

5.5 보육교사 자격제도 분석

5.5.1 보육교사의 법적근거

■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은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8415호) 제 21조에 의거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1576호) 제 21조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음

〈표 64〉 보육교사 법적 근거

조문 제목	조문 내용			
영유 보육법 제21조	<p>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p> <p>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0. 1. 18. 2011. 8. 4.></p> <p>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8. 4.></p> <p>[전문개정 2007. 10. 17.]</p> <p>[제목개정 2011. 6. 7.]</p>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p>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8.></p> <p>별표 1</p> <table border="1" data-bbox="371 1097 1153 1694"> <tr> <td data-bbox="371 1097 477 1694">원장 자격 기준</td> <td data-bbox="480 1097 536 1694">일 반 기 준</td> <td data-bbox="539 1097 1153 169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td> </tr> </table>	원장 자격 기준	일 반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원장 자격 기준	일 반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어린이집	<p>(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p>(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자격 기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5.5.2 보육교사의 자격시험

- 보육교사는 따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805호) 제 17조에 의거해 서류심사가 있음

〈표 65〉 보육교사 자격조건

조문제목	조문내용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별표4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 과목(27 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 과목(12 학점)이상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별표5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 아동권리와 복지(3)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 보육 과정(3), 영유아 발달 및 지도(3), 아동생활지도(3), 영유아 문제 행동지도 및 상담(3),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 놀이지도(3), 언어지도(3), 아동음악과 동작(3), 아동미술지도(3),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3), 영유아 교수방법론, 교재 교구개발(3), 부모교육(3), 영유아 건강지도(3), 영유아 영양지도(3), 아동안전관리(3), 어린이집 운영관리(3)	18과목 (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 보육실습(4)	2과목 (7학점)

5.6 국내 유사자격제도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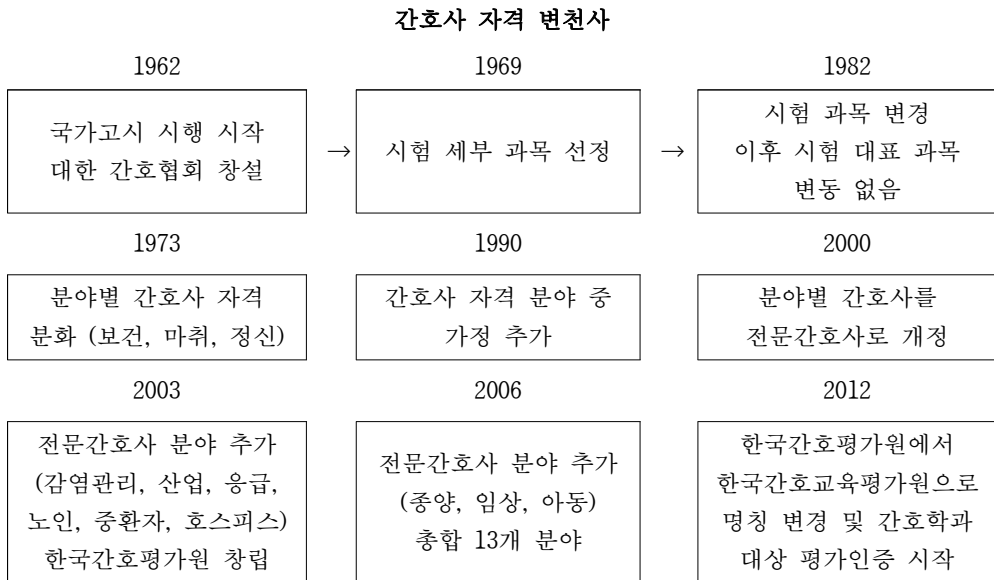
5.6.1 국내 유사자격제도 요약

■ 간호사 자격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이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국가고시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함.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함 각 문제의 배점은 1점으로 동일하며 총 8개 과목을 각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이상일시 합격
- 1962년 간호사 자격시험이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고시로 변경(조산사와 간호사의 면허가 분리)
- 간호교육평가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1990년 간호학과 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일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양적 평가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01년 5월 산하기관의 하나로 간호교육평가를 맡아왔고, 2003년 9월에는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담보된 자율조정기구로서 그 역할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국간호평가원’이라는 독립 재단법인으로 거듭남



(그림 14) 간호사 자격 변천사

■ 전문간호사 자격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상급건강사정, 약리학, 병태 생리학), 전공이론과목(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전문분야별 전공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함.
-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 1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전문간호사의 경우, 등급구분이 없으며,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인증평가제를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평가원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공정하고 타당성이 보장된 간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사업,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및 민간자격시험 시행, 간호사 면허/자격 제도의 발전, 간호사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인증평가 운영 절차 및 방법
 - 간호교육인증평가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면평가 → 현지 방문평가 →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한 인증평가 결과 확정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조정 → 평가결과 판정 → 평가결과 최종 확정 → 인증유지 → 평가결과 이의신청
- 인증의 평가영역
 -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인증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간호교육 교육과정 영역의 인증기준
 -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구성(학과의 교육과정은 구성 원리에 따라 학과가 설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

〈표 66〉 교과목 이수체계 및 이수 영역

분류	평가인증 기준	설명
교양필수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 *전문학사: 10학점	졸업을 위해 대학 또는 단과대학, 학과 등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한 교과목
교양선택		학위취득을 위해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영역의 교과목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교과목: 8학점 이상 이수	전공영역 학문연구의 기초가 되며, 관련 학문영역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 태도와 관련된 교과목으로서 자연과학 영역과 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공필수	70학점 이상 90학점 이하 이수	간호사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능, 태도와 관련된 교과목으로서 주로 국가시험 관련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을 포함함.
전공선택		간호학의 전공영역으로서 보다 심화되거나 다양화된 선택 교과목

- 성과기반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실습교육, 임상실습 교육, 임상실습 지도)

〈표 67〉 간호 실습교육 및 임상실습

실습실 및 현장 실습 조건	
실습실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별 학점, 이수시간 등을 검토하여 학점 당 실습시간이 1:2로 편성되어 운영(9주 수업 5주 실습: 학교마다 조금씩 다름, 집중이수제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함) • 실습 교과목의 실습지도교원 대학생 배치 비율이 1:25 이하로 유지 • 실습조교가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임상경력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 • 전임교원이 학기당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학점의 일부를 담당 • 학습성과를 실습지침서에 제시, 실습지침서를 적절하게 구성해 실습 교육에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용 실습지침서: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교과목의 학습성과, 내용,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일시, 지도 장소, 지도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 2) 지도자용 실습지침서: 실습지도계획서(주차별 실습지도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실습 운영현황을 작성하고, 학생 규모와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p>충분한 개방시간을 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실습 운영시간은 4시간 이상/주 운영하되 학생 수에 비례해 적정성 검토 2) 자율실습실의 전담인력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 3) 학생의 물품사용 신청, 전담인력의 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1쪽 이내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임상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목 학점 당 시수는 1:2 비율로 함 2)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의 비율은 1:25로 함 3)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는 8명 이하 유지 4)지도교원 및 지원인력 적격성, 학점 당 모듈별 운영시간과 현장실습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을 검토함(이 경우 임상실습시간의 12% 이하 또는 최고 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실습교과목의 수업개선과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내용, 학습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p>임상실습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 교육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포함하여 이를 강의계획서와 실습지침서에 제시하고 있는지 • 실습교과목별 실습지침서 현황을 작성하고,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실습지침서에 제시되고 있는지, 실습지침서를 어떻게 구성하여 임상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용 실습지침서: 학습성과와 핵심기본간호술이 반영된 실습목표, 내용, 방법, 평가도구, 배치표, 실습학점, 실습지도교원의 실습지도 현황(지도자명, 지도 일시, 지도 장소, 지도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 2) 지도자용 실습지침서: 실습지도계획서(실습병동, 요일별, 시간별, 실습병원명, 병동별실습지도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을 포함)를 포함하여 구성. • 학점 당 임상실습 시간이 1:3으로 편성해 운영 • 임상실습 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 편성 현황과 당해 연도 졸업생의 임상실습 이수 현황을 작성, 임상실습이 1,000시간 이상(추후 22학점으로 변경 추진 중)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단, 일실습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며 매학기 방학 중 실습이 학생 개인별 최대 몇 주간 운영되는지 검토하되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는 실습 운영을 최소화함 • 임상실습의 일부 시간을 시뮬레이션 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학점 당 시수는 1:2 비율로 하고, 시나리오 및 모듈 활용 현황, 교원 대비 학생 배치 인원은 1:25 비율,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 8명 이하 유지, 지도교원 및 지원인력 적격성, 학점 당 모듈별 운영시간, 현장실습교과목과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적절성 검토 단 시뮬레이션 실습은 4학점 또는 임상실습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단위의 배치가 적절한지, 임상실습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실습교과목별 학습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과 실적 등을 기술하고, 현장지도자를 포함한 다양한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술함 •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임상실습 개선과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한 지도 내용, 학습성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p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실습 교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실습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2.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임상실습 단위별로 100% 확보하고 있는가? 4.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지도를 담당하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현황을 작성하고, 모든 실습단위의 현장지도자를 확보하고 있는지(학기당 확보율 100%) 검토함. 또한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 임상실습지도를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와 임상실습현장지도자가 실습 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이나 협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상, 내용,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 기술함 										
<p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실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실습기관과의 협약체결 기준과 선정 과정 작성 • 임상실습 협약기관의 종류와 현황을 구분해 작성함. 학기당 임상실습협약기관의 90% 이상이 아래의 임상실습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밖의 임상실습협약기관도 병원급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함 <table border="1" data-bbox="381 1199 1153 1512">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실습영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상실습기관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a)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td> <td>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td> </tr> <tr> <td>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td> <td>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td> </tr> <tr> <td>c) 특화병원 또는 시설</td> <td>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td> </tr> <tr> <td>d) 지역사회 기관</td> <td>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td> </tr> </tbody> </table> <p>b)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간호부서 - 실습학생 공간 확보(컨퍼런스룸, 탈의실): 공용인정 - 자격을 갖춘 현장지도자 확보 - 현장지도자와의 협력실적 학기당 1회 이상 	임상실습영역	임상실습기관의 종류	a)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	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c) 특화병원 또는 시설	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d) 지역사회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임상실습영역	임상실습기관의 종류										
a)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지역거점 공공병원)										
b)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c) 특화병원 또는 시설	노인병원, 아동병원, 정신병원, 여성병원, 치매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d) 지역사회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와 임상실습기관이 실습지도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협력한 현황을 간략히 작성하고, 매학기 실습기관별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검토함. • 임상실습기관에 실습학생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학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략히 기술하고, 주 실습기관의 실습학생의 전용공간 확보 현황을 검토
--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부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함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출제함. 모든 문제는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함 각 문제의 배점은 1점으로 동일하며 총 3개 과목을 각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이 60%이상일시 합격
-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실습과 세미나를 합쳐 총 190시간을 이수하면 그 자격이 주어짐.

〈표 68〉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현장 실습 조건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조건

〈표 69〉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및 현장실습

구분	필수 과목	현장 실습	비고
대학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실습 기간 : 160 시간	10과목 (30학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실습 세미나 : 30 시간
대학원		6과목 (18학점)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

<표 70>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

시험 과목(문제 수)	합격 기준	응시 자격요건
사회복지기초(50) 사회복지정책과제도(75) 사회복지실천(75)	총점의 6할 이상, 과목별 4할 이상	1. 사회복지학(사업학) 석사, 박사 학위 2.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자 3. 1년 이상 실무 경험자

□ 사회복지사는 그 자격을 2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급에 한하여 국가시험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학 학과 중심이 아닌 이수 교과목 중심이라는 점, 법령 개정 과정을 봤을 때 점차 대학이라는 대규모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기관 등의 비교적 소규모 양성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 그럼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인증교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자문을 시행해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8월에 설립됨
- 공학교육인증원이 시행하는 인증은 EAE, CAC, ETAC의 3가지가 있음.
 - EAC: 공학교육인증기준 2015(KEC2015) 20개 학과 해당
 - CAC: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기준 (KCC2015) 5개 학과 해당
 - ETAC: 공학기술교육인증기준 2015(KTC2015)
- 공학교육인증원 인증 절차
 - - 자체평가보고서제출 → 서면평가 → 서면평가 의견서 → 방문평가(대학방문 1박2일) → 전공분야별 조율 → 대학연도조율 → 예비논평사 → 논평대응서 → 인증 판정 → 최종논평서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관련 제도와 연계
 - 기술사 제도와 공학교육인증 연계: 주계기술사자격을 공학교육인증 학사 이상, 기술시험제도에서 기술사 1차 시험 면제(2차는 전문지식 및 경험심사)
 - 국가우수장학금 지원제도와 연계: 한국장학재단은 재학 중 우수자 선발시 선발인원의 15%를 공학교육인증 과정 운영 학과 소속의 학생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대학교육인증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orea Architectural Accreditation Board, 이하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 또는 “KAAB”)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의 최소 교육요건에 필요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하여 2004년 설립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목적
 - 일방적 평가에 의해 대학의 우열을 가리거나 우수대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갖추도록 유도
 - 투명성을 위해 인증심사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을 구성하는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동급자간 평가방식(peer review process)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 신청 및 심사 → 인증심사 준비 → 인증심사 및 실사탐보고서 작성 →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 재심 (이의제기)

■ 대학교육인증교과: 경영학교육 인증제도

- 2007년부터 학사과정을 중심으로 경영학교육 인증업무를 수행. 2013년부터 경영학 학사 과정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합하여 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함.
- 통합 기준에는 경영대학원 또는 경영전문대학원(이하 경영(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증 기준이 제시됨.
- 경영교육 인증의 7개 영역(1. 미션, 비전 및 목표, 2. 학습목표 및 성과관리, 3. 교육과정과 수업, 4. 학생, 5. 교수, 6. 시설 및 교육환경, 7. 지속적 개선) 및 인증 등급

내 용

- **인증(5년 인증)**
 - 극히 경미한 부족사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7개 모든 기준에 대해 충족할 경우 5년간 인증이 유효
- **인증(가 2년)**
 - 약간의 부족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7개 모든 기준에 대해 충족할 경우 심사단이 2년 뒤 실사 재심사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2년간 예비 인증 자격을 부여
- **인증(나 2년)**
 - 전체적으로 7개 기준 중 6개 기준에 대해 충족하고 향후 2년 내 충족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단은 교육기관이 2년 내 부족 기준을 보완하고 현 시점부터 2년 후 자체 평가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사 재심사를 조건으로 2년간 예비 인증 자격을 부여
- **인증(인증보류)**
 - 심각한 부족사항이 있거나 전체적으로 7개 기준 중 6개 미만의 기준에 대해서만 충족할 경우 인증을 보류, 인증 보류 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뒤 다시 인증 신청 가능

출처: 한국경영교육인증원. <http://www.kabea.or.kr/>

- 한국경영교육원 인증 절차 (1. 인증신청교육기간, 2. 인증신청서(제출 및 검토), 3. 자체평가보고서(제출 및 심사), 4. 심사단 방문 및 심사, 5. 인증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이사회의 위임))

■ 영양사 자격

- 영양사 자격의 법적 근거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표 71〉 영양사 교육과정 및 최소이수 학점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 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 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 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오감(五感)을 이용한 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 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 (관계) 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 아래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표 72〉 영양사 학부 명칭

구분	내용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 식품학과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영양사 자격시험
 -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 중 60%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로 함
- 영양사 현장실습 조건

〈표 73〉 영양사 현장실습 조건

현장 실습	
현장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2학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연속 2주, 총 80시간 준수 • 실습기간은 학생들이 직접 초·중·고 학교에 전화해서 섭외하고 만약 섭외가 안되면 학과에서 섭외 • 실습평가: pass-fail, 실습일지 평가 •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필수 임

■ 임상영양사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충족하거나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 보육교사 자격제도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
 -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표 74〉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시험

-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함
 1.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보육 관련 업무 특성 상 주로 업무 경력의 유무에 따라 급수 승급 및 원장 자격이 정해지는 경향이 강함. 일부 다른 전공자 역시 업무 경력이 있다면 전문 어린이집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5.6.2 국내 유사자격제도 시사점

■ 간호사관련 시사점

- 간호학에서는 간호사 자격과 전문간호사 자격으로 나누어져 있음. 문헌정보학의 2급 정사서에 비교되는 자격은 간호학과 학부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발급하는 간호사 자격임.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원에서 전문주제별 교육을 받은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간호사 자격 및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에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함.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인증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 만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인증평가 운영 및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편람을 통해 인증평가 사업,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임상 실습 등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교양 필수 및 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 현장 실습에서는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부분과 교원 그리고 실습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관련 시사점

-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영역별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장실습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실습 시간, 실습기관, 실습 세미나, 실습에 대한 교원자격 등
-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제시하고 대학 학과 중심이 아닌 이수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학교육인증교과관련 시사점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대학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

-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통해 공학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혜택을 주고 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축사자격의 최소 교육 요건을 위해 건축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경영학교육 인증제도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합한 인증제도이며 7개 영역 및 인증 등급을 제시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시행 및 부여하고 있음

■ 영양사관련 시사점

- 영양사 자격은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초, 영양, 식품 및 조리, 급식 및 위생, 실습으로 나누고 교과목 및 유사인정과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장 실습은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필수 과목으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임.
- 임상영양사는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만 자격시험에 볼 수 있음

■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유사제도 관련 시사점

- 유사제도 분야에서 그 학문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한국간호교육평가원, 공학교육인증원), 그 기관에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국가시험 등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편람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간호학이나 인증제를 운영하는 타 기관에 비해 약함
 - 이에 강력한 도서관 전문단체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인증, 기관 인증, 전문자격 인증, 국가시험 등 다양한 기준 제시 필요

□ 인증제 도입

-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간호학의 경우 인증제를 통과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격증을 양산하고 있어 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대량 생산하는 기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 간호학, 사회복지 1급, 영양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사자격제도 분야에서는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받아야 자격을 획득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많음. 또한, 필수과목 등 이수해야 할 과목 및 학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유사자격제도의 경우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 교원, 기관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간호학의 경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또한, 현장 실습이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됨.
- 문헌정보학의 경우도 국가고시 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유사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100점 만점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넘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합격률이 높고, 대부분 대학졸업과 함께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고시 및 인증제 도입에 있어 교육과정의 표준화된 교과목 및 이수학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간호사 자격에서 보면, 실습실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나누고 있음. 이에 문헌정보학도 자료조직, 정보학관련 실내 실습과 현장 실습을 구분하고 기자재 구비 등을 보완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전문자격 및 주제영역 자격제도

- 전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주제영역 전문자격, 임상영양사 등은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문헌정보학의 경우도 주제전문사서 및 1급의 경우 이들 유사자격제도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 6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분석

6.1 기존 개선방안의 내용 분석

6.2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 분석

제 6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분석

6.1 기존 개선방안의 내용 분석

6.1.1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 연구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2008)의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는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른 사서자격 재구분(안), 사서자격 재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안), 사서자격 취득방안(안) 및 사서자격 구분에 따른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안)을 각각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사서자격제도 종합개선안을 제시함

6.1.1.1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

1) 업무 전문성 기반의 사서자격 재구분

- 사서자격을 재구분하기 위한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으로 직급을 구분
 - 새로운 사서자격제도의 직급 구분은 전문직인 사서와 사서의 보조직인 준사서의 경계를 먼저 구분하고 각기 직무의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준사서는 도서관 정보전문직이 아니라 도서관 전문직인 사서의 보조직으로 구분하고 준사서도 직무에 따라 직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전공자가 60학점 정도를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을 받고 대학의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30 ~ 36학점 정도를 이수하는 것만으로 2급 정사서 자격을 받는 것이 형평성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음 (정동렬, 2007)
 - 각 직급 내에서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업무의 구체적 전문성 난이도가 아니라 전문적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수준,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
 - 현행 「도서관법」에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 사서직 공무원 임용 시에도 그 구분이 되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며, 사서직은 국회사무처에서 공채하는 국회도서관 사서직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특별채용에 의하여 선발됨

〈표 75〉 공무원임용시험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서	사서	경력 5년의 1급 정사서	1급 정사서, 경력 6년의 2급 정사서	경력 3년의 2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사무	사서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10급
		2급 정사서(3년)		2급 정사서	준사서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개정 2007.5.16.).

- 특별채용은 9급이 정사서 이상 소지자, 8, 7, 6급은 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5급은 1급 정사서 이상, 기능직의 사무원(사서) 8급도 준사서 이상, 기능직 6, 7급은 2급 정사서 이상으로 규정함

■ 사서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안)

- 사서자격을 3개 직급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분석
- 현행 2급 정사서에 해당하는 3급 사서, 2급 전문사서, 1급 선임사서의 순으로 자격요건을 〈표 76〉과 같이 제안함

〈표 76〉 사서 자격 요건(안)

구분	자격 요건(안)
사서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전문대학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표준교과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2.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학사학위 + 사서보 자격시험 합격자 3.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도서관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서보 자격시험 합격자 4. 고등학교 졸업자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서보 자격시험 합격자
3급 사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사학위 취득자(대학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전공 표준교과과목 60학점 이상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60 2. 외국 인증 도서관/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3. 타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학위 취득

	<p>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p>4. 타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의 도서관교육/사서교육 석사학위 취득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추가 이수자)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p>5.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사학위 취득자(학부제 등으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60학점 미만 이수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p> <p>6.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취득자(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과목 중 필수과목 15학점 미만 추가 이수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p> <p>7. 외국 비인증 도서관/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p> <p>8. 사서보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3급사서 자격시험 합격자</p>
2급 전문사서	<p>1.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주제 분야 석사학위 취득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주제분야)</p> <p>2.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8년 이상(특정 업무 3년 이상 수행)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직무분야)</p> <p>3.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9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 → 전문사서</p>
1급 선임사서	<p>1. 2급전문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p>2.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 박사학위 취득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p>3.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박사학위 취득자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p>4. 3급사서 자격증 + 도서관 관련 실무경력 15년 이상 + 자격인증기관의 인증</p>

2)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설정

■ 취득 학점의 상향 조정

-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서 30 ~ 36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문헌정보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함양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일차적으로 취득할 학점 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최초의 전문직 직급인 3급 사서자격을 위한 최소 취득 학점 수를 6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면 사서교육원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의 기간이 1년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함

- 새로운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사서교육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나 도서관운영 도우미 및 도서관 컨설팅 실무 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함
- 사서자격 취득과 관련한 취득 학점 수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표준교과과정의 채택 및 도서관 실습과목의 필수적 이수라는 조건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설정

- 미국, 영국 등에서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사서의 교육을 대학원 수준에서 시행해 왔고 유럽연합의 다수의 나라에서는 공통의 고등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학부 수준의 교육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표준교과과정을 설정하여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지정하고 최소 취득 학점 수를 상향 조정하여 이들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준교과과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표 77>과 같이 제안함
 - 최신 도서관 및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서와 정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지식, 기술과 소양 등을 다루는 이론 과목 및 실습 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규정해야 함
 - 도서관 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문헌정보학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가 일치될 수 있게 해야 함
 - 주제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목을 포함하여 향후 전문사서제도가 채택될 경우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함
- 3급 사서로서 주제 전문사서가 되고자 한다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실무 이후 학위과정 또는 실무경력을 갖는 것이 기본 조건임. 따라서 학부 수준의 표준교과과정에서는 전문사서 자체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 교과과목이 아니라 향후 그 방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과목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함

<표 77>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 표준교과과정

(범례: 공통기초 ●, 핵심필수 ★, 필수 ○,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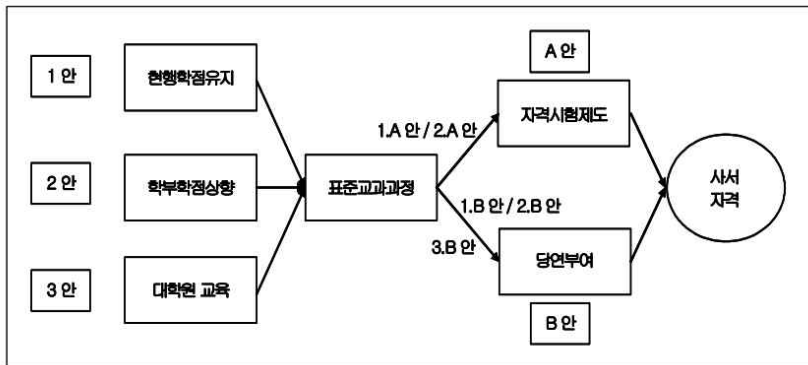
핵심영역			
영역	내용	과목명	필수/선택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개론	○
	전문직 윤리		
	도서관 문화와 역사	도서관사	○
	정보와 사회	정보사회론	○
	연구방법론	도서관연구방법론	△
정보접근과 이용자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행태론	○
	커뮤니티분석		
	정보 리터러시	이용자 교육론	△
	이용자/서지교육(BI)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	△
정보자원과 컬렉션	장서개발	장서개발론	○
	전자자원관리	디지털도서관리론	△
	고서, 고문서관리	서지학	△
	기록	기록관리론	△
	주제 및 전문컬렉션	주제정보자료론	△
	보존	장서보존론	△
	기타 주제	정보매체론	△
정보구조와 조직	목록(Catalog): OPAC, 종합목록 등	목록법(I), 인쇄자료	★
	편목(Cataloging): 인쇄, 전자, 멀티미디어 매체 등	목록법(II), 전자매체 기타	○
	분류: 분류체계, 주제표목, 시소러스 등	분류법	★
	색인, 초록	정보검색론	○

	정보표현과 메타데이터		
정보시스템	정보표현과 검색기법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도서관자동화(I)	★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데이터베이스론	○
	정보시스템 설계/개발	도서관자동화(III)/ 도서관시스템론	○
	검색시스템 구조/알고리즘/설계		
정보기관과 서비스	정보서비스: 일반	정보서비스론	★
	온라인/오프라인 참고서비스		
	주제서지와 학술 커뮤니케이션	학술정보서비스론	△
	정보서비스: 어린이, 청소년	아동서비스론	△
	정보서비스: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서비스론 (장애인서비스론)	△
	도서관 협력과 네트워킹	도서관협력론	○
경영과 관리	도서관 관종별 경영	공공도서관경영	△
		대학도서관경영	△
		전문도서관경영	△
		학교도서관경영	△
	도서관 마케팅, 기획과 홍보	도서관경영론	★
지식경영(KM)과 비용/효과 분석			
기타 주제			
정보정책과 윤리	지적 자유와 저작권	도서관정보정책론	○
	법과 제도		
	정보정책과 윤리		
	기타 주제		
도서관실무실습		도서관실습	●

6.1.1.2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분석

■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안)

- 사서직급의 재구분(안)을 기반으로 현재 2급 정사서인 전문직 사서의 최초 직급인 3급 사서(안)의 자격 취득을 그 대상으로 함
- 최초 직급의 사서 자격취득 이후에는 상위 직급에서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직급 이동이 가능함. 만약 현행과 같은 2개 직급을 유지하더라도 최초 직급인 2급 정사서의 자격 취득에 아래 모형(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제1안은 사서자격 취득을 위해 현행 학점을 유지하는 방안, 제2안은 학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제3안은 대학원으로 교육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림 15)와 같이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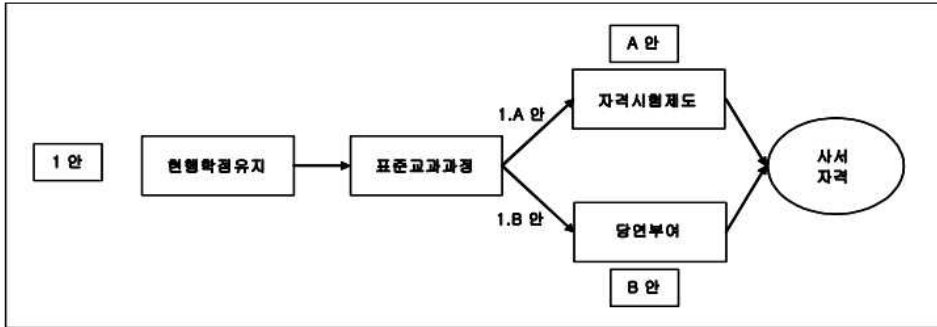
(그림 15)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모형(안)

1) 현행 학점 유지 모형 (제1안)

■ 현행 학점을 유지하는 방안

-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골격을 가급적 유지하는 체제로 현재 학부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최소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 경우 현재 문제점들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소학점을 취득하더라도 반드시 표준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도서관 현장실습을 하도록 명시해야 함
- 제1안을 채택할 경우 (그림 16)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1.A안: 자격시험제도를 채택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사서자격을 발급
- 1.B안: 현행 제도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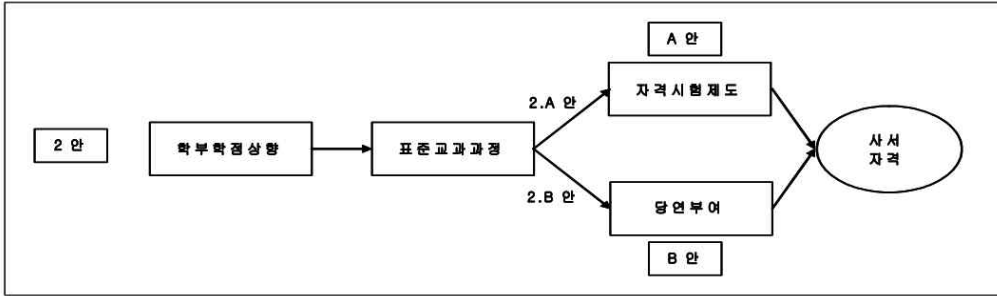
(그림 16) 현행 학점 유지 모형 (제1안)

- 제1안의 단점은 기본 이수 최소학점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가장 문제점인 사서교육원과 같은 지정교육기관의 개입을 제한할 수 없어 여러 경로로 양산되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표준 교과과정을 채택하더라도 1.B안과 같이 최소학점 이수 후 어떠한 평가의 단계 없이 당연히 자격증을 부여하는 체제에도 기존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게 됨

2) 학부 학점 상향 조정 모형 (제2안)

■ 학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을 적어도 60 ~ 70 학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표준교과과정의 필수과목 이수율과 도서관 현장실습을 의무화하는 것임
- 제2안을 채택할 경우 다음 (그림 17)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2.A안: 자격시험제도를 채택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사서자격을 발급
 - 2.B안: 현행 제도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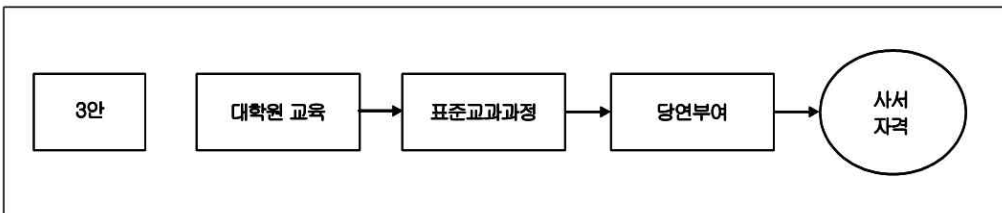
(그림 17) 학부 학점 상향 조정 모형(제2안)

- 제2안의 장점은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서 자격 소지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서자격 소지자의 과도한 배출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제2.B안은 현행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서의 능력 및 자질을 강화하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음

3) (전문)대학원 기반 모형

■ 대학원으로 교육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의 수준을 (그림 18)과 같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안임
- 제3안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이 대학원 수준의 교육 이수자에게 바로 사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서자격 지원자들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교육이 점차 대학원 수준을 지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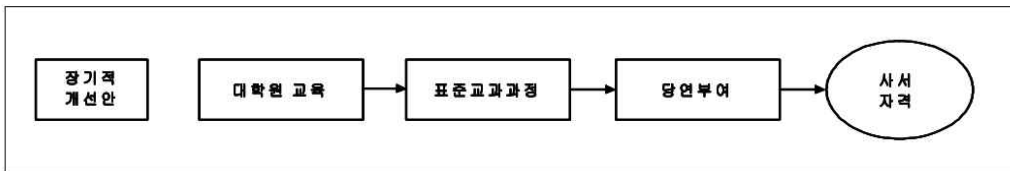
(그림 18) (전문)대학원 기반 모형 (제3안)

- 제3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의 설정과 채택이며 이의 장점은 사서 혹은 정보전문가로서의 기본 교육수준을 대학원으로 심화한다는 데 있음
- 제3안의 단점은 사서의 사회적 위상, 정규직 고용, 연봉 등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이 미흡한 것임

4) 사서자격제도 종합 개선안

■ 장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 장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은 (그림 19)와 같이 대학원을 기반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사서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i) 문헌정보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ii) 현행과 같은 일반대학원의 문헌정보학 전공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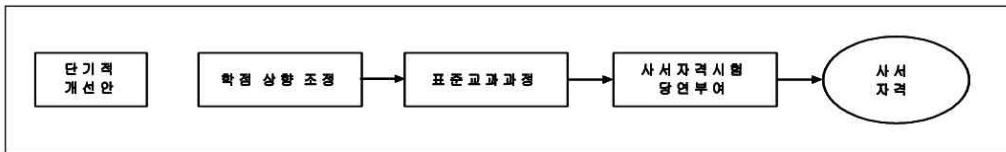


(그림 19) 장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 현실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수준의 전문대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일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과정에서 문헌정보학 전공을 인증하고 인증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개편과 심화과정의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한 표준교과과정의 채택 및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증이라는 “품질제어(Quality Control)”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음
- 인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서자격 조건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적인 개혁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함
- 미국 ALA와 같은 인증 주체에 인증을 신청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국내에서 취득한 사서자격으로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도 발생함

■ 단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 현행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기반으로 제2.A안(사서자격시험 부과)과 제2.B안(당연 부여)을 결합한 병합모형임
- 이 모형은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가 최종적으로 (전문)대학원을 기반으로 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임
- 사서자격을 재구분하여 일차적으로 사서직과 사서보조직으로 직종을 구분하고, 전문직으로서 사서는 3개 직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는 최초의 전문직 등급인 3급 사서에서 2급 전문사서, 1급 선임사서로 승급할 수 있는 자격체계 하에서 3급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임
- 3급 사서는 일정 기간의 도서관 실무경력을 취득하고 적정한 주제 혹은 직무 전문성을 달성한 후 상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단기적 개선 모형은 우선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을 60~70학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표준교과과정의 필수과목 이수 및 도서관 현장실습을 포함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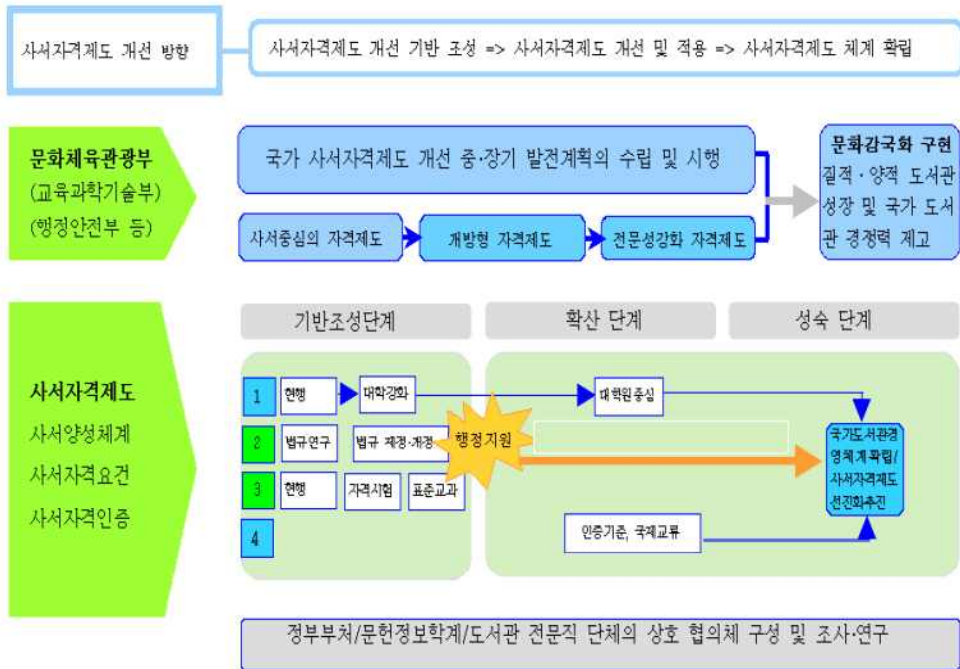


(그림 20) 단기적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

- 단기 개선 모형은 (그림 20)과 같이 현행 제도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전문)대학원 모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준비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을 것임

■ 사서자격제도 개선 체계 확립 방향

-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향은 (그림 21)과 같이 사서자격제도 개선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한 후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의 선진화된 사서자격제도 및 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함



(그림 21) 사서자격제도 개선 체계 확립 방향

-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하여 질적·양적인 도서관의 성장과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단기적으로 현재 도서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서의 학력 및 경력 중심의 자격제도를 인증제도를 통해 보완하면서 사서직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함
-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정부부처, 문헌정보학계 도서관 전문직 단체 등과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반조성단계, 확산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6.1.2 사서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다양한 교육주체(대학 및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육원, 평생교육원)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 적용과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으로 나누어 검토한 후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6.1.2.1 사서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 표준 교육과정 적용

□ 최소 이수학점제의 경우:

- 대학 문헌정보학과는 학부제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전공은 60학점, 복수전공은 36학점으로 통일하고, 사서교육원(대학 타전공자)은 48학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사서자격증 발급업무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소 이수학점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부에 통보하여 전체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리해야 함

□ 필수과목 지정의 경우:

- 모든 교육주체에 적용되는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6과목(도서관경영론, 장서관리론, 자료조직론, 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사서실무실습)으로 설정하고 과목명을 통일하여 모든 교육주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제안함

□ 표준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요체로서의 표준 교과목 개선안:

- 대다수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를 반영한 기초과목(지식정보사회론, 문헌정보학개론, 기록매체변용사, 도서관철학사,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독서교육론), 필수과목(도서관경영론, 장서관리론, 자료조직론, 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사서실무실습), 선택과목(도서관정책론 외 30과목)으로 구별하여 제안하였음. 다만 표준 교과목 설정과 적용은 교육주체(대학 및 교수) 및 이해당사자(학생과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교육과정 인증제

- 인증대상은 모든 교육주체를 대상으로 한 사서자격증 즉,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인증기준은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수준별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함

□ 인증제 적용

- 인증의 취지와 목적, 인증평가의 대상, 규정과 절차, 평가기준과 편람, 인증평가원 설립의 목적·조직·기능 등의 개발 (ALA 인증기준 참조)
-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교수(강사)의 자격, 시설기준, 재정, 교과과정, 교육성과, 인증비율 등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 인증기관, 평가·검증의 방법과 과정 등의 체계화
- 자격증별 인증으로 할 것인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분한 주제별(인문, 사회, 과학, 법학, 의학 등), 이용자별(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업무영역별(수서, 목록, 마케팅 등)로 인증 이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함

6.1.2.2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안

■ 국내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 교육과정 표준화(최소 이수학점제, 필수과목 지정, 표준 교과목화)를 전제로 국가시험제 시행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다만, 현행 자격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서자격제도 개선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과정 인증제를 사서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차순위 대안으로 추천함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

- 표준 교과목 개발, 「도서관법」 개정과 시행근거 확보,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 개정, 국가시험 필기과목 결정, 국가시험제 적용 모형, 국가시험 합격자 우대장치 마련, 국가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험관리, 기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특례 조치, 사서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및 인정기준 개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에 제시한 여러 전제조건과 더불어 관련된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① 표준 교과목 개발

- 현재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가 문헌정보학 교과목 모형을 제안하였음에도 국가차원의 표준모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학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가칭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교육주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목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다음 <표 78>과 같이 제안함

〈표 78〉 문헌정보학의 표준 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본모형

표준 교과목 구성			최소 이수학점 기준
기초과목(6)	필수과목(6)	선택과목(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론 ▪ 문헌정보학개론 ▪ 기록매체변용사 ▪ 도서관철학사 ▪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 독서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경영론 ▪ 장서관리론 ▪ 자료조직론 ▪ 정보서비스론 ▪ 정보검색론 ▪ 사서실무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책론 ▪ 도서관건축론 ▪ 공공도서관경영 ▪ 대학도서관경영 ▪ 학교도서관경영 ▪ 전문특수도서관경영 ▪ 분류목록실습 ▪ 메타데이터이해 ▪ 연속간행물관리 ▪ 전자자료관리 ▪ 고전자료이해 ▪ 데이터베이스구축 ▪ 도서관정보시스템관리 ▪ 정보이용행태론 ▪ 이용자교육론 ▪ 아동서비스론 ▪ 취약계층서비스론 ▪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론 ▪ 도서관마케팅론 ▪ 도서관법제론 ▪ 도서관문화프로그램 ▪ 도서관가치평가론 ▪ 도서관협력론 ▪ 서지학개론 ▪ 기록관리학이해 ▪ 디지털 아카이빙 ▪ 도서관과 정보기술 ▪ 도서관법제와 저작권 ▪ 문헌정보학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일전공: 60학점 ② 복수전공: 36학점 ▪ 사서교육원: 48학점 ▪ 평생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 타전공자: 48학점 ② 전문대 졸업자: 60학점

- 모든 교육주체에 적용할 공통교과목과 교육주체별 특수성을 감안한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사서자격증(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으로 구분해야 함
- 「도서관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과목’으로 명시하여 법적 강제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표준 교과목 및 교과 내용은 직업적 전문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터넷 및 정보 기술환경, 지식정보 이용행태 등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보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② 「도서관법」 개정과 시행근거 확보

-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서관법」 개정안을 <표 79>와 같이 제안함

<표 79>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한 「도서관법」의 근거조항 추가모형

구분	조항	신설 내용
도서관법	제7조 (사서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요건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1급 사서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8조 (국가시험)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국가시험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급 사서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 등)	<p>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p>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수수료의 반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p> <p>④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p> <p>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제6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p>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③ 시험관리기관의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도서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③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 개정

- 국가시험제가 「도서관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3에 규정된 사서의 등급을 개정해야 함
- 이를 위한 개정안은 <표 80>과 같이 1~3급(1급은 전문사서, 2급은 정사서, 3급은 준사서를 의미함)으로 개정하고 각각의 자격요건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제안함

〈표 80〉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
개정모형

등급	자격요건
1급 사서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마. 3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바. 3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3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급 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를 전공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서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 필기과목 결정

- 국가시험제 시행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시험(필기)과목을 추가해야 하며, 사서의 등급 및 자격요건, 시험과목 등은 학계뿐만 아니라 이해당

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합의 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험제 시행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시험(필기)과목으로 아래 <표 81>과 같이 제안함

<표 81> 국가시험제 시행을 위한 「도서관법시행령」의 시험(필기)과목 모형

영역	과목	비고
문헌정보학 기초	지식정보사회론,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철학과 역사	3
도서관실무와 적용	도서관경영론,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 정보서비스론, 도서관평가론	5
도서관정책과 제도	도서관정책론, 도서관법제론	2

⑤ 국가시험제 적용 모형

- 국가시험제 적용 모형은 모든 교육주체의 교육과정에 최소 이수학점제와 필수과목 지정을 포함한 표준 교과목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받을 경우, 준사서 및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합격할 경우 1급 사서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표 82>와 같이 제안함

⑥ 국가시험 합격자 우대장치 마련

- 국가시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1급 사서자격증에 대한 아래 <표 83>과 같이 현실적인 우대장치가 필요함

〈표 82〉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적용모형

교육주체	졸업시 자격증	국가시험		비고
		응시기준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문헌정보학전공(복수전공 포함) ▪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박사과정(일반, 교육) ▪ 사서교육원(2급 정사서 과정) ▪ 평생교육원 문헌정보학사 과정 ▪ 외국 대학 및 대학원의 문헌정보학 이수자 	2급 사서	-	1급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자격증은 1-3급으로 구분 ▪ 2급 과정에 표준 교과목 적용 ▪ 현행 1급 정사서 등급 및 자격요건 삭제 ▪ 사서교육원 1급 과정 폐지 ▪ 1급 사서자격증 후 전문자격증(주제별, 대상별)은 교육부(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교육기관 지정 및 한국도서관협회 교육과정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 대학 문헌정보학과 부전공 ▪ 사서교육원(준사서 과정) 	3급 사서	-	-	

〈표 83〉 국가시험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모형

구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현행	개정안
6·7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 1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사서 1급	5%	지급 대상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 군무원을 포함한다)	8)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 군무원을 포함한다)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사서 2급	3%			
8·9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서 1급	5%	지급액 및 지급 방법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나) 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월 50,000원 이하 나) 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월 30,000원 이하 다) 3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월 20,000원 이하
	사회복지사 3급, 사서 2급	3%			

- ⑦ 국가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험관리
- 가칭 ‘사서국가시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근거조항 마련, 사서 등급 및 자격요건의 개정,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의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의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제 적용 등을 협의해야 함
 - 국가시험의 주관기관,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내용, 시험관리, 합격기준과 비율 등 세부기준도 마련해야 함
- ⑧ 기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특례 조치
- 국가시험제의 적용대상을 1급 사서로 설정할 경우, 기존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소급적용 및 외국 경력자의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조치가 필요함
- ⑨ 사서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및 인정기준 개발
- 국내 사서자격제도의 공신력과 권위 확보, 사서의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사서직의 전문성 및 사회적 인식도 제고를 위해 사서자격증의 유효기간(3~5년)을 설정하여 갱신하도록 강제하고 일정 회수의 갱신과정을 거쳐야 상위 자격증 취득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모형을 요약하면 <표 84>와 같음

〈표 84〉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모형 요약

구분	주요 내용
표준 교과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추진 ▪ 가칭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개발위원회’ 구성 및 표준 교과목 개발 ▪ 표준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교육주체별 특수성을 감안한 선택과목으로 양분하고 사서자격증별(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 ▪ 표준 교과목의 고시화(「도서관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과목’으로 공포) ▪ 표준 교과목의 주기적인 개정(3년 또는 5년 단위)
국가시험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에 국가시험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서관법시행령」에 국가시험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시험제도 운영, 시행기간,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신설,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의 개정(1-3급 사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격요건 재정비), 사서자격증 갱신(재인증)
국가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및 시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사서자격국가시험관리위원회(학계,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 정부부처, 일반인 등을 포함)의 구성 ▪ 위원회의 성격은 정부가 주도하는 실행기구로 규정 ▪ 국가시험 적용대상(모든 자격증, 2급 또는 1급)의 검토와 결정 ▪ 국가시험 출제관리와 관련된 세부 내용(주관기관, 출제위원 위촉, 출제기준과 내용, 출제과목과 출제비율, 문제유형, 문항수, 난이도 등) 결정 ▪ 국가시험 시행관리와 관련된 세부기준(응시원서와 제출서류, 응시자격과 특례자, 시험시간, 시행일, 채점, 합격기준과 비율 등) 마련
국가시험 합격자 우대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국가시험 합격자의 우대장치(가산점, 사서수당 등) 마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에 사서자격증 가산비율 추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특수직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지급대상을 ‘사서직공무원’에서 ‘도서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바꾸고 지급액을 ‘기본급 + 자격증별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차등 적용
기존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소급인정 및 해외 경력자의 특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사서자격증에 국가시험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1-2급 자격증 소지자 인정, 1급 사서자격증에 국가시험제를 적용할 경우,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을 면제하되, 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1급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치 ▪ 해외 자격자 및 경력자의 인증조건 및 절차 제시
자격증 갱신제 및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3년 혹은 5년 주기로 재인증) ▪ 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갱신횟수 설정(2-3회) ▪ 재인증을 위한 교육연수, 연구논문 등 인정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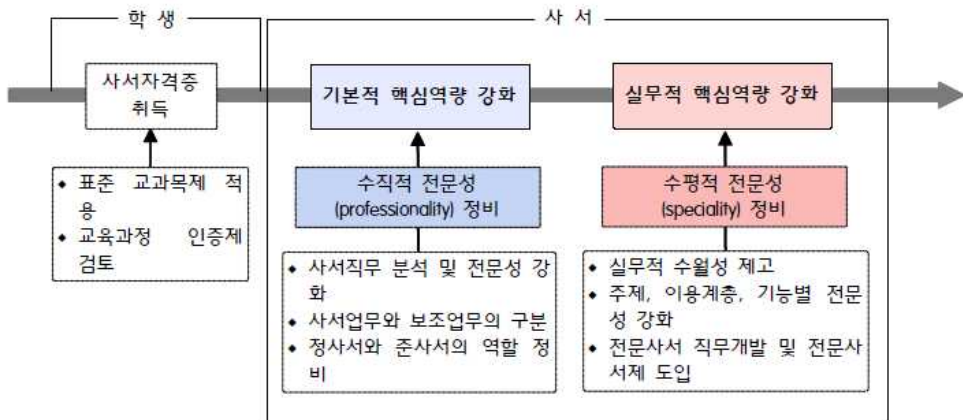
6.1.2.3 사서직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 사회적 전문직업으로서 사서의 기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지식과 기술을 제고하고, 직업적 수월성으로서 관중별 사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요구되는 주제 및 기능적 지식과 기술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서의 양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미래 도서관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관중별 직무의 전문성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핵심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함
- 이를 위한 전제조건, 기본적 및 실무적 핵심역량 강화, 직무별 전문 재교육 트랙 운영, 교육과정의 인증제 실시, 사서자격증의 전향적 개정 및 차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함

① 사서 핵심역량 강화의 전제조건

- 사서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형을 요약하면 (그림 22) 와 같음



(그림 22) 사서의 전문성 및 핵심역량 강화 모형

-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서 양성기관 가운데 주류인 대학 및 전문대학 문헌정보학 교육에 반드시 표준 교과목제를 도입하고 추가로 교육과정 인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발급하는

자격증 중에서 1급 사서자격증에는 국가시험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기본적 및 실무적 핵심역량 강화

-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을 공인받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도서관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중요성, 난이도, 전문성을 평가하여 전문직 업무와 비전문직(보조직) 업무, 사서직 업무와 비사서직 업무, 정사서 업무와 준사서의 역할을 구분하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업무 분장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직적(준사서 → 2급 정사서 → 1급 정사서) 전문성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표 85>와 같이 제한함

<표 85> 사서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사서 인증제’ 모형

구분	학생(교육과정 이수자)			현직자(사서)
	3급 사서 (준사서)	2급 사서 (정사서)	1급 사서 (정사서)	전문사서
취득조건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의 ‘3. 준사서 자격요건’ 해당자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의 ‘2.2급 정사서 자격요건’ 해당자	국가시험 합격자	인증기관(협회 등)의 인증 인증(교육연수, 석박사학위 취득, 조사연구 발표, 직무경력 등)에 부합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핵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적 핵심역량
핵심역량의 성격과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교과목제 적용 ▪ 추후 교과과정 인증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전문사서(법학, 의학 등) ▪ 서비스 전문사서(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공공, 대학, 특수 등) ▪ 전문사서 인증제 도입
전문성의 성격	기본적 전문성(professionality)			실무적 전문성(speciality)
자격증 실효성 강화	사서자격 갱신제도(3-5년 주기) 도입			재인증제(5년 주기) 적용

③ 직무별 전문 재교육트랙 운영

-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과정을 ‘준사서, 정사서, 전문사서’ 등

으로 세분·확장하여 직무별 전문 재교육트랙을 설정하고, 현행 ‘사서교육 문화과’를 전문교육훈련기관인 가칭 ‘국립사서교육원’으로 격상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서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트랙 모형으로 관종별 전문역량강화 트랙, 주제별 역량강화 트랙, 기능별 역량강화 트랙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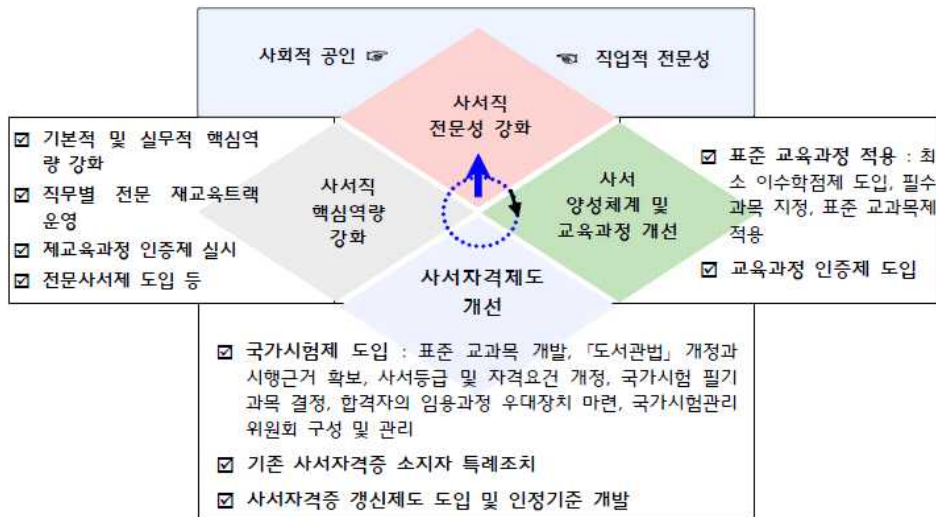
④ 재교육과정의 인증제 실시

- 현직자 재교육과정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ALA의 문헌정보학교육 평가 및 인증제를 벤치마킹하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기적인 재교육과정을 전제로 교육연수와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영국 CILIP의 재교육과정 인증제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⑤ 사서자격증의 전향적 개정 및 차등화

- 현행 사서자격증 명칭인 ‘준사서, 2급 정사서, 1급 정사서’를 ‘3급 사서(준사서), 2-1급 사서(정사서)’로 전면 개정하고, 2-3급 사서자격증의 경우는 양성기관별 교육과정, 교육내용, 강의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표준 교과목제(교육과정 인증제)를 적용하여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1급 사서자격증에는 국가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록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2-3급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1급 사서자격증에 국가시험제 및 가산점제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자격증별 인식적 가치를 차등화하되, 모든 사서가 궁극적으로 전문사서를 지향할 때 사서직의 사회적 및 실무적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서자격증의 대외적 명분을 공표하고 공인받는데 유리함

■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아래 (그림 23)과 같이 요약함



(그림 23)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 개선모형

6.2 기존 개선방안의 한계 분석

- 지금까지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와 문헌정보학 표준교과목 개선 및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기존의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 연구에서는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른 사서자격을 '사서보, 3급 사서, 2급 전문사서, 1급 선임사서'로 재구분하고 각각의 자격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사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득 학점의 상향 조정하고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과정의 설정을 제안하였음
- 또한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으로 현행 학점을 유지하는 방안, 학부 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대학원으로 교육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음
 - 사서자격제도 개선 모형은 자격시험제도를 채택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사서 자격을 발급하거나 현행 제도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자격시험제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 사서자격시험의 부과 등과 같은 사서자격요건의 변경이나 대학의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목 인증의 경우에도 역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사서자격인증 문제는 사서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실무경력 및 표준교과과정 인증 등을 포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서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최소 이수학점제 도입, 필수과목 지정, 표준 교과목제 적용 등의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을 위해 「도서관법」 개정과 시행근거 확보, 사서등급 및 자격요건 개정, 국가시험 필기과목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우대장치 마련, 국가시험관리위원회 구성, 기존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특례 조치, 사서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등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할 여러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관법과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러 연구에서 국가자격시험제와 인증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기관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임

■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이론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으로의 개선방안과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선행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사서직 수행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함

- 사서직 핵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제고할 직무별 전문 재교육 트랙 운영과 재교육과정 인증제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이를 관리·감독할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기구 및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및 사서교육원 등의 1~2년의 단기교육과정에 의한 사서자격증 발급 남발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 현장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 및 사서자격제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

탕으로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국가 자격제도로서의 공신력 및 전문성이 강화된 사서자격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제 7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구조

7.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배경

7.2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7.3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 7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구조

7.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 배경

7.1.1 현행 사서자격 관련 제도의 문제

■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고찰

- 현재의 사서자격제도는 사서직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던 1960년대에 사서직의 양적 충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의 골격을 계속 유지
 - 대학 및 지정교육기관 등 사서직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체제가 정립된 현 시점에서 사서직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을 정립하기 위한 개선된 제도 마련이 필요
- 진화하는 지식정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사서의 양적 충원을 위해 시작되었던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사서교육원 등의 제도가 지식정보사회가 정착된 현재의 도서관 환경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는 사서 양성 기관이 운영되고, 정규교육기관 대신 단기간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의 증가로 인해 사서직의 전문성이 아닌 사서자격증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이 발생
 - 이로 인해 민간업체,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재정적인 목적으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비전문적인 기관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사서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교육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가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양성하는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 이에 1990년대 이후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기존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측면까지도 반영이 필요
- 사서자격 등급의 개정, 교육과정 인증제, 국가자격시험제 도입 등은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
 - 하지만 이들 개선안들은 단기간에 실행되기가 어려우며, 정책이나 법률의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
- 단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개선안 마련으로는 실제 제도의 개선이나 현장적용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정책결정자들의 참여가 필수
- 2019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문헌정보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특별전담반’을 설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회 전반에 걸친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서자격 종류의 개선 방안

- 사서자격 등급 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안
- 현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의 명칭을 각각 1급 사서, 2급 사서, 3급 사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또한 제안되었으나, 이는 단기간에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

■ 사서자격증 갱신 제도 도입 방안

- 현재 사서자격증은 한 번 발급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진화하는 정보환경 및 도서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사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을 하는 방안이 제안
 - 사서자격증의 유효기간을 3년이나 5년 등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각 기관별 의견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 사서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경우, 기간이 만료된 사서에 대한 대응, 사서자격증의 재인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
- 이와 유사하게, 사서자격증 갱신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으나, 이는 규정의 변경, 법령의 정비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

7.1.2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안의 범위

-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현재의 제도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
 - 사서자격 종류의 개선이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및 교육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
 - 사서자격 종류는 현행 제도와 같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을 유지하고, 각 등급별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지금까지 제안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들 각각의 논의가 지닌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재의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환경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이나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방안은 다수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
 -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2021년 1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는 문헌정보 관련 표준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 신설을 위한 설문조사를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전공 필수 교과목, 전공 선택 교과목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
 - 이를 기반으로,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표준교과목(안)을 제안
 -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기반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

■ 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서자격제도 및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과정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서자격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개선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두 가지 측면으로 마련하여 제안
- 이들 두 가지 측면을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교육적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제안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 등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

7.2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7.2.1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개선

■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 사서자격을 취득하는 기준을 문헌정보(학) 학위와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강화
- 기존의 제도에서는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 학위를 받은 경우는 이수한 교과목에 상관 없이 1급, 2급, 준사서자격증의 취득이 가능
- 이는 도서관 혹은 사서직과 무관한 교과목만을 수강한 상태로 사서자격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위와 최소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 제안



(그림 24)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 사서자격요건의 기본 구조 개선

- 현재 사서자격제도의 기본 틀은 각 대학의 학과 단위 및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단위로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을 운영하고, 문헌정보학과 전공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 이수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 이는 다양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에 대한 명확하고 엄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서 인력이 양적으로만 양산되는 문제를 초래
- 또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원들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 또한 12과목 수준의 최소이수학점만으로 운영되어 사서의 전문성이 아닌 경제적·재정적 논리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운영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7.2.2 최소이수학점 개선

■ 최소이수학점제 적용의 단순화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이한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상황
- 각 기관별 운영 방식이 다르고, 교육의 수준과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대학의 문헌정보학 졸업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
-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사서자격증 발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
- 이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 이수학점을 기존 48학점

에서 60학점으로 상향 조정

- 이에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별 유형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이수학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
- 기존에는 각 기관별 교육과정에 따라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
-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등급별로 공통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는 방안이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행 최소 이수학점

- 현행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0호, 2018. 9. 1. 일부개정)에서는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3]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이나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지정교육기관에서 1급 정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전문대학에서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0학점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정교육기관에서는 30학점의 이수만으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준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님
- 전문대학에서 평균 40학점을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비해, 4년제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통해 최소 40학점을 통해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는 준사서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하지만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학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위에 따

른 사서자격 취득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을 부여하는 법률 및 제도, 규정이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이수학점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제안

〈표 86〉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선안

구분	대상자격증		전공 관련 최소이수 학점 기준	
			현행	개선안
대학	2급 정사서		단일전공: 평균 64.03 복수전공: 평균 40.48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60
	준사서		-	단일전공: 48 복수전공: 48
전문대학	준사서		평균 39.25	48
지정교육기관	1급 정사서		30	48
	2급 정사서		30	
	준사서		30	
평생교육원	2급 정사서	대학 타전공	48	60
		전문대 타전공	60	60
		전문대 문헌정보학 전공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 최소 이수학점 개선안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60학점으로 강화
- 기존에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 요건을 기관별 적용이 아닌 개인별 적용으로 변경하여,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60학점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
- 문헌정보학 단일 전공과 복수전공에서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에 소 복수전공을 통한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의 최소 이수학점이 낮게 적용되어 대학에서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남발되는 경향을 방지
- 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사서자격 취득을 하는 경우

- 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강화
- 최소이수학점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개선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학(전문대)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자격증 부여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지정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의 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

7.3 교육과정 개선 방안

7.3.1 기관별 교육과정 방향

- 현행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0호에서는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3]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을 다음 <표 87> 과 같이 고시

〈표 87〉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저작권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독서지도론(I) 저작권론(I)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 비교: ① 필수과목 중 (I)은 기초과정, (II)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의 명확한 목표 혹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교육과정의 구성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불분명
- 또한 선택과목의 경우 대학 혹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양성하는 사서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확보가 아닌 학점 이수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존재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표준교과목 적용 및 문

헌정보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운영이 필요

7.3.2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 강화

■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 지정

-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교과 내용이나 수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사서 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사서자격증 등급별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별로 동일한 수준과 질을 확보한 교육과정의 운영 기반을 마련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기반으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
-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도서관법」에 반영하여 모든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으로 구분

■ 필수 교과목 지정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으로 선정
- 설문조사 결과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 선정
- 설문조사 원안 이외에 3.5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인 교과목 중 서지학, 기록관리학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에 추가로 지정 (<표 88> 참조)

〈표 88〉 필수 교과목(안)

원안(12과목)		설문조사	최종(12과목) (대체/유사과목포함)
문헌정보일반	문헌정보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	도서관문화사
	사서실습	-	사서실습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대체
정보조직학	정보조직론	-	정보조직론
	정보조직실습	-	정보조직실습
정보조사제공학	정보서비스론	-	정보서비스론
	정보이용자론	-	정보이용자론 - 정보활용교육론은 유사교과목으로 포함
	독서교육론	-	독서교육론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장서개발론	-	장서개발론
	도서관경영론	-	도서관경영론
정보학	정보검색론	-	정보검색론
	정보기술론	-	정보기술론
서지학	-	서지학	
	-	-	
기록학	-	기록관리학	
	-	-	

■ 선택 교과목

- 원안 교과목 가운데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에서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상위 5순위(동순위는 6개)까지를 선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대한 개편

<표 89> 선택 교과목(안)

구분		최종(31과목)
문헌정보일반	2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조직학	5	메타데이터의 이해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 조직론 자동화목록실습 정보자원론 LOD 및 오픈엑세스
정보조사제공학	5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인터넷자원활용 정보리터러시 정보커뮤니케이션론 학술정보활용법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4	관종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정보학	10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디지털콘텐츠론 빅데이터분석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처리 및 분석론 정보학의 이해 도서관과 인터넷 기술 이용자 인터페이스론 데이터 큐레이션
서지학	1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	4	기록관리학 디지털아카이빙 전자기록관리론 공공기록물관리론

7.3.3 사서실습 교과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강화

- 사서실습을 표준교과목의 필수 이수과목으로 설정하여,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현장적용성을 확보
- 사서실습은 정규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에서 4주(160시간) 실습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
- 사서교사의 경우 학교현장 실습 수업을 수강하고, 4주간(160시간)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한 경우에만 교사자격증을 발급
 -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공도서관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할 경험에 있는 경우,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 현장실습을 면제

〈표 90〉 사서실습 과목 개설 기준(안)

<p>가. 사서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p> <p>나. 실습단위 당 학생 배치 인원은 지도사(사서) 1명 당 5명 이내로 할 것</p> <p>다. 사서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사(사서)가 1명 이상 상근할 것 <p>라. 도서관 사서실습 과목의 담당교수는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 학과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할 것</p> <p>마.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의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 이상)>으로 <도서관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서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 취소, 도서관 사서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 교원의 자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사서실습 과목은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전임교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사서실습 진행 기간 중 현장실습 과목 담당 교원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강제화

■ 사서실습 기관 확보 지원

- 각 대학에서는 사서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직면
- 이에 도서관 기관 평가에서 사서실습 지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7.3.4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강화

■ 정보조직실습 과목 조건 강화

- 도서관 업무 및 사서직 관련 지식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정보조직실습 과목의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보조직실습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분류 및 도서관 목록의 실습으로 구성되며,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도서관 분류 및 목록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분류표(한국십진분류표 혹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를 구비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목록규칙(한국목록규칙 혹은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를 구비
 - 웹 버전의 분류표 혹은 목록규칙의 경우는 수강학생 전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
- 자료조직 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자료조직 실습 과목은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전임교원에 의해 진행

제 8 장

현장 의견 수렴

8.1 설문조사 구성 및 분석 방법

8.2 응답자 배경 정보

8.3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응답 분석

8.4 교육과정 개선 부문 응답 분석

제 8 장 현장 의견 수렴

8.1 설문조사 구성 및 분석 방법

8.1.1 설문조사 대상

-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기간: 2021년 10월 6일 ~ 11월 1일
 - 설문 방식: 서베이몽키(www.surveymonkey.com)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 설문 대상
 - 대학(교) 문헌정보(도서관)학과의 전임(비전임) 교수· 강사 전체 및 재학생 전체
 - 사서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의 전임(비전임) 교수· 강사 전체 및 재학생 전체
 - 부처· 시도 도서관 정책 담당자 및 관중별 도서관 사서 중 전체 대상 기관의 50% 이상

8.1.2 설문조사 항목 구성

- 설문조사 항목은 제안한 단일 개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안한 개선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항목으로 구성
 - 설문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설문대상자의 신분, 소속기관, 업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설문항목으로 구성
 - 전체적인 설문 항목은 현행 사서자격제도와 사서 양성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

Part I	응답자 기본 정보
Part II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사서 자격 구분 방식 사서자격증 발급 방식
Part III	기관별, 등급별 전공 최소 이수학점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교과목 사서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

(그림 25) 설문항목 구성의 기본 카테고리

8.1.3 설문 결과 분석의 범위

■ 설문 결과 분석의 범위

- 설문 응답이 완료된 3,266건에 대한 분석
- 설문 응답자의 배경 정보에 대한 빈도 분석을 비롯하여, 응답자 신분 유형별 주요 응답 결과 분포를 비교·분석
- 특히 응답자 신분을 학계와 도서관 현장으로 구분하여 분석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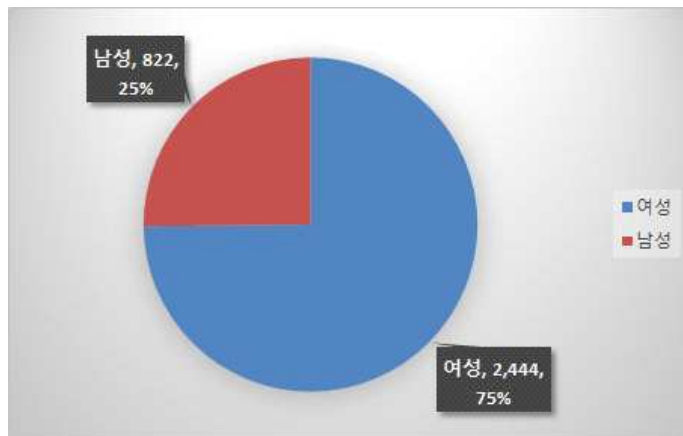
8.2 응답자 배경 정보

8.2.1 응답자 성별 분포 (N=3,266)

- 응답자 성별은 여성 74.8%(N=2,444), 남성 25.2%(N=822)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91> 응답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여성	2,444	74.8
남성	822	25.2
전체	3,2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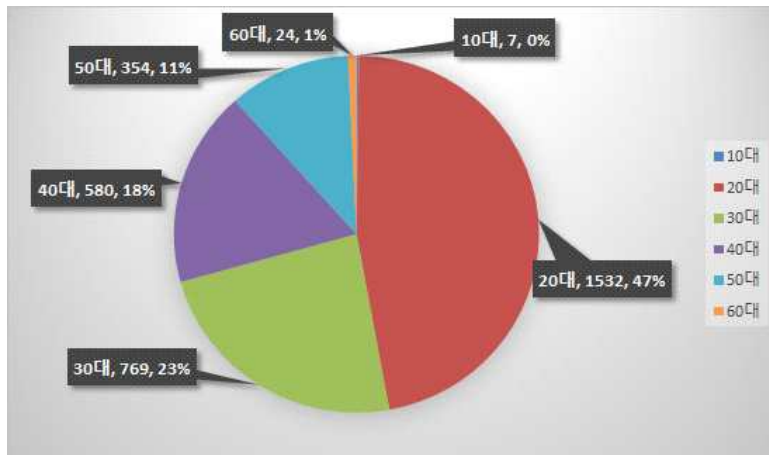
(그림 26) 응답자 성별 분포

8.2.2 응답자 연령 분포 (N=3,266)

-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46.9%(N=1,53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3.5%(N=769), 40대 17.8%(N=580), 50대 10.8%(N=3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10대와 60대 이상의 참여 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92> 응답자 연령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10대	7	0.2
20대	1,532	46.9
30대	769	23.5
40대	580	17.8
50대	354	10.8
60대 이상	24	0.7
전체	3,2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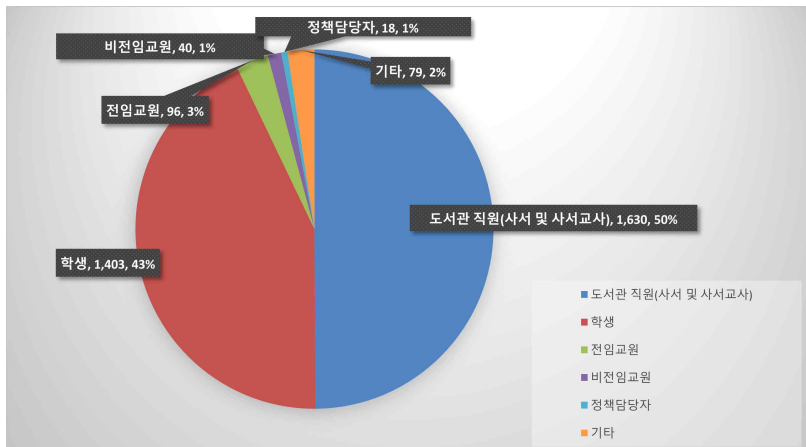
(그림 27) 응답자 연령 분포

8.2.3 응답자 신분 분포 (N=3,266)

- 응답자의 신분은 현장의 도서관 사서직(사서 또는 사서교사)이 49.9%(N=1,6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43%(N=1,403)로 나타남
- 정책담당자들의 응답 비율(0.6%, N=18)은 상당히 낮게 나타남

〈표 93〉 응답자 신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학생	1,403	43.0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1,630	49.9
전임교원	96	2.9
비전임교원	40	1.2
정책담당자	18	0.6
기타	79	2.4
전체	3,266	100



(그림 28) 응답자 신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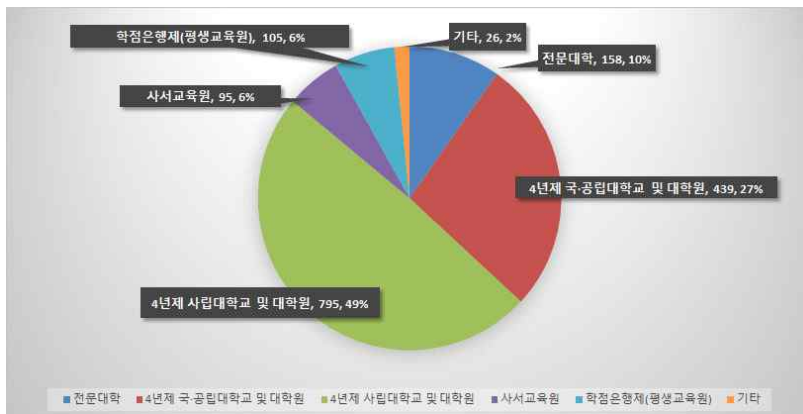
8.2.4 응답자 소속 분포 (N=1,618)

■ 응답자 신분이 학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기타인 경우

- 교육기관에 소속된 응답자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소속 인원이 높은 비율(49.1%)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소속 인원(27.1%)으로 나타남

<표 94> 응답자 소속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전문대학	158	9.8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439	27.1
4년제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795	49.1
사서교육원	95	5.9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105	6.5
기타	26	1.6
전체	1,618	100



(그림 29) 응답자 소속 분포

- 응답자 신분(학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기타인 경우)에 따른 소속 분포
 - 학생 집단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소속이 가장 많은 비율(44.0%)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소속(24.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면, 전문대학 소속 학생의 비율은 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95〉 응답자 신분별 소속 분포

소속 \ 신분		학생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	기타	전체
전문대학	빈도	130	12	5	11	158
	비율	8.0%	0.7%	0.3%	0.7%	9.8%
4년제 국공립대 및 대학원	빈도	397	27	3	12	439
	비율	24.5%	1.7%	0.2%	0.7%	27.1%
4년제 사립대 및 대학원	빈도	712	56	15	12	795
	비율	44.0%	3.5%	0.9%	0.7%	49.1%
사서교육원	빈도	72	0	13	10	95
	비율	4.4%	0.0%	0.8%	0.6%	5.9%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빈도	90	0	3	12	105
	비율	5.6%	0.0%	0.2%	0.7%	6.5%
기타	빈도	2	1	1	22	26
	비율	0.1%	0.1%	0.1%	1.4%	1.6%
전체	빈도	1,403	96	40	79	1,618
	비율	86.7%	5.9%	2.5%	4.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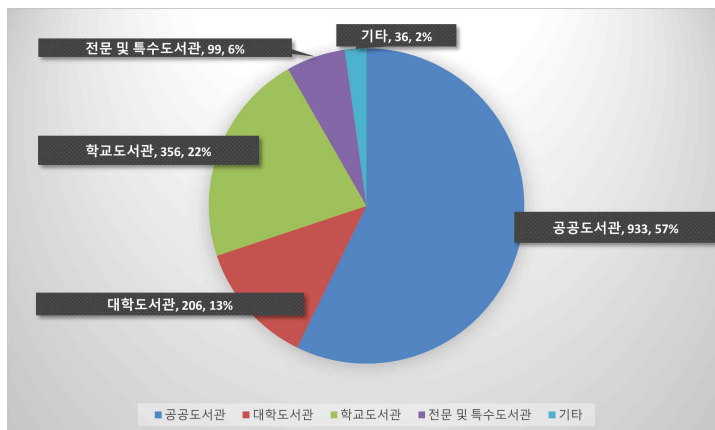
8.2.5 응답자 소속 도서관 유형 (N=1,630)

■ 응답자 신분이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인 경우

- 현장 사서직의 경우, 공공도서관 소속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7.2%, 933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소속 응답자가 21.8%(356명)로 나타남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소속 응답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남

〈표 96〉 응답자 소속 도서관 유형

구분	빈도	비율
공공도서관	933	57.2
대학도서관	206	12.6
학교도서관	356	21.8
전문 및 특수도서관	99	6.1
기타	36	2.2
전체	1,630	100



(그림 30) 응답자 소속 도서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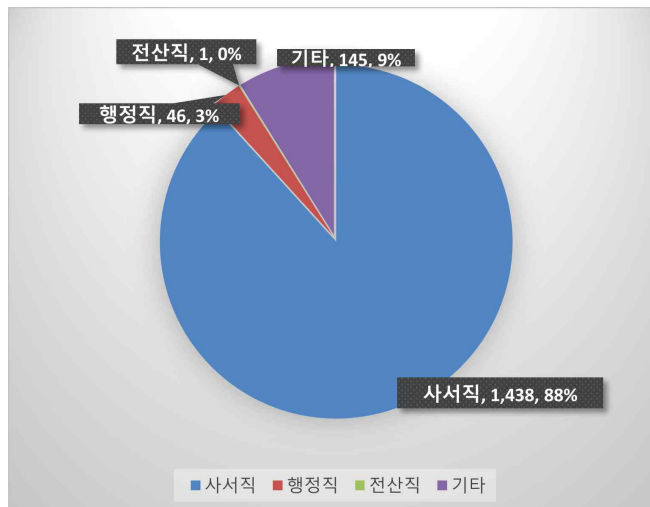
8.2.6 응답자 직렬 분포 (N=1,630)

■ 응답자 신분이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 도서관 현장 직원의 경우, 사서직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88.2%, N=1,4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7> 응답자 직렬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사서직	1,438	88.2
행정직	46	2.8
전산직	1	0.1
기타	145	8.9
전체	1,630	100



(그림 31) 응답자 직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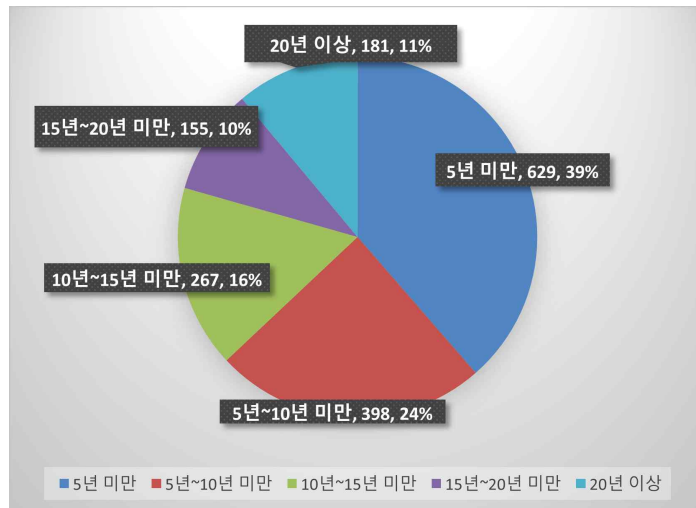
8.2.7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N=1,630)

■ 응답자 신분이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 현장 도서관 직원의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의 경우가 38.6%(N=6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24.4%, N=398), 10년~15년 미만(16.4%, N=267)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신규 또는 중경력 도서관 직원이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표 98>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5년 미만	629	38.6
5년~10년 미만	398	24.4
10년~15년 미만	267	16.4
15년~20년 미만	155	9.5
20년 이상	181	11.1
전체	1,6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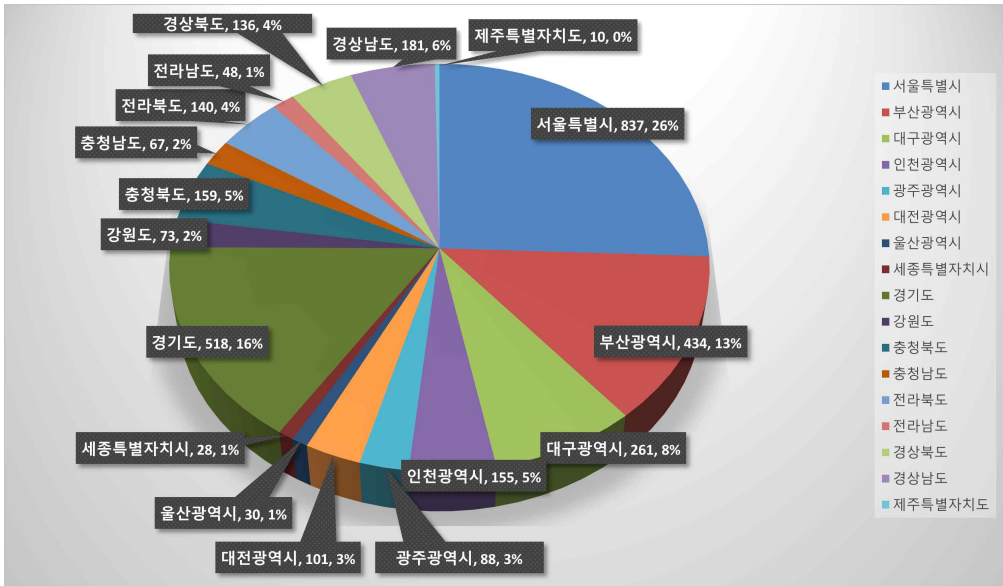
(그림 32) 응답자 도서관 근무경력 분포

8.2.8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N=3,266)

- 설문 응답자의 소속기관 지역별 분포는 서울(25.6%, N=837), 경기도(15.9%, N=51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라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5.8%, N=188)을 보이고 있음
-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등의 지역에서의 응답자 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지역 내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99〉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서울특별시	837	25.6
부산광역시	434	13.3
대구광역시	261	8.0
인천광역시	155	4.7
광주광역시	88	2.7
대전광역시	101	3.1
울산광역시	30	0.9
세종특별자치시	28	0.9
경기도	518	15.9
강원도	73	2.2
충청북도	159	4.9
충청남도	67	2.1
전라북도	140	4.3
전라남도	48	1.5
경상북도	136	4.2
경상남도	181	5.5
제주특별자치도	10	0.3
전체	3,26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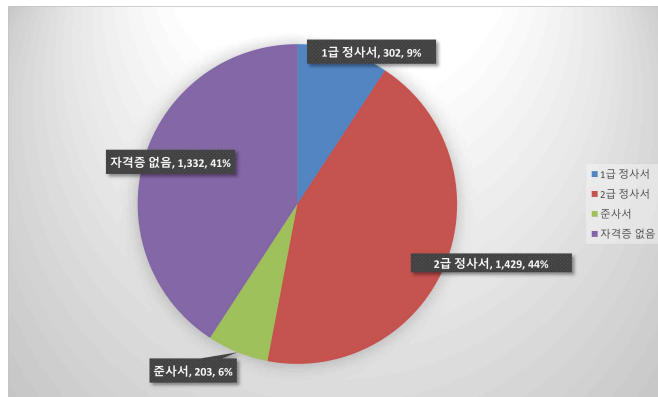
(그림 33) 응답자 소속기관 지역 분포

8.2.9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N=3,266)

- 설문 응답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서자격증의 종류는 2급 정사서 자격증이 가장 높은 비율(43.8%, N=1,429)을 보이고 있으며, 자격증 미소지자의 비율(40.8%, N=1,332)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격증 미소지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설문 응답자 가운데 학생과 정책결정자들의 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100>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구분	빈도	비율 (%)
1급 정사서	302	9.2
2급 정사서	1,429	43.8
준사서	203	6.2
자격증 없음	1,332	40.8
전체	3,266	100



(그림 34) 응답자 소지 사서자격증 종류 분포

8.3 응답자 신분별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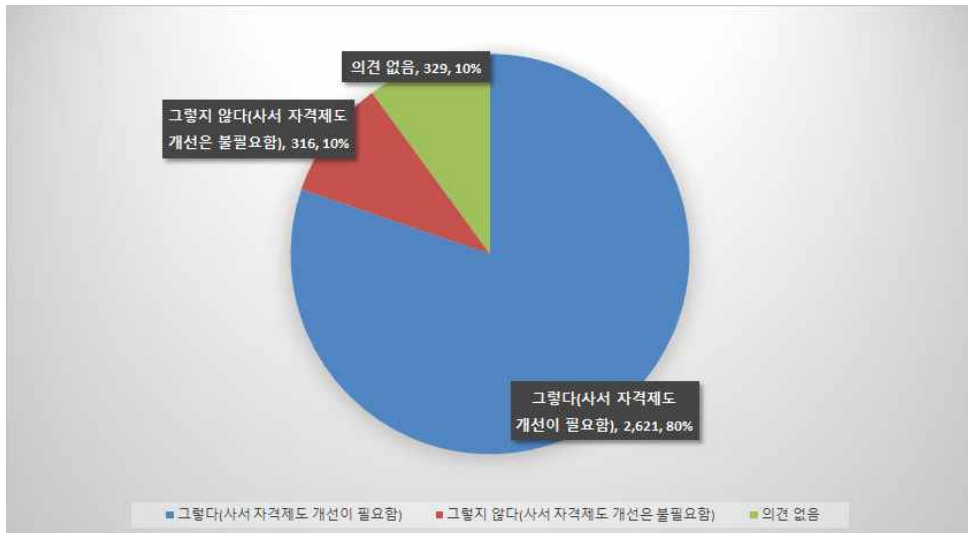
■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에 대해 응답자 신분별 즉, 학생,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정책담당자, 기타에 따른 응답을 분석하였음

8.3.1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N=3,266)

■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80.3%, N=2,621)이 전체 설문 대상자에 걸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현장의 도서관 사서직 종사자(88.3%, N=1,438) 및 대학의 전임교원(93.8%, N=90) 집단에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집단에서는 설문 응답자 전체가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반면 학생 집단은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4.8%(N=2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견이 없는 비율도 16.0%(N=225)에 이르고 있음



(그림 35)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표 101〉 사서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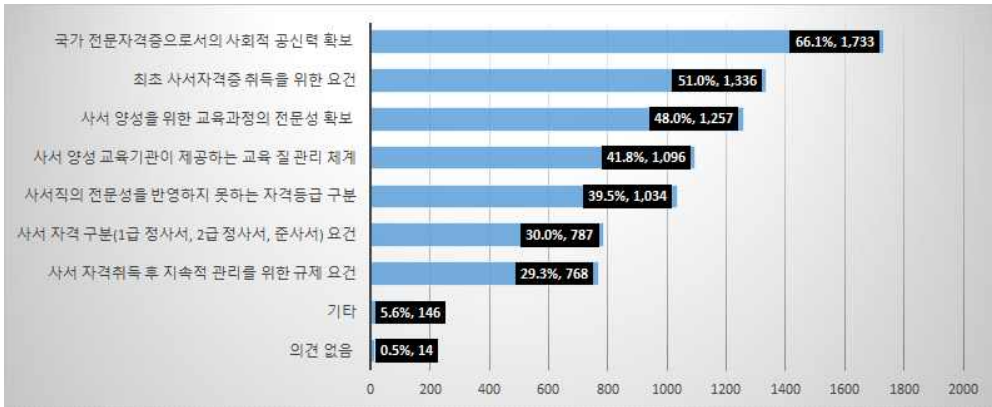
신분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971	207	225
비율		69.2%	14.8%	16.0%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439	97	94	1,630
	비율	88.3%	6.0%	5.8%	100%
전임교원	빈도	90	4	2	96
	비율	93.8%	4.2%	2.1%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40	0	0	40
	비율	100.0%	0.0%	0.0%	100%
정책담당자	빈도	16	1	1	18
	비율	88.9%	5.6%	5.6%	100%
기타	빈도	65	7	7	79
	비율	82.3%	8.9%	8.9%	100%
전체	빈도	2,621	316	329	3,266
	비율	80.3%	9.7%	10.1%	100%

8.3.2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N=2,621) (복수선택)

■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621명의 응답 분석

■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의 개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66.1%, N=1,733)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과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서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며,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6)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표 102>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빈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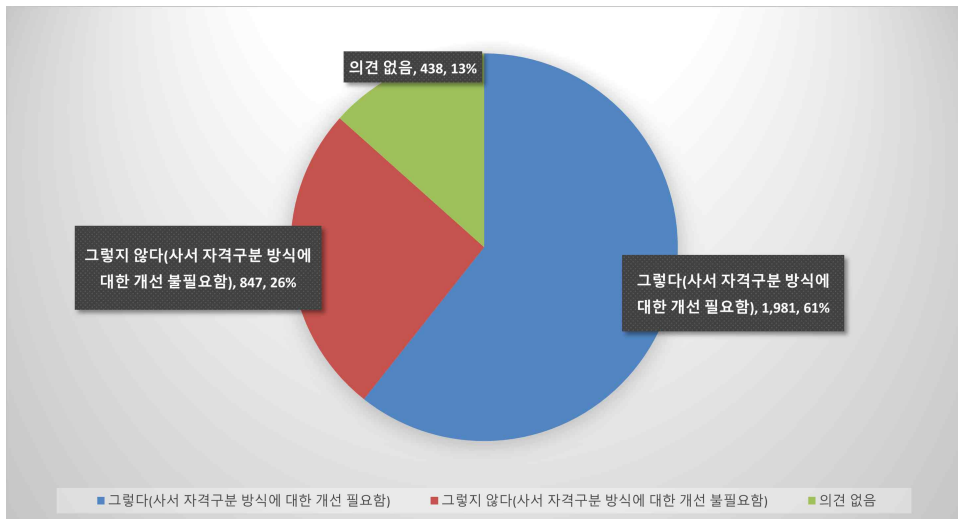
항목	빈도	비율 (%)
1.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1,336	51.0
2. 사서 자격 구분(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요건	787	30.0
3. 사서직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등급 구분	1,034	39.5
4. 사서 자격취득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규제 요건	768	29.3
5.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질 관리 체계	1,096	41.8
6.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1,257	48.0
7.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	1,733	66.1
8. 의견 없음	14	0.5
9. 기타	146	5.6

〈표 103〉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신분별)

신분	항목	1	2	3	4	5	6	7
		학생	빈도	436	304	383	235	380
	비율	32.6%	38.6%	37.0%	30.6%	34.7%	40.3%	35.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773	408	562	431	604	639	985
	비율	57.9%	51.8%	54.4%	56.1%	55.1%	50.8%	56.8%
전임교원	빈도	59	43	39	47	58	58	60
	비율	4.4%	5.5%	3.8%	6.1%	5.3%	4.6%	3.5%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26	14	21	16	13	13	26
	비율	1.9%	1.8%	2.0%	2.1%	1.2%	1.0%	1.5%
정책담당자	빈도	6	3	6	10	8	8	14
	비율	0.4%	0.4%	0.6%	1.3%	0.7%	0.6%	0.8%
기타	빈도	36	15	23	29	33	32	42
	비율	2.7%	1.9%	2.2%	3.8%	3.0%	2.5%	2.4%
전체	빈도	1,336	787	1,034	768	1,096	1,257	1,733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3.3 현행 사서자격의 구분 방식(1·2급 정사서, 준사서) 개선 필요성 (N=3,266)

- 현행 3단계의 사서자격 구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60.7%, N=1,98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책담당자의 72.2%(N=13)가 사서자격 구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전임교원·강사의 70%(N=2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사서자격 구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5.9%, N=847)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임교원 집단에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32.3%(N=3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학생 집단에서도 ‘개선 불필요’ 의견이 27.1%(N=380)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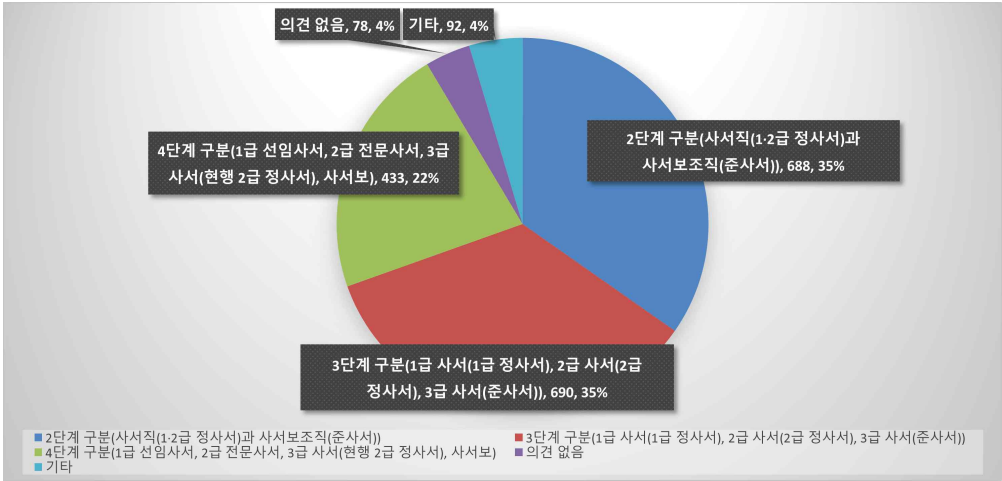
(그림 37) 현행 사서자격제도 구분 방식 필요성

〈표 104〉 현행 사서자격제도 구분 방식

신분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754	380	269
비율		53.7%	27.1%	19.2%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073	410	147	1,630
	비율	65.8%	25.2%	9.0%	100%
전임교원	빈도	59	31	6	96
	비율	61.5%	32.3%	6.3%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28	9	3	40
	비율	70.0%	22.5%	7.5%	100%
정책담당자	빈도	13	3	2	18
	비율	72.2%	16.7%	11.1%	100%
기타	빈도	54	14	11	79
	비율	68.4%	17.7%	13.9%	100%
전체	빈도	1,981	847	438	3,266
	비율	60.7%	25.9%	13.4%	100%

8.3.4 사서자격에 대한 적절한 재구분 방식 (N=1,981)

- 사서자격 구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N=1,981), 이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 집단별로 2단계 구분 혹은 3단계 구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단계 구분과 3단계 구분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 비율은 각각 34.7%, 34.8%로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음
 - 응답자 신분에 따른 분석 결과, 2단계 구분은 학생 집단에서 선호되었으며, 3단계 구분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정책담당자 집단에서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8) 사서자격 재구분 방식

〈표 105〉 사서자격 재구분 방식

신분	항목	2단계 구분	3단계 구분	4단계 구분	의견 없음	기타	전체
		학생	빈도	279	250	175	28
	비율	37.0%	33.2%	23.2%	3.7%	2.9%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371	372	226	46	58	1,073
	비율	34.6%	34.7%	21.1%	4.3%	5.4%	100%
전임교원	빈도	12	28	15	2	2	59
	비율	20.3%	47.5%	25.4%	3.4%	3.4%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10	14	3	0	1	28
	비율	35.7%	50.0%	10.7%	0.0%	3.6%	100%
정책담당자	빈도	3	6	2	0	2	13
	비율	23.1%	46.2%	15.4%	0.0%	15.4%	100%
기타	빈도	13	20	12	2	7	54
	비율	24.1%	37.0%	22.2%	3.7%	13.0%	100%
전체	빈도	688	690	433	78	92	1,981
	비율	34.7%	34.8%	21.9%	3.9%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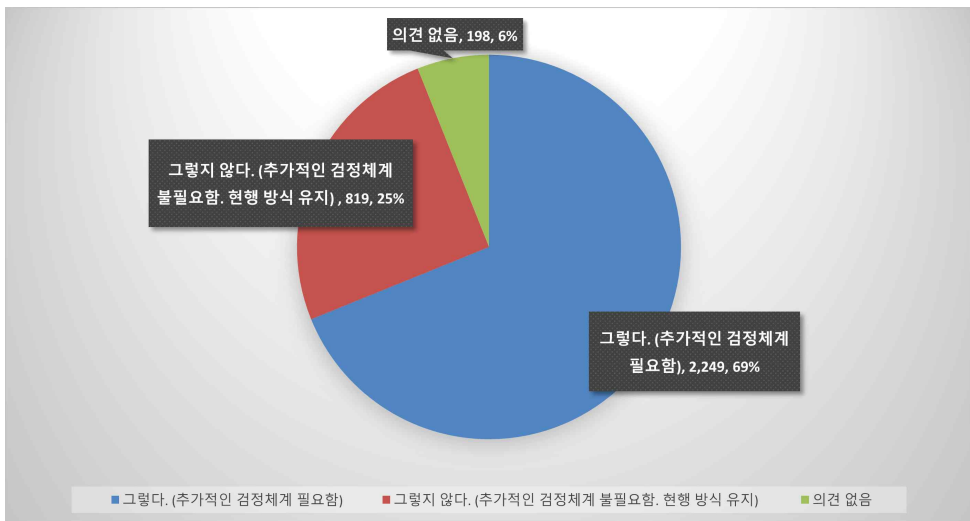
2단계 구분 예시: 사서직(1·2급 정사서)과 사서보조직(준사서)

3단계 구분 예시: 1급 사서(1급 정사서), 2급 사서(2급 정사서), 3급 사서(준사서)

4단계 구분 예시: 1급 선임사서, 2급 전문사서, 3급 사서(현행 2급 정사서), 사서보

8.3.5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N=3,266)

-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검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8.9%(N=2,249)로 높게 나타났음
 - 도서관 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집단에서는 약 80% 이상이 추가적인 검정체계의 필요성을 응답함
 - 반면 학생 집단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검정체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35.9%, N=50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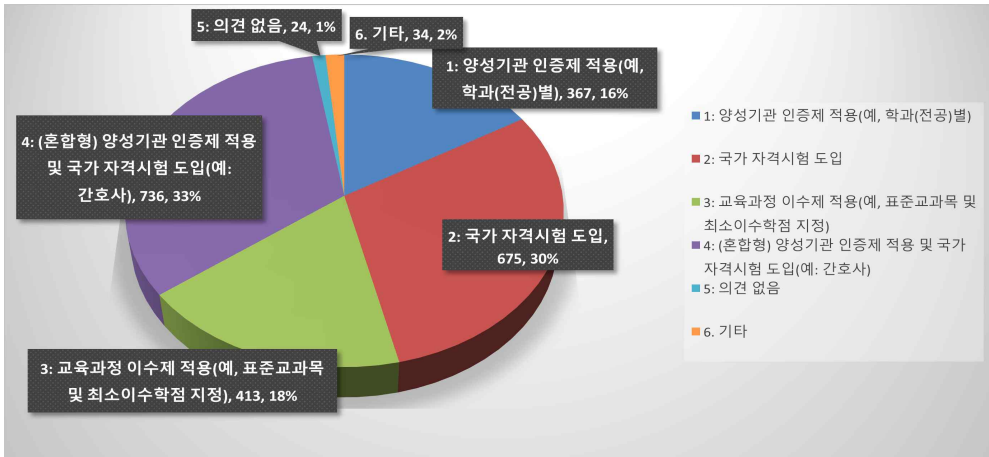
(그림 39)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표 106〉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성

신분	항목	필요함	불필요함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763	503	137
비율		54.4%	35.9%	9.8%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311	264	55	1,630
	비율	80.4%	16.2%	3.4%	100%
전임교원	빈도	78	16	2	96
	비율	81.3%	16.7%	2.1%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33	7	0	40
	비율	82.5%	17.5%	0.0%	100%
정책담당자	빈도	15	2	1	18
	비율	83.3%	11.1%	5.6%	100%
기타	빈도	49	27	3	79
	비율	62.0%	34.2%	3.8%	100%
전체	빈도	2,249	819	198	3,266
	비율	68.9%	25.1%	6.1%	100%

8.3.6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적절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N=2,249)

- 최초 사서자격제도 취득에 추가적인 검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2,249명의 응답 분석
- 사서자격 취득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과 관련해서, ‘(혼합형)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 및 국가 자격시험 도입’ (32.7%, N=736), ‘국가 자격시험 도입’ (30%, N=675)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서관 직원 집단에서는 ‘(혼합형)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 및 국가 자격시험 도입’ 과 ‘국가 자격시험 도입’ 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제 적용’ 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 비전임교원·강사 및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혼합형)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 및 국가 자격시험 도입’ 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임



(그림 40)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표 107〉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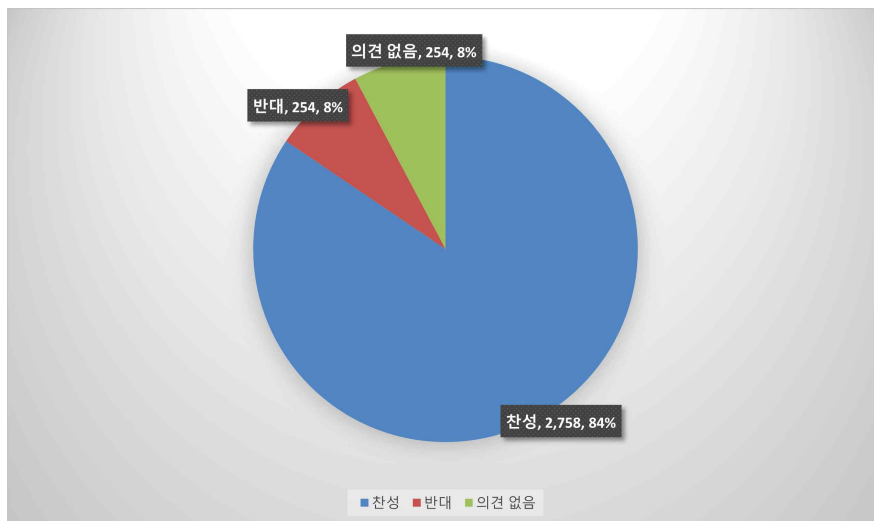
신분	항목	1	2	3	4	5	6	전체
	학생	빈도	163	180	214	189	13	4
비율		21.4%	23.6%	28.0%	24.8%	1.7%	0.5%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83	445	161	491	9	22	1,311
	비율	14.0%	33.9%	12.3%	37.5%	0.7%	1.7%	100%
전임교원	빈도	12	17	26	19	1	3	78
	비율	15.4%	21.8%	33.3%	24.4%	1.3%	3.8%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6	9	4	13	0	1	33
	비율	18.2%	27.3%	12.1%	39.4%	0.0%	3.0%	100%
정책담당자	빈도	1	4	1	8	1	0	15
	비율	6.7%	26.7%	6.7%	53.3%	6.7%	0.0%	100%
기타	빈도	2	20	7	16	0	4	49
	비율	4.1%	40.8%	14.3%	32.7%	0.0%	8.2%	100%
전체	빈도	367	675	413	736	24	34	2,249
	비율	16.3%	30.0%	18.4%	32.7%	1.1%	1.5%	100%

- 1: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예, 학과(전공)별)
- 2: 국가 자격시험 도입
- 3: 교육과정 이수제 적용(예,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 4: (혼합형)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 및 국가 자격시험 도입(예: 간호사)
- 5: 의견 없음
- 6: 기타

8.4 응답자 신분별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부문 응답 분석

8.4.1 ‘표준교과목과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에 대한 의견 (N=3,266)

-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서의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사서 및 사서교사 등 도서관 직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90.1%)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학생(10.3%) 및 전임교원(15.6%) 집단에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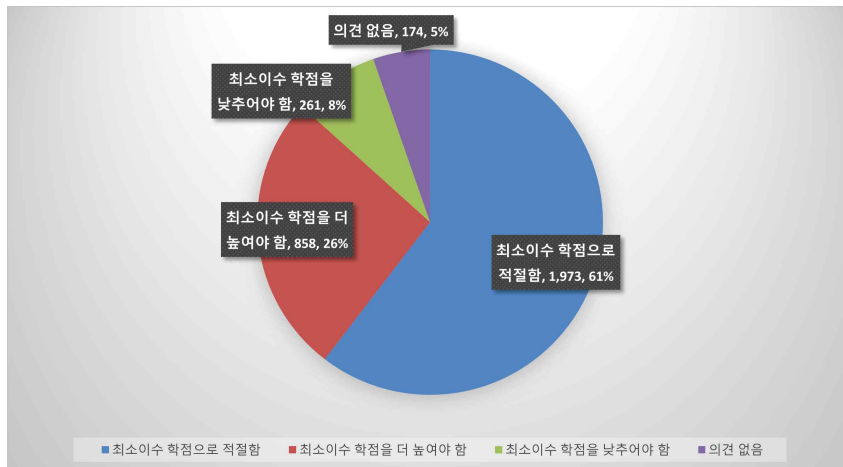
(그림 41)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

〈표 108〉 표준교과목 및 회소이수학점 지정 도입

신분	항목	찬성	반대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097	145	161	1,403
	비율	78.2%	10.3%	11.5%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468	85	77	1,630
	비율	90.1%	5.2%	4.7%	100%
전임교원	빈도	79	15	2	96
	비율	82.3%	15.6%	2.1%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35	3	2	40
	비율	87.5%	7.5%	5.0%	100%
정책담당자	빈도	16	0	2	18
	비율	88.9%	0.0%	11.1%	100%
기타	빈도	63	6	10	79
	비율	79.7%	7.6%	12.7%	100%
전체	빈도	2,758	254	254	3,266
	비율	84.4%	7.8%	7.8%	100%

8.4.2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요건 중 자격증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60학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60.4%, N=1,973)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학생, 도서관 직원, 비전임교원·강사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소이수학점으로 60학점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도서관 직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60학점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60학점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그림 42)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표 109〉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신분	항목	적절함	높여야 함	낮추어야 함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896	241	159	107
비율		63.9%	17.2%	11.3%	7.6%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948	558	65	59	1,630
	비율	58.2%	34.2%	4.0%	3.6%	100%
전임교원	빈도	44	25	25	2	96
	비율	45.8%	26.0%	26.0%	2.1%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26	9	4	1	40
	비율	65.0%	22.5%	10.0%	2.5%	100%
정책담당자	빈도	10	6	0	2	18
	비율	55.6%	33.3%	0.0%	11.1%	100%
기타	빈도	49	19	8	3	79
	비율	62.0%	24.1%	10.1%	3.8%	100%
전체	빈도	1,973	858	261	174	3,266
	비율	60.4%	26.3%	8.0%	5.3%	100%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60학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자(N=858) 의견을 살펴본 결과, ‘72학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2%로 가장 많았음
- 특히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집단에서 적정 학점으로 ‘72학점’에 대한 의견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0〉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상향 의견

신분	학점	63학점	66학점	69학점	72학점	기타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8	52	43	115	6	7
	비율	2.1%	6.1%	5.0%	13.4%	0.7%	0.8%	28.1%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39	109	113	273	15	9	558
	비율	4.5%	12.7%	13.2%	31.8%	1.7%	1.0%	65.0%
전임교원	빈도	3	6	3	13	0	0	25
	비율	0.3%	0.7%	0.3%	1.5%	0.0%	0.0%	2.9%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1	1	1	5	1	0	9
	비율	0.1%	0.1%	0.1%	0.6%	0.1%	0.0%	1.0%
정책담당자	빈도	0	1	0	5	0	0	6
	비율	0.0%	0.1%	0.0%	0.6%	0.0%	0.0%	0.7%
기타	빈도	1	2	5	11	0	0	19
	비율	0.1%	0.2%	0.6%	1.3%	0.0%	0.0%	2.2%
전체	빈도	62	171	165	422	22	16	858
	비율	7.2%	19.9%	19.2%	49.2%	2.6%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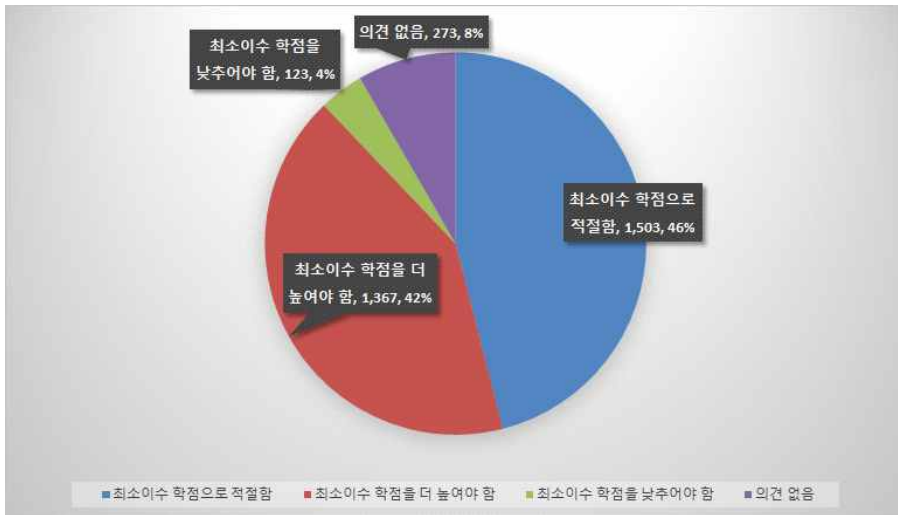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60학점’)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자 의견(N=261)을 살펴본 결과, ‘48학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음
- 특히 학생 집단에서 적정 학점으로 ‘48학점’에 대한 의견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1〉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하향 의견

신분	학점	57학점	54학점	51학점	48학점	기타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0	40	34	55	9	11
	비율	3.8%	15.3%	13.0%	21.1%	3.4%	4.2%	60.9%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2	14	18	24	5	2	65
	비율	0.8%	5.4%	6.9%	9.2%	1.9%	0.8%	24.9%
전임교원	빈도	2	3	7	6	7	0	25
	비율	0.8%	1.1%	2.7%	2.3%	2.7%	0.0%	9.6%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0	1	1	2	0	0	4
	비율	0.0%	0.4%	0.4%	0.8%	0.0%	0.0%	1.5%
기타	빈도	0	2	0	3	2	1	8
	비율	0.0%	0.8%	0.0%	1.1%	0.8%	0.4%	3.1%
전체	빈도	14	60	60	90	23	14	261
	비율	5.4%	23.0%	23.0%	34.5%	8.8%	5.4%	100%

8.4.3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48학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 (46.0%, N=1,503)과 좀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41.9%, N=1,367)이 비슷하게 나타남
 - 2급 정사서 자격증의 경우에는 60학점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였으나 준사서 자격증의 경우에는 48학점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급 정사서 자격증과 준사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최소이수학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구성원의 비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그림 43)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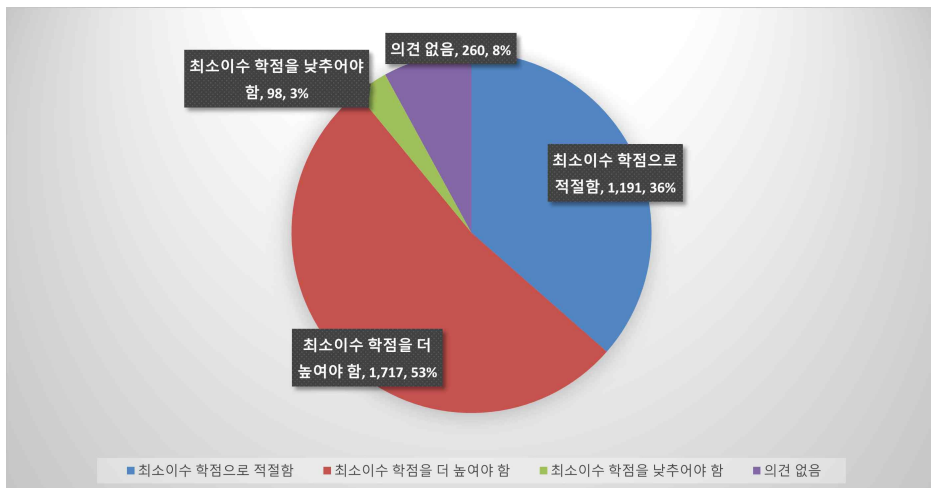
〈표 112〉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신분	항목	적절함	높여야 함	낮추어야 함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711	466	65	161
비율		50.7%	33.2%	4.6%	11.5%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670	826	36	98	1,630
	비율	41.1%	50.7%	2.2%	6.0%	100%
전임교원	빈도	50	29	12	5	96
	비율	52.1%	30.2%	12.5%	5.2%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23	12	2	3	40
	비율	57.5%	30.0%	5.0%	7.5%	100%
정책담당자	빈도	11	5	0	2	18
	비율	61.1%	27.8%	0.0%	11.1%	100%
기타	빈도	38	29	8	4	79
	비율	48.1%	36.7%	10.1%	5.1%	100%
전체	빈도	1,503	1,367	123	273	3,266
	비율	46.0%	41.9%	3.8%	8.4%	100%

8.4.4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관련 교과목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 지정교육기관의 사서자격증(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취득을 위한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 48학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36.5%, N=1,191)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52.6%, N=1,717)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도서관 직원의 60% 이상,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정책담당자의 50% 이상이 최소이수학점을 48학점에서 높일 필요가 있음을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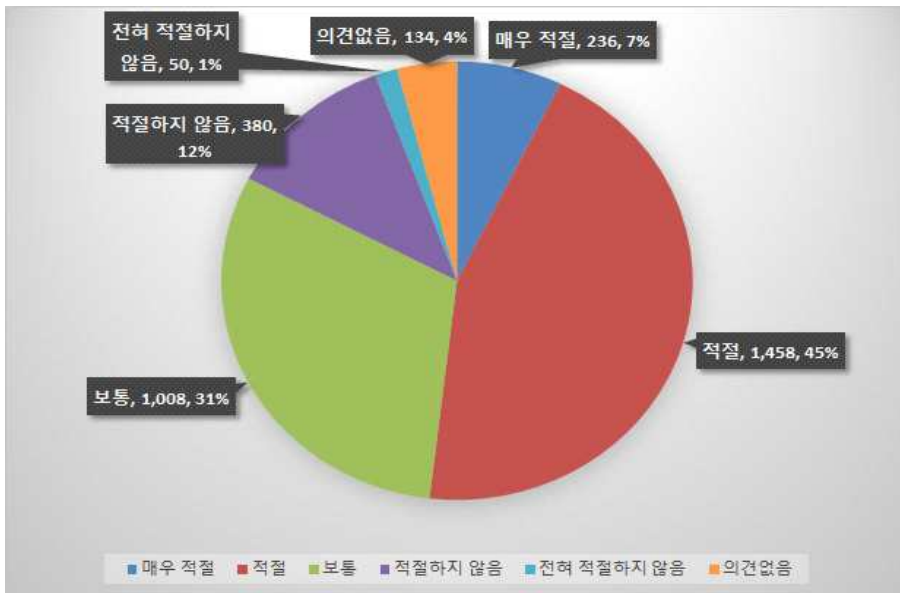
(그림 44)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표 113〉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 적절성

신분	항목	적절함	높여야 함	낮추어야 함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591	594	55	163
비율		42.1%	42.3%	3.9%	11.6%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518	1,000	30	82	1,630
	비율	31.8%	61.3%	1.8%	5.0%	100%
전임교원	빈도	30	54	6	6	96
	비율	31.3%	56.3%	6.3%	6.3%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16	21	2	1	40
	비율	40.0%	52.5%	5.0%	2.5%	100%
정책담당자	빈도	6	10	0	2	18
	비율	33.3%	55.6%	0.0%	11.1%	100%
기타	빈도	30	38	5	6	79
	비율	38.0%	48.1%	6.3%	7.6%	100%
전체	빈도	1,191	1,717	98	260	3,266
	비율	36.5%	52.6%	3.0%	8.0%	100%

8.4.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 교과목 ‘12과목(36학점)’ 구성의 적절성

- 표준교육과정의 자격증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절(‘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5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절(‘적절하지 않음’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하다는 의견은 13.1%로 나타났음
- 모든 집단에서 적절(‘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적절하지 않음’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하다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특히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2.3%, 3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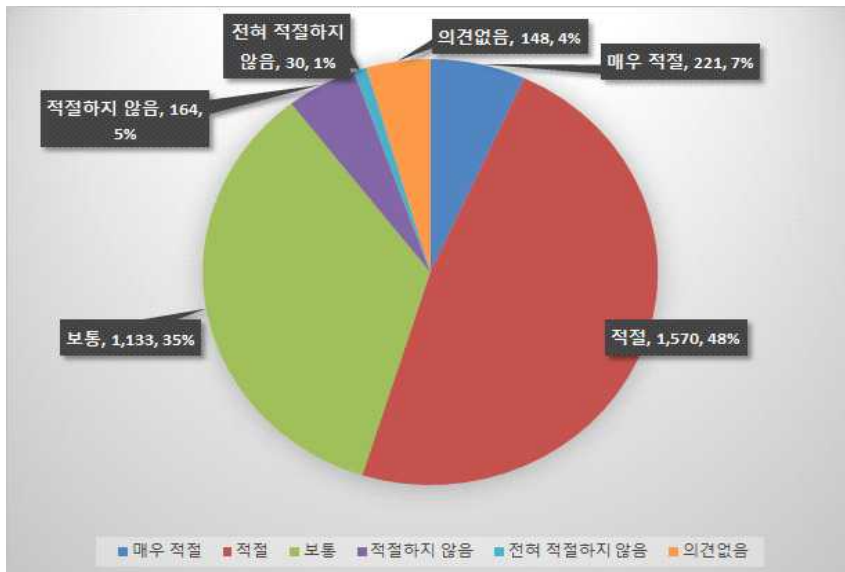
(그림 4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교과목 12과목 구성의 적절성

〈표 114〉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필수교과목 12과목 구성의 적절성

신분 \ 항목		매우 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10	706	400	109	9	69	1,403
	비율	7.8%	50.3%	28.5%	7.8%	0.6%	4.9%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03	665	544	225	30	63	1,630
	비율	6.3%	40.8%	33.4%	13.8%	1.8%	3.9%	100%
전임교원	빈도	13	31	21	23	8	0	96
	비율	13.5%	32.3%	21.9%	24.0%	8.3%	0.0%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3	17	14	5	1	0	40
	비율	7.5%	42.5%	35.0%	12.5%	2.5%	0.0%	100%
정책담당자	빈도	2	5	4	5	1	1	18
	비율	11.1%	27.8%	22.2%	27.8%	5.6%	5.6%	100%
기타	빈도	5	34	25	13	1	1	79
	비율	6.3%	43.0%	31.6%	16.5%	1.3%	1.3%	100%
전체	빈도	236	1,458	1,008	380	50	134	3,266
	비율	7.2%	44.6%	30.9%	11.6%	1.5%	4.1%	100%

8.4.6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선택 교과목 ‘31과목(63학점)’ 구성의 적절성

- 표준교육과정의 자격증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절(‘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의견도 34.7%로 높게 나타났음
- 자격증 필수 교과목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25.0%, 2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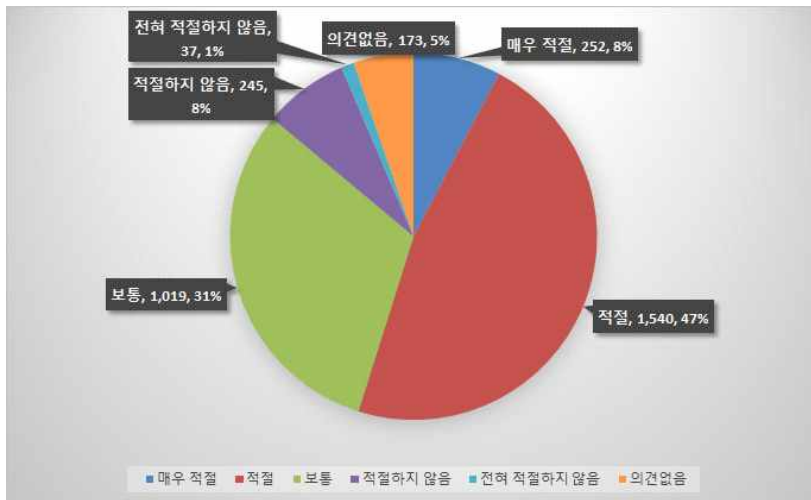
(그림 46) 준교육과정 모형(안)의 선택교과목 31과목 구성의 적절성

<표 115> 표준교육과정 모형(안)의 선택교과목 31과목 구성의 적절성

신분	항목	매우 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07	691	456	69	4	76
	비율	7.6%	49.3%	32.5%	4.9%	0.3%	5.4%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99	784	596	71	15	65	1,630
	비율	6.1%	48.1%	36.6%	4.4%	0.9%	4.0%	100%
전임교원	빈도	6	34	31	16	8	1	96
	비율	6.3%	35.4%	32.3%	16.7%	8.3%	1.0%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2	18	18	0	2	0	40
	비율	5.0%	45.0%	45.0%	0.0%	5.0%	0.0%	100%
정책담당자	빈도	2	6	3	3	1	3	18
	비율	11.1%	33.3%	16.7%	16.7%	5.6%	16.7%	100%
기타	빈도	5	37	29	5	0	3	79
	비율	6.3%	46.8%	36.7%	6.3%	0.0%	3.8%	100%
전체	빈도	221	1,570	1,133	164	30	148	3,266
	비율	6.8%	48.1%	34.7%	5.0%	0.9%	4.5%	100%

8.4.7 ‘사서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의 기준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부적절(‘적절하지 않음’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 응답 비율이 각각 16.7%, 27.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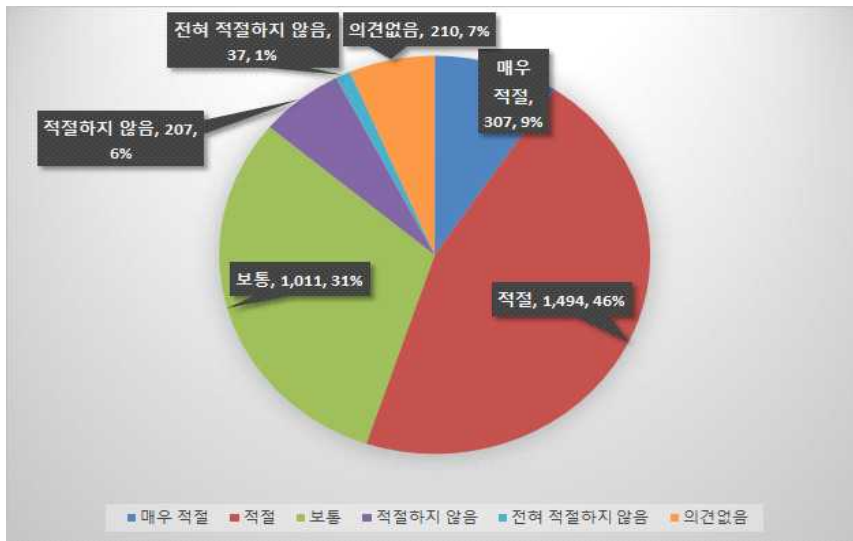
(그림 47) 사서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표 116〉 사서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신분	항목	매우 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13	654	426	99	12	99
	비율	8.1%	46.6%	30.4%	7.1%	0.9%	7.1%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15	778	533	120	20	64	1,630
	비율	7.1%	47.7%	32.7%	7.4%	1.2%	3.9%	100%
전임교원	빈도	14	46	19	12	4	1	96
	비율	14.6%	47.9%	19.8%	12.5%	4.2%	1.0%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5	18	15	1	0	1	40
	비율	12.5%	45.0%	37.5%	2.5%	0.0%	2.5%	100%
정책담당자	빈도	1	6	3	4	1	3	18
	비율	5.6%	33.3%	16.7%	22.2%	5.6%	16.7%	100%
기타	빈도	4	38	23	9	0	5	79
	비율	5.1%	48.1%	29.1%	11.4%	0.0%	6.3%	100%
전체	빈도	252	1,540	1,019	245	37	173	3,266
	비율	7.7%	47.2%	31.2%	7.5%	1.1%	5.3%	100%

8.4.8 ‘정보조직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운영 기준안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적절(‘적절’ 또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적절하지 않음’ 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하다는 의견은 도서관 직원과 전임교원 집단에서 각각 9.3%, 1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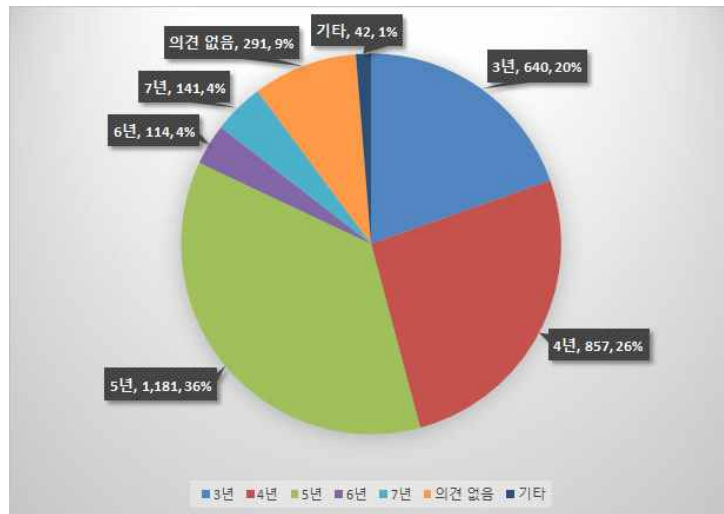
(그림 48)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표 117〉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인정 기준(안)의 적절성

신분 \ 항목		매우 적절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의견 없음	전체
학생	빈도	138	660	409	58	10	128	1,403
	비율	9.8%	47.0%	29.2%	4.1%	0.7%	9.1%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141	727	544	129	23	66	1,630
	비율	8.7%	44.6%	33.4%	7.9%	1.4%	4.0%	100%
전임교원	빈도	14	47	18	10	4	3	96
	비율	14.6%	49.0%	18.8%	10.4%	4.2%	3.1%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6	19	12	2	0	1	40
	비율	15.0%	47.5%	30.0%	5.0%	0.0%	2.5%	100%
정책담당자	빈도	2	5	7	0	0	4	18
	비율	11.1%	27.8%	38.9%	0.0%	0.0%	22.2%	100%
기타	빈도	6	36	21	8	0	8	79
	비율	7.6%	45.6%	26.6%	10.1%	0.0%	10.1%	100%
전체	빈도	307	1,494	1,011	207	37	210	3,266
	비율	9.4%	45.7%	31.0%	6.3%	1.1%	6.4%	100%

8.4.9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안) 모형의 적절한 개정 주기

■ 문헌정보학 표준교육과정 개선안 모형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5년 주기(36.2%, N=1,18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 4년 주기(26.2%, N=857), 3년 주기(19.6%, N=640)에 대한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49) 표준교육과정 모형의 개정 주기 적절성

〈표 118〉 표준교육과정 모형의 개정 주기 적절성

신분	항목	3년	4년	5년	6년	7년	의견 없음	기타	전체
	학생	빈도	251	460	411	56	42	171	12
비율		17.9%	32.8%	29.3%	4.0%	3.0%	12.2%	0.9%	100%
도서관 직원 (사서 및 사서교사)	빈도	329	353	678	55	87	107	21	1,630
	비율	20.2%	21.7%	41.6%	3.4%	5.3%	6.6%	1.3%	100%
전임교원	빈도	26	16	39	1	6	3	5	96
	비율	27.1%	16.7%	40.6%	1.0%	6.3%	3.1%	5.2%	100%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빈도	13	7	16	1	1	1	1	40
	비율	32.5%	17.5%	40.0%	2.5%	2.5%	2.5%	2.5%	100%
정책담당자	빈도	3	5	7	0	2	1	0	18
	비율	16.7%	27.8%	38.9%	0.0%	11.1%	5.6%	0.0%	100%
기타	빈도	18	16	30	1	3	8	3	79
	비율	22.8%	20.3%	38.0%	1.3%	3.8%	10.1%	3.8%	100%
전체	빈도	640	857	1,181	114	141	291	42	3,266
	비율	19.6%	26.2%	36.2%	3.5%	4.3%	8.9%	1.3%	100%

8.5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시사점

8.5.1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

- 현행 사서자격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80.3%, N=2,621)
 - 특히 현장의 사서직 종사자 및 대학 전임교원 집단에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집단에서는 설문 응답자 전체가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반면 학생 집단은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4.8%(N=2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견이 없는 비율도 16.0%(N=225)에 이르고 있음
 - 응답자 신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학생 집단에서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의견이 낮은 이유로는 대학 및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사서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사서자격제도의 문제 혹은 개선과 관련한 의견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사서자격제도의 중요성을 학생 집단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는 주체인 학생들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사서자격제도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사서자격증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 및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가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분석
 -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의 개선에 대해서는 도서관 직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반면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집단에서는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집단에서는 사서자격증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를 포함한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측면에 대해 낮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이를 종합해 보면,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사서 전문성 강화 및 사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

■ **현행 사서자격 구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격제도 구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정책담당자의 72.2%(N=13)가 사서자격 구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5.9%, N=847)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임교원 집단에서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서자격의 구분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의 제정·정비 및 각계의 의견 수렴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서자격의 구분 개선은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서자격을 재구분할 경우 적절한 방식에 대한 의견은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현행 3단계 구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3단계 구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사서자격의 구분은 현행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서자격의 재구분은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의 3단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제한

■ **최초 사서자격 취득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체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집단에서 약 80% 이상이 추가적인 검정체계의 필요성을 응답**

- 사서를 양성하는 기관 및 정책 관련 기관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서자격의 추가적인 검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
- 반면 학생 집단에서는 추가적인 검정체계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음

-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으로는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과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혼합적 적용,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인 검정체계 방식으로는 국가자격시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표준교과목의 지정, 시험 응시를 위한 기본자격 취득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이는 결국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정비 및 기본자격 취득을 위한 기관 인증, 최소 이수학점의 정비가 필요
- 향후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도입의 선행 과정으로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비와 최소 이수학점의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

8.5.2 최소이수학점 개선 부문

-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나, 현행 교과목의 개선 및 최소이수학점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사서 및 사서교사 등 도서관 직원 집단에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현장에서의 사서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교과목 개선 및 필수적인 이수학점 지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
 - 교원 집단 및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도 80% 이상의 높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표준교과목 이수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반면 학생 및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학과의 운영, 대학의 학칙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특히 복수전공 등 다전공을 지향하는 현재의 대학환경을 고려하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은 학생들의 다전공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타 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의 다전공 진입을 위한 장벽을 높이고,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과도한 최소이수학점 이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다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문헌정보학과와 운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사서직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측면에서 사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
-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60학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학생, 도서관 직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집단에서는 적절하다고 응답
- 특히 도서관 직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60학점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임교원 집단에서는 60학점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학점 체계가 대학별로 상이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전통적인 도서관학, 문헌정보학, 데이터 관련 분야 등 도서관 환경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
 -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내용 수강을 통해서 사서 전문성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
 - 반면 문헌정보학 전공, 복수전공 이수 등과 무관하게 사서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이수학점이 60학점으로 조정되거나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
 - 사서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장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서직으로서의 근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
 - 최소이수학점의 60학점 조정은 각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와 운영 기반을 저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사서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의 외연 확장을 위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다전공을 지향하는 대학의 교육환경을 최소이수학점 60학점 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서 전문성의 외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준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48학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적절 또는 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48학점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임교원 집단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는 준사서 자격 취득을 제공하는 대학에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다만 설문에 응답을 한 준사서 자격 취득 제공 교육기관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등 관련 집단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 48학점에 대해서도 모든 집단에서 적절하다는 의견 및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지정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
 - 특히 48학점의 적절함에 비해 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최소이수학점은 제안한 48학점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하지만 준사서 자격 취득,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48학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다른 사서 양성 교육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제안한 48학점의 유지가 현 시점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8.5.3 표준교육과정 개선 부문

- 표준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목(안) 12과목(36학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모든 집단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특히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2.3%, 3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과 유사한 이유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표준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목 이수학점이 전공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
 - 또한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필수 교과목 명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필수 교과목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 필수 교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다시 제시
- 이를 종합해 보면, 표준교육과정의 필수 교과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필수 교과목의 유지에서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

■ 표준교육과정의 선택 교과목(안) 31과목(63학점)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의견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필수 교과목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25.0%, 2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 또한 교과목 명칭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교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표준교육과정 개선(안) 모형의 개정 주기에 대해서는, 5년 주기의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이외 4년 주기, 3년 주기에 대한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 이에 따른 도서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5년 주기의 개정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8.5.4 실습 교과목 개선 부문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의 기준(안)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 집단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과, 실습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섭외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됨
- 사서실습은 도서관 현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현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서실습 과목 운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사서실습 교과목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
- 다만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사서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한 기준의 적용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상향한 것이 아니므로, 사서실

습의 질을 담보하고 실습 담당 교원의 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준 세분화가 필요

- 또한 실습을 지원하는 도서관 현장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 제안한 기준의 준수 및 사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습 교과목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운영 기준(안)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도서관 직원과 전임교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보조직 실습은 사서의 핵심역량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습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보조직을 위한 도구의 마련 및 실습 환경의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
- 다만 제안한 정보조직 실습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전임교원과 정책담당자의 부적절 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반면 정보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조직 실습이 필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습을 위한 도구의 마련에 상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제 9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9.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방향**

9.2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강화

9.3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강화

9.4 교육과정 개선방안

제 9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9.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방향

9.1.1 사서 전문성의 의의 정립

- 도서관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확대
 - 이러한 도서관의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진화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운영 및 정보서비스의 중추인 사서의 전문성은 이전 환경에 비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이 전문적인 도서관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도서관의 전문성은 결국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
 - 진화하는 지식정보환경에서 사서는 근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큐레이션, 경영기법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 되고 있음
 - 사서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계의 근본적인 방향 가운데 하나
 -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현장의 요구, 교육기관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 정립이 전제조건
 - 하지만 각각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고유한 상황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행 제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방안 또한 실제적 적용이 불가능
 - 이에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 아래 각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사서자격제도와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도서관 현장의 간극이 발생

-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학의 교육 과정과 도서관 실무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도서관 현장에서는 현행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1)
- 교육내용과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현행 교과과정과 현장 업무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 (박옥남, 2018)
-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관중별 도서관 현장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사서의 전문성 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직 위상의 제고 필요

- 도서관계 외부에서는 사서직을 기능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해 왔으며,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사서직과 기능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빅데이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에 투입되면서,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사서직을 데이터 처리 중심의 기능직으로 바라보고, 문헌정보학을 데이터 중심의 분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내적인 문제가 발생
- 특히 주제전문화 혹은 다양화를 갖춘 사서직 양성을 이유로, 사서직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배제한 기법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 의견이 대두
- 이로 인해 사서직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서비스의 역량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사서직의 기능직화를 유도하는 동향이 감지
-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소수의 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상황 (이제환, 2010)

■ 사서의 의미와 역할

- 사서는 사서 양성 교육과정을 인가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도서관 현장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으로서,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정의 (Gorman, 2000)
- 사서는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지만,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서비스의 철학이 배제된 웹사이트 구축이나 데이터 처리만을 수행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이 될 수는 없음
-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구와 프로세스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

지만,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데이터센터와 빅데이터 처리와는 다른 고차원적인 지식정보를 위한 것임

- 데이터센터와 도서관 모두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도서관의 데이터센터화, 사서직의 데이터 처리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위상이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 내·외부적으로 훼손되어 가는 것을 의미
- 하지만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출판물, 데이터베이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사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의 접근이라는 핵심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생태계에서의 핵심 인력(key species)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Cheng, 2000)

9.1.2 사서 전문성 확보 기준 정립의 의의

■ 도서관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적, 사회적 기관이며, 데이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교육적,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기능까지도 포괄

- 단순 기법 중심의 기관이 아닌 커뮤니티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장서개발, 정보조직, 지식정보 보존, 서비스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함
-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사서이며, 이를 총칭하는 명칭이 사서직 (librarianship)
- 사서의 역할이 사서직의 역할이며, 이는 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

■ 도서관의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의 근본적인 역량에 대한 정립이 필요

- Gorman(2000)은 21세기 사서직의 핵심가치를 8가지로 주장
 - 사서직의 봉사자로서의 역할
 - 개인·집단·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 지적 자유의 보호
 - 도서관 업무의 합리적인 처리
 - 읽기, 쓰기, 학습의 권장
 - 기록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보장

-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
 - 민주주의의 지지와 수용
- Pritchard(1995)가 제시한 사서직의 새로운 역할 모형 중 사서직의 필수적인 역량
- 장서개발 기술
 - 편목과 분류
 - 상호대차시스템
 -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확보
 - 독자지원 기술
 - 아동문헌에 대한 지식
 - 프로그래밍 기술
 - 인터뷰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정보문제 해결 기술
 - 정보원에 대한 지식
 - 정보기술
 - 이용자 서비스 기술
 - 주제전문 기술
 - 교과과정에 대한 지식

■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분야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

- 정보서비스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도서관 및 사서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이론들을 접하고, 이를 현장과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서직과 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정립될 수 있음
- 이러한 철학의 정립을 기반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서관의 정보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제고될 수 있음
- 단기간에 걸친 기법의 습득으로는 정보서비스의 철학을 체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 또한 교과내용 이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될 수 있음

9.1.3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방향

- 사서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장적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기존에 제안된 많은 개선방안들은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이상적인 방안들이지만, 기존 개선방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선행작업들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여러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도서관계의 위상 제고라는 대명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

- 이에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에 집중하고, 현재의 제도 환경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
 - 최종 개선방안의 정립 과정에서 사서자격 종류의 개선이나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논의에서 제외
 - 현 시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및 교육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논의

- 개선방안 제안의 한계 및 향후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고려사항
 - 사서자격 종류는 현행 제도와 같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을 유지하고, 각 등급별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 현행 3등급 체계의 사서자격 종류의 개선은 법령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서자격 제도가 전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는 단기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또한 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 현행 3등급 체계의 사서자격 종류에 대한 유지 의견이 높게 나와 있으므로, 현행 3등급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개선방안을 제안
 -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이나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방안은 다수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 등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사이의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

9.1.4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제안의 고려사항

■ 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서자격제도 및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과정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서자격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개선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두 가지 측면으로 마련하여 제안
 - 이들 두 가지 측면을 상호 독립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교육적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어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제안
-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개선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논의
-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
 -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2021년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기반하여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안을 마련

9.2 사서자격 취득 구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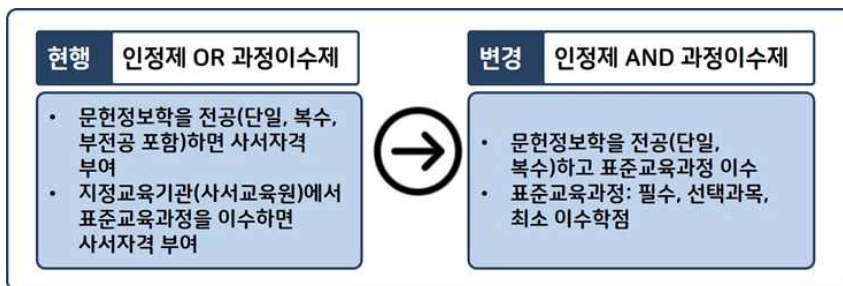
■ 사서자격요건의 기본 구조 개선

- 현재 사서자격제도의 기본 구조는 각 대학의 학과 단위 및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단위로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을 운영하고, 각 기관별로 졸업을 위한 전공 교과목 이수를 통해 사서자격을 취득
 - 다양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사서 인력이 양적으로만 양산되는 문제를 초래

- 교육과정 또한 법령에 따라 10과목(30학점) 등의 최소이수학점으로만 운영되어 사서의 전문성이 아닌 경제적·재정적 논리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운영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 특히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인원의 경우,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을 최소로 이수한 상태로 문헌정보학 심화전공을 이수하는 인원과 동일한 사서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서직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
-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이 여러 분야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과목 정도의 과목 이수를 통해 이러한 모든 소양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

■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 이에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적인 기준을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와 문헌정보학 전공 교과목의 최소 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강화
 -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는 문헌정보학 혹은 도서관학 학위를 받은 경우는 이수한 교과목에 상관없이 1급, 2급, 준사서자격증의 취득이 가능
 - 이로 인해 도서관 혹은 사서직과 무관한 교과목 위주로 수강한 상태로 사서자격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위와 최소이수학점 충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 제안



(그림 50)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 구조(안)

9.3 최소이수학점 기준 강화

■ 최소이수학점제 기준 강화의 배경

- 대학의 복수전공을 장려하는 학업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 이수학점이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전공 영역의 확대는 특정 측면에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사서직과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보면, 사서직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 복수전공의 장려를 위해 각 전공별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낮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 이는 주제전문사서 등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사서의 역할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주제전문사서 역시 사서이며, 따라서 사서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
 - 사서직으로서의 역량이 결여된 다양화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음

■ 최소 이수학점제 기준 적용의 단순화

-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에서는 동일한 사서자격 종류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과목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사서자격 취득의 기준 및 조건이 각 기관별, 상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사서자격제도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자격 종류별로 일관적인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이에 사서자격 취득에서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마련
-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등급별로 공통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할 경우, 각 사서자격 종류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표 119〉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선안

구분	대상자격증	전공 관련 최소이수 학점 기준		
		현행	개선안	
대학	1급 정사서	-	-	
	2급 정사서	단일전공: 평균 64.03 복수전공: 평균 40.48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60	
	준사서	-	단일전공: 48 복수전공: 48	
전문대학	준사서	평균 39.25	48	
지정교육기관	1급 정사서	30	48	
	2급 정사서	30		
	준사서	30		
평생교육원	2급 정사서	대학 타전공	48	60
		전문대 타전공	60	60
		전문대 문헌정보학 전공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 최소 이수학점 개선방안

-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60학점으로 강화
- 기존에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의 이수학점 요건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60학점의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
- 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사서자격 취득을 하는 경우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강화
 - 문헌정보학 단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기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에서의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남발되는 경향을 방지

■ 최소 이수학점 이수에 따른 사서자격증 취득 제한

- 현재 각 대학에서는 복수전공 등 다전공을 장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 40학점 정도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2급 정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
 - 이는 동일한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단일전공(평균 64학점)

과 복수전공(평균 40학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

- 또한 평균 40학점의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 이수로는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각 대학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40학점 미만의 과목 이수만으로도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상황
 - 이는 복수전공, 융합전공의 지향을 이유로 사서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민간 원격교육기관, 일부 대학의 사서교육원, 학점은행제 등 비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서 양성 교육기관으로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이수학점 이수 여부에 따라 4년제 대학에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사서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
- 현행 제도에서는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면 2급 정사서 취득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 개선안에서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고 60학점 이상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부여
 - 대학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60학점 이상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48~59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2급 정사서’ 자격이 아닌 ‘준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 부여
 - 이는 단일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 대학의 이수 과정과 무관하게, 자격증 종류별로 최소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강화
- 사서 전문성의 다양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환경 조성
- 사서 전문성의 다양화를 이유로 사서직 관련 교과목 대신 데이터 처리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도 사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함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상향 조정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
 - 하지만 사서 전문성의 다양화는 사서직으로서의 근본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이며, 사서직의 소양을 갖추지 않은 다양화는 사서직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는 것임

- 특히 사서 양성 교육과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사서직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데이터 관련 교과목만을 이수한 경우는 데이터 전문가이지 사서직이 될 수는 없으며, 사서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처리 중심으로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것은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근본을 도외시하는 주장에 불과
- 따라서 4년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사서 자격을 부여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사서직로서의 전문성 혹은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고,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 60학점 이상의 이수는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자격 부여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고,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 48~59학점 이수의 경우는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을 48학점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는 사서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향후 대학 유형에 따른 최소 이수학점 기준 개정의 고려사항

- 석사학위과정이나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지정교육기관에서 1급 정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전문대학에서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0학점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지정교육기관에서는 30학점의 이수만으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준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님
- 전문대학에서 평균 40학점을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하는데 비해, 4년제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통해 최소 40학점을 통해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는 준사서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정사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하지만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는 학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위에 따른 사서자격 취득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을 부여하는 법률 및 제도, 규정이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소이수학점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제안

9.4 교육과정 개선방안

9.4.1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 강화

■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 지정

- 사서자격의 종류별로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의 정립이 필요
 -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표준화된 교육내용의 적용 및 문헌정보학 전공 필수 교과목의 운영이 필요
 - 사서자격증 등급별 표준교과목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별로 동일한 수준과 질을 확보한 교육과정의 운영 기반을 마련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표준교과목을 기반으로 사서양성 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으로 구분
- 제안하는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은 사서의 전문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동일한 교과내용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상이한 교과목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교과내용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및 필수 이수과목을 제안

9.4.2 필수 교과내용 지정 및 이수 강화

■ 필수 교과내용 지정

- 2021년 2월,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표 120> 참조)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들 가운데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표 120〉 필수 교과내용(안)

영역	대표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명	비고
문헌정보학일반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원론, 문헌정보학의 기초, 문헌정보학의 이해, 문헌정보학 입문 등	-
	도서관문화사	도서 및 도서관사, 도서관사, 도서관사상론, 정보문화의 역사, 정보문화사, 정보미디어의 역사, 정보미디어의 역사와 문화, 출판 및 도서관사 등	-
	사서실습	도서관실습, 공공도서관실습, 대학 및 전문도서관실습, 도서관 및 정보센터현장실습, 도서관·정보센터실습, 문헌정보학현장실습(1,2,3,4), 현장실무실습, 현장실습, 현장학습 등	- 2급 및 준사서 자격 취득에만 시행 - 사서실습 인정 기준(안)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수 인정
정보조직학	자료조직론	-	- 분류학, 목록학 중 1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자료조직실습	-	- 분류실습, 목록실습 1 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정보조사제공학	정보서비스론	정보봉사론 등	-
	정보이용자론	정보이용행태론, 정보행태론, 이용자연구론, 정보이용	-

		자의 이해 등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론, 독서지도, 독서교육활용론, 독서교육, 독서학개론, 독서교육의실제, 독서지도실습 등	-
도서관·정보센터 경영	장서개발론	장서개발 및 관리, 장서구성개발론, 정보자료개발, 정보자료구성론, 정보자료선택의 이해, 장서구성론 등	-
	도서관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운영, 도서관관리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서비스경영론, 학술정보센터경영, 도서관기획론 등	-
정보학	정보검색론	정보검색이론, 온라인 정보검색, 검색엔진, 정보검색실습 등	-
	정보기술론	-	- 데이터베이스론, 정보시스템론, 도서관과인터넷기술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단, 선택과목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음

9.4.3 선택 교과내용 지정 및 이수 강화

■ 선택 교과내용 구성의 배경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논의된 교과목 가운데 선택 교과목으로서 3.5 이상의 동의도를 보인 교과목을 기준으로 선정
-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서 역량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31과목으로 구성 (<표 121> 참조)

■ 선택 교과내용 지정에서의 유연성 및 실효성 확보

- 각 대학 혹은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의 사서자격제도를 충족할 수 있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 및 정착
-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교과내용의 적용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의 일률적 상향 적용은 기존 사서 양성 기관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무리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복수전공 등 다전공을 장려하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상향된 최소 이수학점 60학점을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졸업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
- 하지만 다전공을 지향하는 대학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10과목(30학점)의 이수만으로 사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대학 교육과정 자체가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도 귀결
 - 다전공을 지향하여 사서 전문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서직의 근본적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사서의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
 - 사서직의 다양화는 사서직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춘 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며, 사서로서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양성은 사서직이 아닌 기능직으로의 전락을 의미
 - 따라서 교육과정, 특히 대학에서의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며, 데이터 중심의 사서 다양화라는 주장은 오히려 양성되는 사서의 비전문화만을 초래할 수 있음

〈표 121〉 선택 교과내용(안)

구분		사서자격 관련 31개 교과내용 (31개 과목)	
		대표 교과목명	유사 교과목명
문헌정보 일반	2	도서관과 저작권	정보와지적재산, 정보윤리, 저작권과정보윤리, 정보사회와저작권, 출판과저작권 등
		문헌정보학 연구방법론	문헌정보학조사방법론, 정보조사분석론 등
정보조직학	5	메타데이터의 이해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의이해, 메타데이터구조론, 메타데이터설계론 등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조직론	매체조직실습, 특수매체조직, 특수매체분류, 멀티자료조직론 등
		자동화목록실습	자동화목록법, 한국문헌자동화목록 등
		정보매체론	정보자원론, 정보자원관리연습, 정보자원과뉴미디어
		LOD 및 오픈엑세스	LOD구축실습, 오픈엑세스, 정보공유와LOD 등
정보조사 제공학	5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론	어린이서비스론, 아동및청소년자료, 어린이서비스현장실천론 등
		인터넷자원활용	인터넷자원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론 등
		정보리터러시	정보문해론, 정보활용교육론, 정보사회와리터러시, 정보이용지도 등
		정보커뮤니케이션론	정보커뮤니케이션의이해, 지식·문화커뮤니케이션, 정보커뮤니케이션선과네트워크 등
		학술정보활용법	학술정보서비스, 학술정보탐색과활용, 학술커뮤니케이션론, 전자학술정보특론 등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학	4	관중별도서관운영론	공공도서관경영, 대학도서관론, 대학및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경영론, 학교도서관운영, 작은도서관운영실무 등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평가분석론, 도서관실무통계, 정보분석평가론, 정보서비스평가 등
		도서관마케팅	도서관홍보론, 도서관정보센터마케팅론, 콘텐츠기획및마케팅 등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도서관프로그램개발및운영, 도서관프로그램기획, 프로그램기획론 등

정보학	10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운영론, 유비쿼터스도서관, 디지털도서관구축론 등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시 등
		디지털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제작론, 지식정보사회와콘텐츠개발 등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분석방법론, 빅데이터개념및활용, 빅데이터와도서관, 빅데이터와디지털리터러시 등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분석기초통계, 데이터사이언스개론 등
		빅데이터 처리 기법	빅데이터보안, 빅데이터색인및관리, 빅데이터프로그래밍 등
		정보학의 이해	정보학원론, 정보학입문, 정보이론과정정보시스템 등
		도서관과 인터넷 기술	도서관IT, 인터넷정보관리 등
		이용자 인터페이스론	검색인터페이스설계, 웹인터페이스설계, 인터페이스디자인 등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큐레이션, 콘텐츠큐레이션 등
서지학	1	서지학개론	서지학입문, 한국서지학 등
기록관리학	4	기록관리학	기록과인간, 기록관리개론 등
		디지털아카이빙	기록보존론, 정보자료보존, 아카이브와 콘텐츠 등
		전자기록관리론	전자문서관리, 전자정보관리 등
		공공기록물관리론	정부기록물관리, 정부자료론 등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의 준수 유지

- 2급 정사서(60학점) 및 준사서(48학점)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이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 이 가운데 모든 종류의 사서자격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내용을 필수 교과내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수하는 것은 사서직이 주제전문 분야와의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문헌정보학 단일 전공의 경우는 필수 이수 교과내용 12과목(36학점)과 선택 교과내용 8과목(24학점)을 이수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문헌정보학과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는 각 교육기관에 따라 필수 이수 교과내용 및 선택 교과내용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하지만 특정 기관의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계가 도외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서의 무분별한 양적 확산을 초래할 수 있음

9.4.4 사서실습 교과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강화

- 사서실습을 표준교과내용의 필수 이수 교과내용으로 설정하여,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현장적용성을 확보
- 사서실습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화된 사서 인력을 교육과정에서 양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내용이며, 따라서 사서실습 과목의 운영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표 122〉 사서실습 과목 개설 기준(안)

<p>가. 사서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p> <p>나. 실습단위 당 학생 배치 인원은 지도사(사서) 1명 당 5명 이내로 할 것</p> <p>다. 사서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사(사서)가 1명 이상 상근할 것 <p>라. 도서관 사서실습 과목의 담당교수는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할 것</p> <p>마.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의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 이상)>으로 <도서관 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서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 취소, 도서관 사서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 교원의 자격 강화

- 사서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사서실습 과목은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 전임교원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사서실습 진행 기간 중 현장실습 과목 담당 교원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강제화

■ 사서실습 교과목 운영의 범위

- 사서 양성 과정에서 실습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보조직 이외에도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또한 이들 각각의 세부적인 측면을 실습과목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 하지만 정보서비스, 도서관경영, 정보학 관련 분야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사서가 수행하는 도서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음

- 이에 현장 사서를 중심으로 사서실습의 시간을 확대하여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측면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하지만 이는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사서실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서관 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이에 정보조직 실습을 제외한 도서관 관련 실습 내용을 사서실습에서 도서관 현장 사서의 운영 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

■ 사서실습 기관 확보 지원

- 각 대학에서는 사서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직면
- 이에 도서관 기관 평가에서 사서실습 지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정책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9.4.5 정보조직실습 교과목 강화

■ 정보조직실습 과목 조건 강화

- 도서관 업무 및 사서직 관련 지식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정보조직실습 과목의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정보조직실습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분류 및 도서관 목록의 실습으로 구성되며,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 도서관 분류 및 목록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분류표(한국십진분류표 혹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를 구비
 - 수강학생 1인당 0.5질의 목록규칙(한국목록규칙 혹은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를 구비
 - 웹 버전의 분류표 혹은 목록규칙의 경우는 수강학생 전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
- 자료조직 실습 과목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현장적용성을 갖추는 방향으로의 교과목 운영을 위해서, 자료조직 실습 과목은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혹은 강사에 의해 진행

9.5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의 적용성

- **현행 사서자격제도는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
 - 이로 인해 동일한 사서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마련에의 어려움이 존재
 -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이 최소한의 학점 이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사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인 한계로 작용
 - 이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서자격증 취득자의 양적인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사서자격증의 위상의 저하시키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민간원격교육기관에서도 사서자격증 발급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존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축소 및 사서자격의 전문성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현장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서도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대두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의 단순화**
 - 현재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사서자격 취득 요건을 사서자격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사서자격 종류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을 자격증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을 자격증 종류별로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사서자격증 자체의 전문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
 - 이는 기존의 사서자격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자격증 종류별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 **표준 교육과정의 마련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 각 사서 양성 교육기관별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

- 필수 교과내용 및 선택 교과내용을 설정하여, 교육기관의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에서 제안한 표준 교육과정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계의 합의로 도출된 일관성 있는 교과내용의 교육이 가능

■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의 강화

- 기존의 사서자격 취득 기준을 자격증 종류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 기존의 사서 양성 교육기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이수해야 하는 최소 학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서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서실습 및 정보조직실습 과목 개설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현장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의미를 제고하고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사서자격 취득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방안 마련

■ 최소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

- 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최소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여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서자격 취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역량을 최소한으로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자격 종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설정
- 2급 정사서의 경우 60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준사서의 경우 48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의 기준으로 설정

■ 제안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의 현장적용성

- 기존의 사서자격제도를 재논의하는 개선방안 제안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개선 내용을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성을 확보
- 국가시험제도의 도입, 기관인증제 등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한 이상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될 경우에도, 이들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 교육기관별로 고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서자격의 강화 및 사서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강화는 도서관계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임

-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진화하는 사회 환경, 정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

제 10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고려사항

10.1 개선방안 적용의 고려사항

10.2 향후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향

10.3 사서자격제도 개선 로드맵

제 10 장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고려사항

10.1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적용의 고려사항

- 현재 도서관과 사서직은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반면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주장도 제기

-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 및 데이터 중심으로의 사회 이슈의 전환으로 인해 도서관 환경의 중심축인 지식정보가 데이터 단위로 분화되는 상황에 직면
 - 정보서비스의 세밀화, 개인화를 위한 도서관 환경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대두
 - 이로 인해 도서관의 근본적 역할을 도외시키고 데이터센터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책결정권자 집단을 중심으로 논의
 - 특히 국가 차원에서도 도서관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실제 기능과 역할은 데이터센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도서관의 근본적 역할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도서관의 데이터센터화가 가져오는 불이익과 불편함은 사서와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후진적인 행태임
 - 도서관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기관에서도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전문역량이나 인식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과 사서직의 전문성은 정책 결정이나 정책 제정에 충분하게 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의를 배제하는 경향이 정책결정권 집단에서 나타남
 - 사서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사서를 양성하는 문헌정보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정책 결정에 참여
 - 이들 인력들은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반대의 의견을 보이

는 경향이 있으며,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전문성의 문제와 비판은 사서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서의 논의 과정에는 도서관 및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은 배제하고,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사서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

■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음

- 하지만 데이터 기법의 도입은 도서관의 운영이나 정보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데이터 처리가 도서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님
-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설비의 도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서의 충원이나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아직까지도 도서관은 책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후진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서관의 진화 및 사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논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존재
- 이는 결국 이용자의 정보활동에서의 한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 사이의 정보격차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격차의 발생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 마련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사서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교육내용 강화를 주장하기도 함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서의 전문성이 아닌 사서 직무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기법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
- 하지만 사서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데이터 전문성 확보는 사서직이기를 포기하는 상황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서 직무의 다양화라고 볼 수도 없는 편향적인 주장임
- 특히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 데이터 관련 과목이 증가하면서, 문헌정보학 및 사서직 관련 과목 대신 데이터 관련 과목으로의 선회나 쏠림 현상이 발생
-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교과목의 최소이수학점 상향 조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펼치고 있으며, 데이터 관련 교과목 이수

- 기회를 줄이게 되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기도 함
- 하지만 사서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 설정은 학생의 선택권 침해가 아니며,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2급 정사서와 준사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년제 대학에서 복수전공, 다전공, 융합전공을 권장하는 제도로 인해,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이 기존 문헌정보학과와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 각 대학의 고유한 상황으로 인해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이 졸업까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률적인 상향 조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전체가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대명제이며, 이는 문헌정보학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서관과 사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최소 이수학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과목을 다전공으로 이수하여 사서자격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서직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사서직을 대학 교육기관이 양산함으로써 질적인 퇴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서직의 비전문화 및 일반화를 초래할 수 있음

10.2 향후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향

-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 반영뿐만 아니라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과정이 선결되어야 함
- 특히 각 교육기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유한 제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모든 방안은 각 교육기관의 고유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사서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인식 제고,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사서자격증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우선적인 대명제가 되어야 함

■ 사서자격제도 개선방안 적용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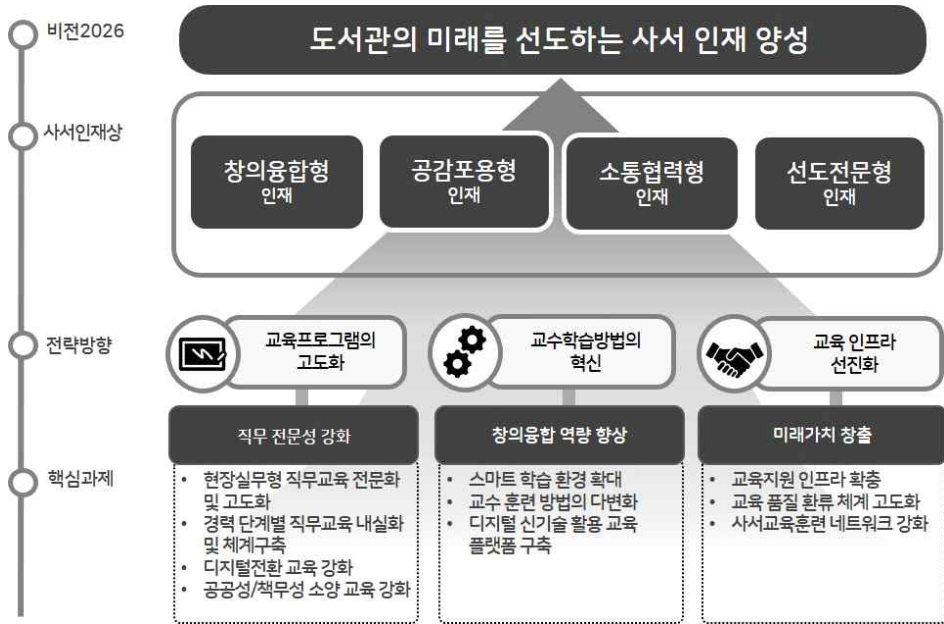
- 현재까지 제안된 수많은 개선방안들은 교육기관 현장의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각 기관의 이익과 존속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모든 사서 양성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불가능
-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기관들은 사서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인력의 양적인 모집을 통한 교육기관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의 배출은 도외시하는 것이 현실임

■ 대학 교육기관에서도 복수전공, 다전공, 융합전공 등을 지향하는 대학 제도로 인해,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확보와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학 제도의 준수라는 상반된 상황 하에서의 어려움에 직면

- 일부에서는 시대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도서관 및 사서직의 전문성이 아닌 데이터 처리 중심의 인력 양성을 주장하는 등 현재의 사서자격제도와 교육기관은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위협과 외적인 위협에 직면

■ 실제적이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의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되는 사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이유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학위의 취득과 사서자격증 종류별 최소이수학점의 일률적 적용은 양성되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적 기준이자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계 내·외부의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



(그림 51)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21, 207)

■ 사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서직무의 전문성 강화, 다양화하는 융·복합 환경에서의 창의융합 역량 강화, 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능력의 함양이 필수

- 직무 전문성 강화는 현장의 경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과정에서의 이론적 기반의 습득 및 현장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서 구현 가능
- 사서의 전문성 혹은 다양화에 대한 선택을 통해 전문사서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 기술을 지니고 있는 기능직 사서로서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도서관계 및 사서직 전반에 걸쳐 전문화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이는 전문사서와 기능직 사서로의 실제적 구분을 통해 사서직의 사회적 역할 확장 도모가 가능

■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통해 급속하게 진화하는 정보환경 및 지식정보자원의 전환에 대응

- 창의와 융합은 데이터 기법의 습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 함양이 가능

-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교육과정에서 기술적 측면과 지식정보 측면을 충분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창의융합을 통한 전문적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사서의 역량을 함양 가능

■ 미래가치 창출

- 도서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사서, 장서,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주된 대상인 이용자를 포함하여 도서관의 4요소로 인식
- 도서관의 3요소는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사회구성원인 이용자의 정보활동을 지원할 때 그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지식정보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지원할 때 그 의미가 생성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 창출 활동은 사서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사서들은 지식정보를 조직, 분석, 처리,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지식정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
-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서직의 기본 조건

■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 사서의 전문성 강화는 하나의 방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다면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서의 전문성은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대명제가 정립되어야 함
- 현재의 사서자격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및 현장의 의견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개선은 계속해서 마련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위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중심의 환경은 사서의 전문성 강화의 핵심 내용이 될 수는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사서직의 기능과 역할은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피상적인 수준의 활동이 아님
- 따라서 향후의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직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식정보를 다루는 사서직은 기법 중심의 기능직이 대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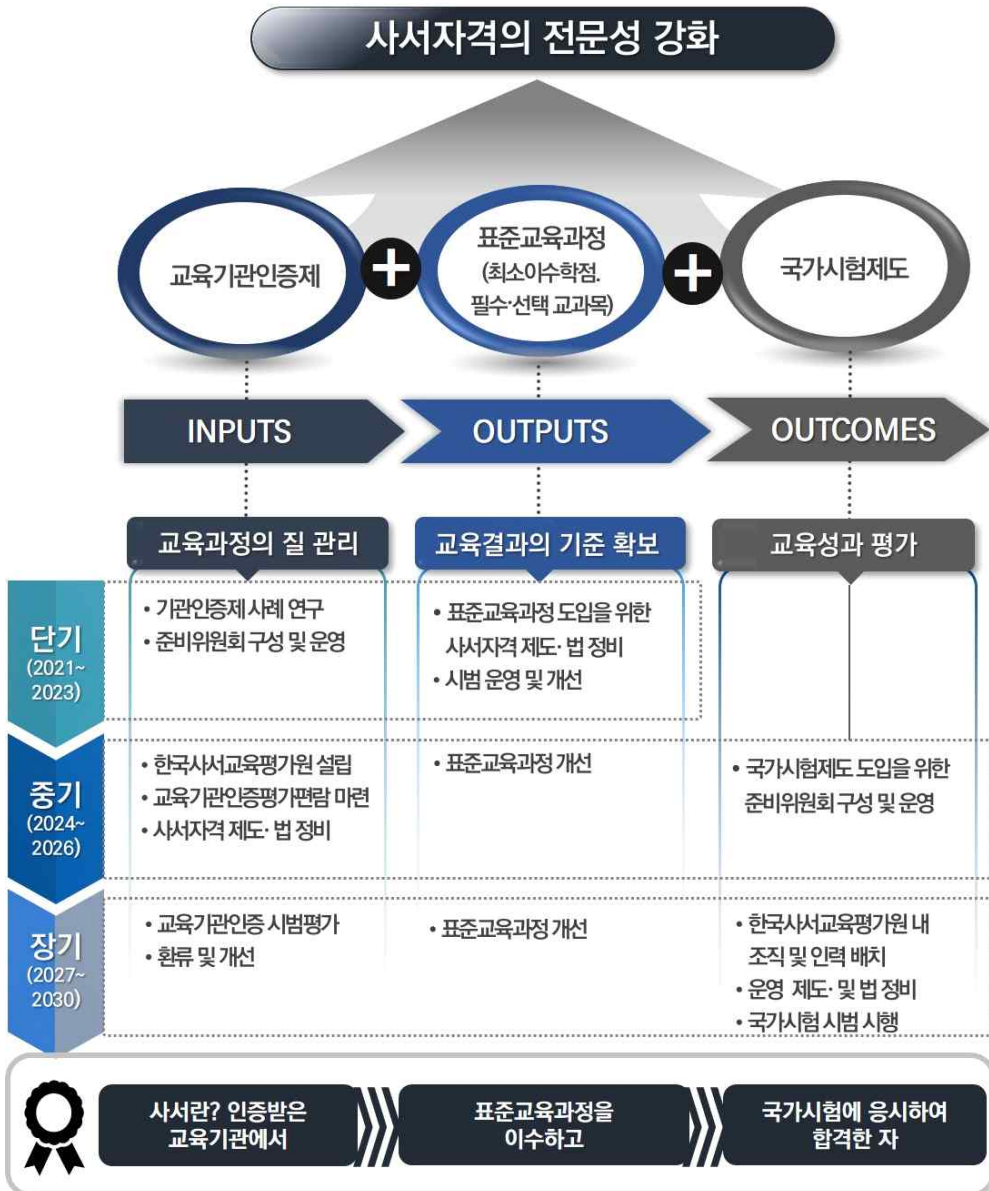
10.3 사서자격제도 개선 로드맵

-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은 대부분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
 - 하지만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단계적 수립 및 현장 적용이 필수
 - 각 기관별, 개인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서의 전문성 강화 및 이를 통한 도서관의 근본적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 현장의 의견 역시 이들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장에서 제기된 가장 이상적인 사서자격제도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 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이 공통적인 방안으로 대두
 - 이외에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제를 통한 사서 전문성 강화 방안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안
 - 하지만 국가 자격시험제도와 교육기관 인증제는 시험제의 시행이나 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의 특성인 학위 기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격시험제도의 운용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수
 -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자격시험제도를 통한 교육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사서 전문성 강화의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있음

- 사서 자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은 사서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서자격증의 사회적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단·중·장기적인 과정으로의 정책 개선과 적용이 필요



(그림 52) 사서자격제도 개선 로드맵

- 국가 자격시험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현장의 의견으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자격시험제도는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정한 요건 마련으로도 효율성이 높으며, 사서자격 갱신을 위한 방안으로도 실효성 및 현장 적용성을 확보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며, 사서자격 취득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의 효율성도 확보 가능

■ 국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방안이 선결되어야 함

-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인증
 - 교육기관의 인증을 통해 사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기본적인 학위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학위 수여 장치 마련이 필요
 -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인증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환경 확보
- 국가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교과과정 정립
 - 사서 양성 교육기관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표준교과과정 정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교과내용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
 - 필수 교과내용과 선택 교과내용을 포함한 최소이수학점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이수하였을 경우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부여
 -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서자격증 종류별로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이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사서자격증 종류의 직무 및 전문성을 명확하게 정립
 - 사서자격에 따른 직무의 구분 및 각 사서자격의 전문적 능력 정립을 기반으로 각각의 사서자격증에 적합한 시험 제도 운영이 필요
 - 이를 통해 사서 양성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 제고도 가능

■ 이는 결국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서자격증의 사회적, 직업적 위상을 제고하고, 도서관 현장에서의 기본적, 실무적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자격 취득의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여, 사서 직무의 다양화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

음

- 이를 종합해 보면, 사서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는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정책의 마련이 필요
 - 이는 사회적 유행이나 시류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며, 도서관과 사서직의 정보적, 사회적, 교육적 역할을 고려한 근본적인 가치와 의의에 기반을 두어야 함
 - 도서관과 사서의 근본적인 역할은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분야의 전문적 지식 함양이 필수
 - 이는 단순한 기법 중심의 한시적인 데이터 전문 능력의 함양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지식정보를 이용해 이롭게 하는 지식정보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의 확보가 필수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적용될 수 있으나, 도서관과 사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사서직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깊은 논의가 필요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 구본영. 2002. 문헌정보학 전문직의 정체성과 미래의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93-113.
- 국립중앙도서관. 202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세훈 외. 2004. 『도서관 전문성 강화 방안: 사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유경. 1992. 『사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중요도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근. 1987. 사서직의 전문직성과 계속교육. 『국회도서관보』, 192(8): 19-30.
- 남태우. 1986. 사서직의 전문직성. 『문헌정보학보』, 3: 21-43.
- 남태우. 1996. 사서직의 전문성과 국가고시도입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 115-118.
- 노영희. 2020. 『2020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서울: 조은글터.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1.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사서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박옥남.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 박인웅. 1997.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207-223.
- 안인자 외. 2012. 학부 이수교과목 분석을 통한 현장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27-52.

- 오지은, 정연경. 2013. 사서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39-258.
- 윤희윤. 2005. 『도서관 사서직제도 연구』. 서울: 태일사.
- 윤명희. 2020. 공공도서관 사서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43-275.
- 이병목. 2005. 『도서관법규총람』.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이제환 외. 2005.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 이제환. 2010.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 대구: 태일사.
- 정동렬. 2007.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29.
- 최지혜. 2005. 『대학도서관 참고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대학도서관 구인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교육훈련기관 조회.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b.or.kr/creditbank/eduOrg/nEduOrg1_1_List.d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2006a. ALA Accredited Programs.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accreditedprogram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2006b. Accredited Master's programs. Retrieved 2021. 10. 23. from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accreditedprograms/directory>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2015.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ebruary 2, 2015. Revision of standard element V.3. adopted by the Council, January 28, 2019 by request of the Committee on Accreditation. Retrieved 2021. 10. 21. from https://www.ala.org/educationcareers/sites/ala.org.educationcareers/files/content/standards/Standards_2019_ALA_Council-adopted_01-28-2019.pdf
-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LISE). 2000. Educat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al for a New

- Century: The KALIPER Report: Executive Summary. KALIPER Advisory Committee, ALISE. Reston, Virginia.
- Cheng, Grace. 2000. The shifting information landscape: Re-inventing the wheel or a whole new frontier for librarians. *Australian Library Journal*, 49(1): 17-26.
- Koontz, C. and Gubbin B. 편, 장혜란 역. 2011. 『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Kennan et al. 2006. Changing workplace demands: what job ads tell us. *Aslib Proceedings: New Information Perspectives*, 58(3): 179-196.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11. CILIP general regulations: Appendices A and B.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cdn.ymaws.com/www.cilip.org.uk/resource/collection/7460A622-D47B-4536-BA9D-C4AF3C84A987/general_regulations_-_appendices_a_and_b_revis.pdf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19. Getting Qualified. Retrieved 2021. 10. 19. from <https://www.cilip.org.uk/page/CILIPQualifications>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a.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base.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pksb>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b. Profes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ion.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ProfessionalRegistrationCertification>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c. Professional registration chartership.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ProfessionalRegistrationChartership>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d. Professional registration fellowship.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ProfessionalRegistrationFellowship>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e.

- Professional registration for knowledge management.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general/custom.asp?page=ProfessionalRegistrationKM>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f. CILIP Accredited qualifications.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Qualifications>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 2021g. Professional registration conversion pathway to knowledge management chartership and knowledge management fellowship.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cilip.org.uk/page/ProfessionalRegistrationConversionKM>
- Gorman, Michael.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ux, Claudia. 2003. The German Library System: Structure and New Developments. *IFLA Journal*, 28(2): 113-128.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www.ifla.org/IV/ifla69/article-lux.pdf> pp.118-119.
- ONiSEP. 2021a. Conservateur/trice territorial/e des bibliotheques.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onisep.fr/Ressources/Univers-Metier/Metiers/conservateur-territorial-des-bibliotheques-conservatrice-territoriale-des-bibliotheques>
- ONiSEP. 2021b. Bibliothecaire. Retrieved 2021. 10. 24. from <https://www.onisep.fr/Ressources/Univers-Metier/Metiers/bibliothecaire>
- Pritchard, S. M. 1995. Librarians: The ultimate moveable type. *Moveable Type*, 2(2): 3-4.

부 록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현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서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사서자격제도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문헌정보(도서관)학과의 전임(비전임) 교수·강사 전체 및 재학생 전체
- 사서교육원 및 학점은행제의 전임(비전임) 교수·강사 전체 및 재학생 전체
- 부처·시도 도서관 정책 담당자 및 관종별 도서관 사서 중 전체 대상 기량의 50% 이상

□ 설문 기간: 2021년 10월 7일 ~ 10월 29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사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과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하셔서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행기관: 한국도서관협회

연구책임자: 이 승 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ableman@cau.ac.kr)

공동연구원: 이 정 미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mlee@swu.ac.kr)

정 영 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omjung@deu.ac.kr)

장 인 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hoinchang@gmail.com)

이 중 욱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jongwook@knu.ac.kr)

양 지 안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 jiannyang@sewc.ac.kr)

Part I 응답자 기본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3.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 4번 문항으로)
② 도서관 직원(사서 및 사서교사) (→5번 문항으로)
③ 전임교원 (→ 4번 문항으로)
④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 (→ 4번 문항으로)
⑤ 정책담당자 (→ 3-1번 문항으로)
⑥ 기타() (→ 4번 문항으로)

3-1.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8번 문항으로)

4.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③ 4년제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④ 사서교육원
⑤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⑥ 기타()

(→8번 문항으로)

5. 귀하가 근무하는 관종은 무엇입니까?

- ① 공공도서관
- ② 대학도서관
- ③ 학교도서관
- ④ 전문·특수도서관
- ⑤ 기타()

6. 귀하의 직렬은 무엇입니까?

- ① 사서직
- ② 행정직
- ③ 전산직
- ④ 기타 ()

7. 귀하의 도서관 근무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년~10년 미만
- ③ 10년~15년 미만
- ④ 15년~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8.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⑨ 경기도 |
| ⑩ 강원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라북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 ⑯ 경상남도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9. 귀하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서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1급 정사서
- ② 2급 정사서
- ③ 준사서
- ④ 자격증 없음

Part II 사서자격제도 개선 부문

10. 귀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서자격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임 ④ 잘 모름
⑤ 전혀 모름

11. 우리나라의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관심 있음 ② 관심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관심 없음
⑤ 전혀 관심 없음

※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사서 자격요건**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p> <p>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p> <p>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p>
2급 정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마.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준사서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에 문헌 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p>

12. 귀하는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사서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함) (→12-1번으로)
- ② 그렇지 않다(사서자격제도 개선은 불필요함) (→12-2번으로)
- ③ 의견 없음 (→13번으로)

12-1. 현행 사서자격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최초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
- ② 사서 자격 구분(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요건
- ③ 사서직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등급 구분
- ④ 사서 자격취득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규제 요건
- ⑤ 사서 양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질 관리 체계
- ⑥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전문성 확보
- ⑦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의 사회적 공신력 확보
- ⑧ 의견 없음
- ⑨ 기타 ()

(→13번으로)

12-2. 현행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이 불필요한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응답 필수 아님)

()

(→13번으로)

13. 현행 사서 자격의 구분 방식(1·2급 정사서, 준사서)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사서 자격구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함) (→13-1번으로)
- ② 그렇지 않다(사서 자격구분 방식에 대한 개선 불필요함) (→14번으로)
- ③ 의견 없음 (→14번으로)

13-1 현행 ‘1·2급 정사서, 준사서’ 로 구분된 사서 자격을 재구분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단계 구분(예, 사서직(1·2급 정사서)과 사서보조직(준사서))
- ② 3단계 구분(예, 1급 사서(1급 정사서), 2급 사서(2급 정사서), 3급 사서(준사서))
- ③ 4단계 구분(예, 1급 선임사서, 2급 전문사서, 3급 사서(현행 2급 정사서), 사서보)
- ④ 의견 없음
- ⑤ 기타 ()

※ 다음은 현행 사서 자격취득 경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4. 현행의 문헌정보학 학위취득자 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사서교육원)에게 발급하는 최초 사서 자격취득에 대해 추가적인 검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추가적인 검정체계 필요함) (→14-1번으로)
- ② 그렇지 않다. (추가적인 검정체계 불필요함. 현행 방식 유지) (→15번으로)
- ③ 의견 없음 (→15번으로)

14-1. 최초 사서 자격취득을 위한 추가적인 검정체제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예, 학과(전공)별)
- ② 국가 자격시험 도입
- ③ 교육과정 이수제 적용(예, 표준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지정)
- ④ (혼합형) 양성기관 인증제 적용 및 국가 자격시험 도입(예: 간호사)
- ⑤ 의견 없음
- ⑥ 기타 ()

(→15번으로)

Part III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부문

15. 귀하는 현행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임 ④ 잘 모름
- ⑤ 전혀 모름

16.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귀하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관심 있음 ② 관심 있음 ③ 보통임 ④ 별로 관심 없음
- ⑤ 전혀 관심 없음

17. 사서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사서 자격취득 요건에 추가로 ‘표준교과목과 최소이수학점 지정’ 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① 찬성 (→18번으로)
- ② 반대 (→17-1번으로)
- ③ 의견 없음 (→18번으로)

17-1. ‘표준교과목과 최소이수학점 지정’ 도입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 다음은 사서 자격취득을 위한 문헌정보학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 기준(안)입니다.

구분	대상자격증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 기준	
		현행	개선안
대학	2급 정사서	단일전공: 평균 64.03 복수전공: 평균 40.48	단일전공: 60 복수전공: 60
	준사서	-	단일전공: 48 복수전공: 48
전문대학	준사서	평균 39.25	48
지정교육기관	1급 정사서	30	48
	2급 정사서	30	
	준사서	30	
평생교육원	2급 정사서	대학 타전공	60
		전문대 타전공	60
		전문대 문헌정보학 전공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60 (전문대 이수학점 포함)

18.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60학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참고] 유사 전문자격 전공 졸업학점: 간호사 최소 78학점, 의료기사 54학점, 영양사 52학점, 사회복지사 51학점

- ① 최소이수 학점으로 적절함 (→19번으로)
- ② 최소이수 학점을 더 높여야 함(→18-1번으로)
- ③ 최소이수 학점을 낮추어야 함 (→18-2번으로)
- ④ 의견 없음 (→19번으로)

18-1.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을 더 높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다?

- ① 63학점 ② 66학점 ③ 69학점 ④ 72학점
- ⑤ 기타 ()
- ⑥ 의견 없음 (→19번으로)

18-2. ‘2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을 낮추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다?

- ① 57학점 ② 54학점 ③ 51학점 ④ 48학점
- ⑤ 기타 ()
- ⑥ 의견 없음 (→19번으로)

19.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 (‘48학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 최소이수 학점으로 적절함 (→20번으로)
- ② 최소이수 학점을 더 높여야 함(→19-1번으로)
- ③ 최소이수 학점을 낮추어야 함 (→19-2번으로)
- ④ 의견 없음 (→20번으로)

19-1.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을 더 높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다?

- ① 51학점 ② 54학점 ③ 57학점 ④ 60학점
- ⑤ 기타 ()
- ⑥ 의견 없음 (→20번으로)

19-2. ‘준사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전공 관련 최소이수학점을 낮추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합니다?

- ① 45학점 ② 42학점 ③ 39학점 ④ 36학점
- ⑤ 기타()
- ⑥ 의견 없음 (→20번으로)

20. 사서자격증(1·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관련 최소이수 학점('48학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 최소이수 학점으로 적절함 (→ 21번으로)
- ② 최소이수 학점을 더 높여야 함(→ 20-1번으로)
- ③ 최소이수 학점을 낮추어야 함 (→ 20-2번으로)
- ④ 의견 없음 (→ 21번으로)

20-1.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관련 최소 이수학점을 더 높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 ① 51학점 ② 54학점 ③ 57학점 ④ 60학점
- ⑤ 기타 ()
- ⑥ 의견 없음 (→ 21번으로)

20-2.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전공 관련 최소 이수학점을 낮추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 ① 45학점 ② 42학점 ③ 39학점 ④ 36학점
- ⑤ 기타 ()
- ⑥ 의견 없음 (→ 21번으로)

※ 다음은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목 모형(안)’에 포함된 전공필수 교과목입니다.

표준(전공필수) 교과목	유사교과목	비고
문헌정보학개론	문헌정보학입문 문헌정보학의 이해	-
도서관문화사 독서교육론	정보사회론, 정보문화사 독서지도론	-
자료조직론	-	분류학, 목록학 1과목 이상 있을 경우 인정
자료조직실습	-	분류실습, 목록실습 1과목 이상 있을 경우 인정
정보서비스론	정보봉사론	-
정보이용자론	정보교육론, 정보행태론	-
장서개발론	-	-
도서관경영론	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	-
정보검색론	-	-
정보기술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시스템론	-
사서실습	-	2급 및 준사서 자격취득에만 시 행

21. 위의 <보기>에 제시된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전공필수 교과목 ‘12과목(36학점)’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함 (→22번으로)
- ② 적절함 (→22번으로)
- ③ 보통임 (→22번으로)
- ④ 적절하지 않음 (→21-1번으로)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음 (→21-1번으로)
- ⑥ 의견 없음 (→22번으로)

21-1.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전공필수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22번으로)

※ 다음은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목 모형(안)’에 포함된 전공선택 교과목입니다.

구분	교과목
문헌정보일반	도서관과 저작권,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정보조직학	메타데이터의 이해, 비도서 및 멀티미디어자료 조직론, 자동화목록실습, 정보자원론, LOD와 오픈액세스
정보조사제공학	어린이청소년서비스론, 인터넷자원활용, 정보리터러시, 정보커뮤니케이션론, 학술정보활용법
도서관·정보센터 경영학	관중별도서관운영론, 도서관및 도서관서비스 평가,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정보학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정보자원활용, 디지털콘텐츠론, 빅데이터분석, 데이터사이언스, 빅데이터처리및 분석론, 정보학의이해, 도서관과 인터넷 기술, 이용자인터페이스론, 데이터큐레이션
서지학	서지학개론
기록관리학	기록관리학, 디지털아카이빙, 전자기록관리론, 공공기록물관리론

22. 위의 <보기>에 제시된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전공선택 교과목 ‘31과목(63학점)’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함 (→23번으로)
- ② 적절함 (→23번으로)
- ③ 보통임 (→23번으로)
- ④ 적절하지 않음 (→22-1번으로)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음 (→22-1번으로)
- ⑥ 의견 없음 (→23번으로)

22-1. 표준교과목 모형(안)의 전공선택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23번으로)

※ 다음은 ‘사서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입니다.

- 가. 사서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나. 실습단위당 학생 배치 인원은 지도사 1명당 5명 이내로 할 것
다. 사서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1)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운영되는 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2)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는 지도자(사서)가 1명 이상 상근할 것
- 라. 도서관 현장실습 과목의 담당교수는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1급 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할 것
마.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의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 이상)>으로 <도서관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도서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위의 <보기>에 제시된 ‘사서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인정 기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함 (→24번으로)
- ② 적절함 (→24번으로)
- ③ 보통임 (→24번으로)
- ④ 부적절함 (→23-1번으로)
- ⑤ 매우 부적절함 (→23-1번으로)
- ⑥ 의견 없음 (→24번으로)

23-1. 위의 <보기>에 제시된 ‘사서실습’ 교과목을 위한 실습 인정 기준(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24. ‘자료조직실습’ 교과목에 대한 실습 조건 기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수강학생 1인당 0.5질 이상의 분류표(KDC 혹은 DDC) 구비
- 수강학생 1인당 0.5질 이상의 목록규칙(KCR 혹은 RDA) 구비
- 웹 버전의 분류표 혹은 목록규칙의 경우 수강학생전원이 접근 권한을 보유

- ① 매우 적절함 (→ 25번으로)
- ② 적절함 (→ 25번으로)
- ③ 보통임 (→ 25번으로)
- ④ 부적절함 (→ 24-1번으로)
- ⑤ 매우 부적절함 (→ 24-1번으로)
- ⑥ 의견 없음 (→ 25번으로)

24-1. ‘자료조직실습’ 을 위한 실습 조건 기준(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필수 아님)

()

25. 문헌정보학 표준교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모형(안)이 도입된다면, 적절한 개정 주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3년 ② 4년 ③ 5년 ④ 6년 ⑤ 7년 ⑥ 의견 없음 ⑦ 기타 ()

26.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목 모형(안)에 대한 기타 의견(문제점, 개선사항, 추가해야 할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필수 아님)

()

- 끝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승 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공동연구자 : 이 정 미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 영 미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 인 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이 종 욱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양 지 안 (승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
- 연구협력관 : 김 태 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서기관)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1년 12월 15일

발 행 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www.clip.go.kr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7층

02-590-6274

연구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 2021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3020



9 791163 573517

ISBN 979-11-6357-351-7